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42호

2017. 12. 21.(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19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4
-----------------------------------	---

◆ 고 시

제2017-459호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	35
제2017-461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38
제2017-462호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66
제2017-463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6
제2017-4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6
제2017-465호 도시관리계획(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7
제2017-466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94
제2017-467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95
제2017-468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96

◆ 공 고

제2017-2499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42
제2017-2505호 2017년도 제17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63
제2017-252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64
제2017-252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165
제2017-2523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66
제2017-25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중앙대학교)	174
제2017-2536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175
제2017-2537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176
제2017-2539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76

◆ 구 고 시

제2017-158호 을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178
--	-----

제2017-14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광진구)	181
제2017-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동대문구)	182
제2017-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동대문구)	185
제2017-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랑구)	188
제2017-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랑구)	198
제2017-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범만사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중랑구)	205
제2017-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용마폭포공원뒤)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중랑구)	208
제2017-13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211
제2017-1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노원구)	213
제2017-8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양천구)	215
제2017-99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218
제2017-159호 도시계획시설(대모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남구)	223
제2017-16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226
제2017-16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227
제2017-16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229

◆ 구 공 고

제2017-11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재열람 공고(광진구)	231
제2017-14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강북구)	231
제2017-150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재공고 (은평구)	235
제2017-1516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은평구)	235
제2017-18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	244

◆ 사업소고시

제2017-2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48
------------------------------------	-----

◆ 사업소공고

제2017-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동대문소방서)	249
--------------------------------------	-----

◆ 기 타

제2017-30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0
제2017-314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0
제2017-31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1
제2017-32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2
제2017-32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2
제2017-32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53
제2017-324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53
제2017-32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54
제2017-32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55
제2017-32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56
제2017-32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7
제2017-33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7
제2017-33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8
제2017-33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8
제2017-3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9
제2017-33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59
제2017-33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0
제2017 - 33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0
제2017-33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1
제2017-33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2
제2017-34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2
제2017-34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3
제2017-34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3
제2017-34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4
제2017-34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4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19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3조 관련)

☐ 시민소통기획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민봉사 담당관	1. 여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 신청접수 나.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다. 여권 등의 교부 라.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마. 여권의 반납명령에 따른 직접 회수 바. 수수료 징수	○ 「여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청장
	2. 수수료 금액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사용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청장

☐ 평생교육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 소 년 담당관	1.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허가(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구청장

☐ 경제진흥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융합 경제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 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말소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채납처분 포함) 아.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실시 자. 법 제41조 1항 제7호·제9호 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같은법 제30조제2항 ○ 같은법 제31조제1항 ○ 같은법 제31조제2항 ○ 같은법 제33조제1항 ○ 같은법 제33조제2항 ○ 같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같은조 제2항제4호, 제6호 및 같은조 제3항	구청장
민생경제과	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가목·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4호·제5호) ○ 「소비자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수입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나.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 다.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대외무역법」 제33조 ○ 「대외무역법」 제59조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구청장
	3.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마.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 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제2호)	
	나.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4호)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8호)	
	라.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9호)	
	마.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0호)	
	바.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1호)	
	사.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2호)	
	아.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4호)	
	자.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5호)	
	차.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7호)	
	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9호)	
	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8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다. 의견 청취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20조	구청장
도시농업과	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나.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 처분 다.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 「양곡관리법」(' 05.3.31, 법7432호) 부칙 제4조	구청장

☐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사무 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 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사후처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5가호·24퍼호·25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청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할구역내 시내버스 보유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접수 및 자격심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제17조)	구청장
	2.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운송부대시설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3.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청장
	4.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이 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사무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9호)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구청장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제4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9.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및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청장
	10.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다만,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6호)	구청장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1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신고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청장
	13.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 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구청장
	13-2.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구청장
	13-3. 내압용기 검사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14 제3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4.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구청장
	14-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2)	구청장
	15.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구청장
	15-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3호)	구청장
	16.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6-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7.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업무 중 검정신청 접수·검정 의뢰 등 검정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18.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의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품질시험 소장
	19.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구청장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다. 허가기준에 관한 항의 신고	○ 같은 법 제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 같은 법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아. 상속의 신고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자.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차.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타. 허가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하. 화물운송종사 자격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3호)	
	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같은 법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호)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호)	
	아. 상속의 신고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차. 허가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2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일반택시·운송사업·화물)		구청장
	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취소 및 청문	○ 「교통안전법」 제54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및 취소 다. 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라. 개선부담금의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8조 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제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및 공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 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다. 개선명령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자.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차. 보고명령 및 검사 등 카.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 등의 청문 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과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3.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중 「대기환경 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4조 제7항 및 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다.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라. 법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4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 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다목) ○ 같은 법 제44조 제7항 및 제45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라목) ○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마목) ○ 같은 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바목) ○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63조제1항제15호)	구청장
	4.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5호)	구청장
	5.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표지판의 설치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마. 자료제출의 요구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사목)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가. 설치승인(신고수리포함, 이하 같음) 및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등 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4.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4호 다목)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구청장
생활환경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사. 관리대상기 등 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차.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카.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 ○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8호) ○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9호)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1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무 가.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 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구청장
	4.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및 제7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 같은 법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다. 금고의 합병인가	○ 같은 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라. 금고에 대한 명령	○ 같은 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마. 청문	○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나. 서울시 소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다. 자치구 소관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법인 명칭의 변경, 관할 시·도 및 자치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본재산 관련사항(처분 및 편입 또는 증액)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이외의 정관변경 사항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법인관련 지도·감독 - 설립후 재산이전 신고 접수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 접수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민법」 제3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위 임된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라.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마. 검사명령 바.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합·봉인 등의 처 분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명령과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 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신고수리서 갱신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6조	구청장
	2.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제3항	
생활보건과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 담당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구청장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 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라.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바. 시정명령·지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도로 및 구거에 한함)	○ 「국유재산법」 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허가	○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수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업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수리	○ 「건축사법」 제23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4호)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28조·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6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	
	라.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8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2. 승강기 검사업무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0호) ○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0조 제 1호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1.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 조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구청장
산지방재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방지의 지정 나.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의 시행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라. 사방사업의 시행 마.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바. 공무원의 조사 등	○ 「사방사업법」 제4조 ○ 「사방사업법」 제6조 ○ 「사방사업법」 제20조 ○ 「사방사업법」 제5조 ○ 「사방사업법」 제7조의 2 ○ 「사방사업법」 제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손실보상 및 보상금의 결정	○ 「사방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아. 수익의 귀속	○ 「사방사업법」 제17조	
	자.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물순환안전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	
물 재 생 시 설 과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다. 법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4호)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희석 처리에 관한 인정	○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5호)	
	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8호)	
	사.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9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아.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리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자.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차.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법 제44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하.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거.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너.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자료제출 요구·출입·채취·검사 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러. 법 제72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머.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버.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1호) ○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2호) ○ 같은 법 제44조·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4호)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6호) ○ 같은 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7호) ○ 같은 법 제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3호) ○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4호) ○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5호) ○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27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서. 개선계획서 및 개선원료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어.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저.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처.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커. 배출시설의 인정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나. 이행여부의 확인 다. 이행명령 라. 사업장 등에서의 출입·조사 마. 자료 및 조사결과 의 공표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 제1항 제2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 제1항 제3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 제1항 제3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 제1항 제32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나.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 「하천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라목)	
	마. 잘못 납부된 부담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 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자목)	
	아. 보고 및 출입 등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자.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마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1호 너목)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3호)	구청장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 제3호)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 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그에 따른다)의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부수 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 같은법 제32조	
	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같은법 제40조	
	라.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같은법 제72조, 제73조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예 방 과	1.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2. 소방용 기계·기구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에 관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① 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② 기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자치구에 위임
 - 나. 자치구에 위임된 택시 및 여객자동차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중 시 승차거부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9호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14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목적, 위치, 면적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목적

가. 주거와 건축에 대한 시민의식수준 및 생활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따라 도시경관의 창출 및 미래 서울도시 주거의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사 업 명	사업면적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상일동 산2-3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단지	29,375㎡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사업명	용도	사업면적	최고층수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단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9,375㎡	14층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비 고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일률적인 법률 적용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와 높이계획을 위하여 높이 제한 적용배제함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

- ① 공모방법 : 단지별 공동주택 현상설계공모
- ② 설 계 : 단지별 공모당선자가 고덕강일 총괄 MP기획회의를 거쳐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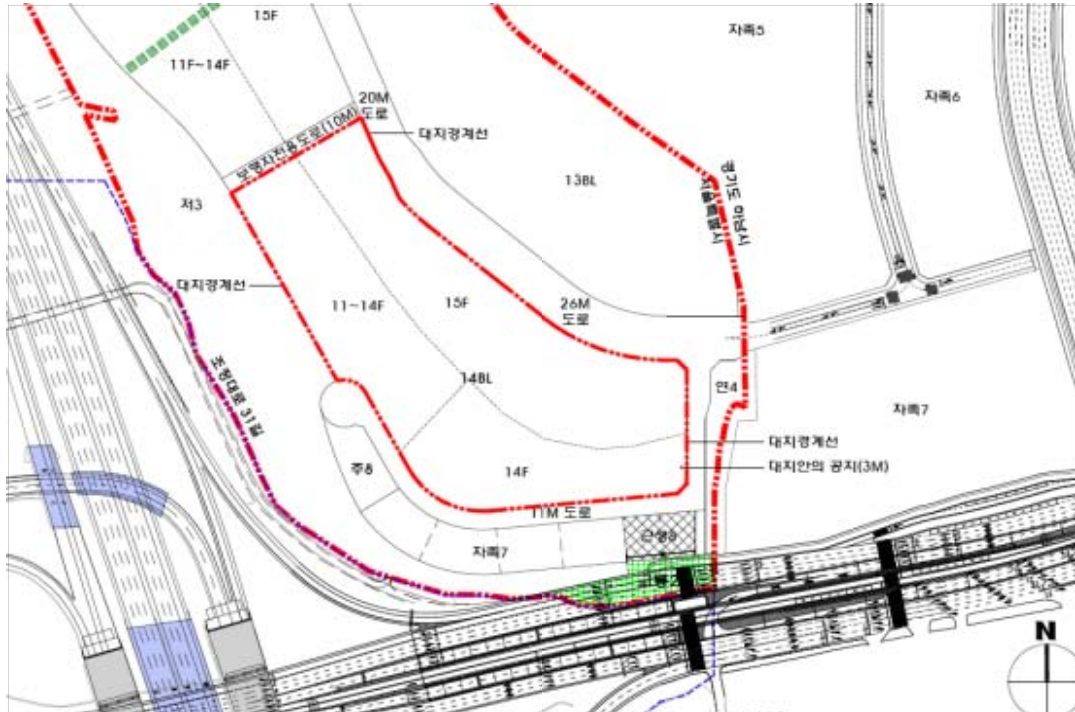
나.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 방법

- ① 공사감리
 - 설계 및 디자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업무 시행(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감독자를 투입하여 해당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를 수행)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접 감독을 통하여 공사감리 추진
- ②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에 따라 공사에 대한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발주하여 설계의도 구현 및 현장품질 확보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02-2133-7079),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 02-3425-602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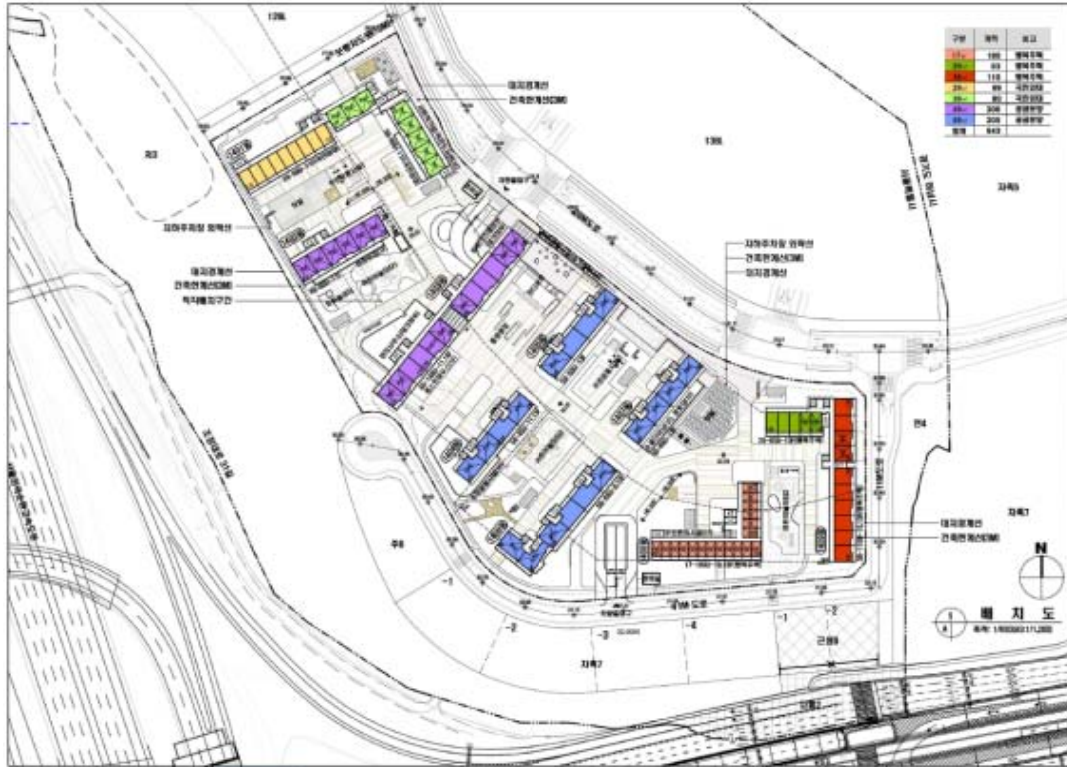
□ 특별건축계획구역(고덕강일14단지)



□ 조감도



□ 배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1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 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2016.0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07.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준연도	목표연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1,469,404.9	-	1,469,404.9	2006	2017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9,404.9	-	1,469,404.9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503,898.3	-	503,898.3	34.29
	공공청사	4,743.2	-	4,743.2	0.32
	문화/복지	9,869.5	-	9,869.5	0.67
	학교시설	106,163.2	-	106,163.2	7.22
	공원녹지 ¹⁾	142,627.1	감) 11.9	142,615.2	9.71
	공공공지	701.2	-	701.2	0.05
	주차장	676.3	-	676.3	0.05
	도 로 ¹⁾	239,084.8	증) 11.9	239,096.7	16.27
	철 도	33.0	-	33.0	0.0
주거 용지	소 계	772,840.9	-	772,840.9	52.60
	공동주택	768,503.9	-	768,503.9	52.30
	주상복합	4,337.0	-	4,337.0	0.30
상업/업무		135,739.3	-	135,739.3	9.24
기타 종교시설 등		56,926.4	-	56,926.4	3.87

1) 신길5구역내 중로2-34호선 도로모통이의 길이 변경(6m→8m)에 따른 도로면적 증가, 연결녹지 면적축소(측량결과 반영)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2,008	-	2,008	5,421	-	5,421	존치지역 등
	공동주택	2,621	-	2,621	7,076	-	7,076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16,117	-	16,117	43,516	-	43,516	
	40㎡이하	1,148	-	1,148	3,099	-	3,099	
	40㎡~60㎡	5,975	-	5,975	16,133	-	16,133	
	60㎡~85㎡	6,656	-	6,656	17,971	-	17,971	
	85㎡초과	2,338	-	2,338	6,313	-	6,313	
계		20,746	-	20,746	56,013	-	56,013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	116,032.7	－	116,032.7	
교육 시설	소 계	7	106,163.2	－	106,163.2	
	초등학교	4	96,164.0	－	96,164.0	기설치 (대영중·고 면적 포함)
	중학교	2	9,999.2	－	9,999.2	1개소 신설, 1개소 기설치 (대영중은 대영초에 포함)
	고등학교	1	－	－	－	기설치 (대영고는 대영초에 포함)
문화 · 복지 시설	소 계	7	9,869.5	－	9,869.5	
	문화시설	2	2,235.6	－	2,235.6	신설
	도서관	1	2,300.3	－	2,300.3	신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4	5,333.6	－	5,333.6	3개소 신설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녹지 시설	소 계	62	140,821.4	감) 11.9	140,809.5	
	근린공원	5	65,685.2	-	65,685.2	기 설치2개소, 3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3	7,078.0	-	7,078.0	기 설치 1개소, 2개소 신설
	소공원	18	31,231.7	-	31,231.7	18개소 신설
	녹 지	36	36,826.5	감) 11.9	36,814.6	36개소 신설

※ 신길5구역내 중로2-34호선 도로모퉁이 길이 변경(6m→8m)에 따른 면적변경(측량결과 반영)

마. 교통계획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합 계(16개구역)		892,378.2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일대	62,696.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7.3.30)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5-69일대	61,971.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4.12.11)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45-40일대	38,502.9	주택재개발사업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914-9일대	52,112.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4.12.11)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83-1일대	76,602.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36,266.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7.8.3)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39일대	93,728.6	주택재개발사업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일대	32,287.3	주택재개발사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40-16일대	74,091.1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590일대	32,234.0	주택재건축사업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29-94일대	50,759.3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일대	52,159.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0-1일대	15,120.0	주택재건축사업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7-50일대	27,844.0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76-1일대	105,733.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5.5.21)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일대	80,272.0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14.7.3)

아.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자.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최고높이(m)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2 / 35	121	해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8 / 25	91	해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1 / 32	11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8 / 31	109	해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9	94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 / 26	94	해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7	9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7	91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9	10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 / 29	103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2%이하	60%이하	19 / 25	91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 / 29	103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 22	8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 / 28	94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2 / 34	118	해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20 / 30	106	해제

※ 신길3, 5, 7, 8, 9, 12, 14구역의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라인' 에 따름)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없음)

구 분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14,996.0	996.0	6,394.0	-	7,606.0 (12.1%)	해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971.0	15,101.0	4,056.0	3,698.0	-	7,347.0 (11.9%)	해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	7,723.0	1,070.40	1,313.04	-	5,339.56 (13.9%)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12.0	14,599.0	1,797.0	6,741.0	-	6,061.0 (11.6%)	해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02.0	17,136.4	207.9	1,576.0	-	15,352.5 (20.0%)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10,576.0	1,441.0	3,945.0	-	5,190.0 (14.3%)	해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	21,524.0	0.0	3,830.0	4,199.7	13,494.3 (14.4%)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3	6,655.3	44.0	909.6	-	5,701.7 (17.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4,091.1	20,308.2	4,348.9	7,110.1	-	8,849.2 (11.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2,234.0	6,129.4	14.0	3,172.0	-	2,943.4 (9.1%)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	10,996.7	1,493.0	2,564.0	-	6,939.7 (13.7%)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59.0	14,656.4	644.2	4,273.4	-	9,738.8 (18.7%)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5,120.0	2,569.0	247.0	547.0	-	1,775.0 (11.7%)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0	5,002.2	52.0	1,071.0	-	3,879.2 (13.9%)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5,733.0	23,417.0	3,867.0	6,792.0	-	12,758.0 (12.1%)	해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2.0	19,006.0	4,731.0	4,585.0	-	9,690.0 (12.1%)	해제
계	892,378.2	210,395.6	25,009.4	58,521.14	4,199.7	122,665.36 (13.7%)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변경없음)

과.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대 상 지 역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사업구역	2007 ~ 2015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사업구역	2009 ~ 2016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3단계 사업구역	2011	2013.6 이후	2017.12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

※ 단계별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 운용방안은 영등포구에서 수립한 운용기준을 따름(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거.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없음)

너.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구 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47,700.0	190	230	16.28	229.39	22 / 35	해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971.0	45,565.0	190	230	20.35	229.83	18 / 25	해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	30,779.9	210	300	25이하	251.52이하	21 / 3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12.0	37,513.0	190	230	21.24	229.91	18 / 31	해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02.0	59,073.6	210	300	25이하	265이하	22 / 29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25,690.0	210	300	30.0이하	265.1이하	20 / 26	해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	70,569.1	210	300	25이하	253.40이하	22 / 2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3	24,914.2	210	300	25이하	255.44이하	22 / 27	

구 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4,091.1	51,714.6	210	300	25이하	255.38이하	22 / 2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2,234.0	26,104.6	210	300	29.46	298.56	- / 29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	39,762.6	190	232	25이하	232이하	19 / 25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59.0	35,435.5	210	300	25이하	267이하	20 / 29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5,120.0	12,551.0	210	250	20.84	248.61	- / 2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0	22,841.8	210	300	25이하	256.3이하	22 / 28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5,733. 0	79,514.0	190	230	15.85	229.63	22 / 34	해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2.0	60,107.0	190	230	15.97	229.82	20 / 30	해제

※ 신길3,5,7,8,9,12,14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 라인' 에 따름)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변경없음)

구 분	합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85㎡ 초과	60~85 ㎡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	50~60 ㎡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85	806	292	394	120	179	74	74	31	해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1	771	280	377	114	170	71	71	28	해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91	644	28	351	265	147	72	59	16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76	637	231	312	94	139	58	58	23	해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35	520	163	221	136	115	47	47	21	해제

구 분	합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85㎡ 초과	60~85 ㎡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	50~60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722	1,533	207	833	493	189	85	76	28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41	522	14	363	145	119	57	50	12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476	1,210	24	424	762	266	124	115	27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74	796	-	176	620	78	-	78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9	777	17	535	225	172	82	72	18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08	824	5	395	424	184	84	76	24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66	217	104	87	26	49	-	-	49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2	501	-	240	261	111	45	48	18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649	1,352	493	660	199	297	124	124	49	해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246	1,023	373	499	151	223	93	93	37	해제
합계	16,117	13,393	2,338	6,656	4,399	2,724	1,148	1,160	416	
비율	100.00	83.10	14.51	41.30	27.29	16.90	7.12	7.20	2.58	

3) 정비계획

가)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라)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마)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76,602.0	-	76,602.0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6,602.0	－	76,602.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735.8	－	13,735.8	17.9	－
	도 로	6,622.9	증) 11.9	6,634.8	8.7	무상귀속
	공 원	3,606.1	－	3,606.1	4.7	
	녹 지	2,844.5	감) 11.9	2,832.6	3.6	
	보행자도로	662.3	－	662.3	0.9	
택 지 (획 지)	소 계	62,866.2	－	62,866.2	82.1	－
	5-1	45,490.2	－	45,490.2	59.4	공동주택
	5-2	13,583.4	－	13,583.4	17.7	공동주택
	5-3	1,777.2	－	1,777.2	2.3	학교시설 (무상귀속, 대토392㎡)
	5-4	958.7	－	958.7	1.3	
	5-5	29.1	－	29.1	0.0	문화시설 (무상귀속)
	5-6	1,027.6	－	1,027.6	1.4	

※ 중로2-34호선 도로모퉀이 길이 변경(6m→8m)에 따른 도로면적 증가, 연결녹지 면적축소(측량결과 반영)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34	25	간선 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	서고378 (78.7.31)	가마산 길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7 (173)	신길동 638 (신길동 518)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4	13.5~ 15	보조 간선	1,65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건고2493 (66.6.21)	
변경	중로	2	34	13.5~ 15	보조 간선	1,65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	4	특수 도로	165	신길동 542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445 (07.11.29)	

※ 연장 및 위치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34호선	중로 2-34호선	도로모통이의 길이 변경 = 6m → 8m	• 교차로 부분 회전폭이 좁아 차량진입의 어려움 및 사고유발 등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모통이의 길이 조정

(나)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	1,981.0	서고445 (07.11.29)	-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79.9	-	1,479.9	서고445 (07.11.29)	-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신길동 2305 일대)	1,636.2 (145.2)	-	1,636.2 (145.2)	서고445 (07.11.29)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다)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97.3	감) 11.9	2,585.4	서고445 (07.11.29)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1,404.0 (29.0)	-	1,404.0 (29.0)	서고445 (07.11.29)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847.2 (218.2)	-	847.2 (218.2)	서고445 (07.11.29)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연결녹지	• 녹지면적 감소 - 면적 : 2,597.3㎡ → 2,585.4㎡ (감 11.9㎡)	• 중로2-34호선 도로모통이 길이 조정에 따른 연결녹지 면적 일부 감소

(라)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신길동 1588,531,1190)	22,273.0 (2,765)	-	22,273.0 (2,765)	서교위76 (88.12.21)	대방

※ 위치 및 면적내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마)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시설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일대	1,027.6	-	1,027.6	서교445 (07.11.29)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공동 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460 이상	-	460 이상	법적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함
	주민공동시설		1,350 이상	-	1,350 이상	
	문 고		200 이상	-	200 이상	
	보육시설		200.34 이상	-	200.34 이상	
	경로당		200 이상	-	200 이상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	76,602.0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476	-	-	476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1)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신길5 재정비 촉진구역	76,602.0	5-1	45,490.2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156,019.28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65이하	22/29																																							
			5-2	13,583.4	영등포구 신길동 766-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6	1,027.6	영등포구 신길동 549번지 일대	2,055.20 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	60이하	20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합 계</th><th colspan="4">분 양(전용면적, ㎡)</th><th colspan="4">임 대(전용면적, ㎡)</th></tr><tr><th>소 계</th><th>85㎡ 초과</th><th>60~ 85㎡</th><th>60㎡ 이하</th><th>소 계</th><th>40㎡ 이하</th><th>40~ 50㎡</th><th>50~ 60㎡</th></tr><tr><td>세대수</td><td>1,546</td><td>1,260</td><td>107</td><td>789</td><td>364</td><td>286</td><td>132</td><td>119</td><td>35</td></tr><tr><td>비율</td><td>100.00</td><td>81.50</td><td>6.92</td><td>51.04</td><td>23.54</td><td>18.50</td><td>8.54</td><td>7.70</td><td>2.26</td></tr></table>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				임 대(전용면적, ㎡)				소 계	85㎡ 초과	60~ 85㎡	60㎡ 이하	소 계	40㎡ 이하	40~ 50㎡	50~ 60㎡	세대수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비율	100.00	81.50	6.92	51.04	23.54	18.50	8.54	7.70	2.26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				임 대(전용면적, ㎡)																																								
					소 계	85㎡ 초과	60~ 85㎡	60㎡ 이하	소 계	40㎡ 이하	40~ 50㎡	50~ 60㎡																																					
			세대수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비율	100.00	81.50	6.92	51.04	23.54	18.50	8.54	7.70	2.26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용																																																
<table><tr><td>평 형</td><td colspan="2">전용면적 40㎡이하</td><td colspan="2">전용면적 40~50㎡이하</td><td colspan="2">전용면적 50~60㎡이하</td></tr><tr><td>배분비</td><td colspan="2">40~50%</td><td colspan="2">40~50%</td><td colspan="2">10~20%</td></tr></table>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주택규모 60㎡(전용면적) 이하로 건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에 따름)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기본방향 - 도시적 맥락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스카이라인 조화를 고려한 계획 - 간선가로변, 커뮤니티가로변, 학교변 등 입지특성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 도시경관계획 - 간선가로변 : 초고층타워형 주동배치로 단지외부 도시가로에 대응 단지 진입부에 랜드마크적 경관을 조성 - 커뮤니티 가로변 : 연결녹지에 인접한 저층연도형 주동배치 단지내외부로의 개방감을 고려한 빗각배치 및 휴먼스케일의 가로조성 - 학교변 : 학교변 직각배치 및 타워형 주동배치로 개방감을 확보	-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우수유출량 감소를 위해 녹지율을 향상시키고, 투수성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 및 녹지를 계획	-
재난방지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등의 접근로 배려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

(7)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	-	-

(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사업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자연성이 매우 낮고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나,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이식 후 재식토록 함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5	62,866.2	-	62,866.2	5-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45,490.2	-	45,490.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766-3번지 일대	13,583.4	-	13,58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3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8번지 일대	1,777.2	-	1,777.2	학교편입
				5-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31번지 일대	958.7	-	958.7	학교편입
				5-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90번지 일대	29.1	-	29.1	학교편입
				5-6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49번지 일대	1,027.6	-	1,027.6	문화시설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	-	-	19,583.84 이상	286세대	40㎡이하, 40~50㎡, 50㎡~60㎡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 임대주택 평형배분 계획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 ~ 50%	40~50%	10~20%

- 바)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사)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아)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자)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차)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카)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파)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하)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거)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너)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69,404.9	-	1,469,404.9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21,284.9	1,421,284.9	96.7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5,759.9	45,759.9	3.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7,352.0	227,352.0	15.5
		제2종일반주거지역	942,186.0	942,186.0	64.1
		제3종일반주거지역	170,169.0	170,169.0	11.6
	준주거지역		35,818.0	35,818.0	2.4
근린상업지역		48,120.0	-	48,120.0	3.3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54-7번지 일대	207,845	-	207,845	서고 제2011-258호 (2011.9.8)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3	35	간선 도로	1,550 (795)	문래동 광장 (신길동 363-6)	신길동 광장 (신길동 426)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도림로
기정	대로	2	54	30	간선 도로	3,050 (710)	신길동 대로3-28	구로공단 (신길동 347-65)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가마산길
기정	대로	3	23	25	보조 간선	4,250	신길동 (대1-6)	구로동 (중1-220)	일반 도로		건고542 (71.9.13)	도신로
기정	대로	3	28	25~ 30	주간 선로	2,780 (1,203)	영등포동 (신길동 220-35)	신도림동 (신길동 3599-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신길로
기정	대로	3	134	25~ 30	간선 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서고378 (78.7.31)	신길9재촉진구역 내 완화차로 확보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14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57	신길동 638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398	신길동 222-4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4	15~ 18	집산 도로	110	신길동 335-23	신길동 325-49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2	15	집산 도로	293	신길동 325-78	신길동 296-1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34	13.5 ~15	보조 간선	1,65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건고2493 (66.6.21)	
변경	중로	2	34	13.5 ~15	보조 간선	1,65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36	15	보조 간선	1,200 (310)	영등포동 634-1 (신길동 289-6)	신길동 321-1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기정	중로	2	37	15	집산 도로	152	신길동 318-2	신길동 314-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08	15	집산 도로	572	신길동 136	신길동 223-33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중로	2	151	15	집산 도로	571	신길동 2099	신길동 3517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46	신길동 205-84	신길동 159-35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44	신길동 1795-31	신길동 209-9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3	12~ 14	집산 도로	280	신길동 2857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78	신길동 281-20	신길동 287-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291	신길동 621-5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112	신길동 625-3	신길동 62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63	12~ 20	집산 도로	268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일반 도로		서고683 (87.9.24)	
기정	중로	3	71	12	집산 도로	472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 도로	299	신길동 3183-28	신길동 242-14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58	신길동 235-7	신길동 4902-5	일반 도로		-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131	신길동 255-1	신길동 232-8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221	신길동 287-42	신길동 298-2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69	신길동 329-57	신길동 263-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20	신길동 329-59	신길동 259-6	일반 도로		서고56 (06.2.16)	
기정	소로	1	6	10	특수 도로	22	신길동 232-65	신길동 254-5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1	44	10	집산 도로	95	신길동 260-3	신길동 257-29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45	10	집산 도로	134	신길동 233-1	신길동 257-41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7	10	집산 도로	107	신길동 254-7	신길동 258-2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48	10	집산 도로	62	신길동 254-1	신길동 233-4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1	65	10	집산 도로	28	신길동 252-9	신길동 252-11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356	신길동 209-112	신길동 196-24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321	신길동 253-318	신길동 337-255	일반 도로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205	신길동 260-5	신길동 319-6	일반 도로		서고56 (06.2.16)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4	8	집산 도로	159	신길동 4934-3	신길동 205-1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6	8~10	집산 도로	128	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7	8~10	집산 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집산 도로	155	신길동 424-3	신길동 340-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2	9	8	집산 도로	54	신길동 162-19	신길동 155-6	일반 도로		서고7 (72.1.7)	신길1 생활권
기정	소로	2	12	8	집산 도로	180	신길동 237	신길동 242	일반 도로		서고51 (8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2	30	8	집산 도로	20	신길동 288-2	신길동 287-4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3	8	집산 도로	151	신길동 298-32	신길동 296-4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57	8	집산 도로	272	신길동 115-7	신길동 159-38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69	8~ 9.5	집산 도로	114	신길동 253-69	신길동 329-57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소로	2	106	8	집산 도로	86	신길동 117-1	신길동 117-19	일반 도로			신길1 생활권, 재정비촉진지 구내 기폐지 [서고445 (07.11.2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09	8	집산 도로	341	신길동 4934-4	신길동 205-220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2	153	8	집산 도로	162	신길동 341-1	신길동 400-16	일반 도로		서고331 (90.9.28)	
기정	소로	3	1	4.5~ 6	집산 도로	208	신길동 355-535	신길동 294-8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2	4	집산 도로	146	신길동 4934-8	신길동 201-6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기정	소로	3	3	6	집산 도로	97	신길동 4903-21	신길동 232-1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26	신길동 2862	신길동 3574-15	일반 도로		서고228 (02.6.18)	
기정	소로	3	5	4	특수 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445 (07.11.29)	보행자전용 도로반영
기정	소로	3	6	6	집산 도로	36	신길동 347-295	신길동 324-18	일반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3	7	4	집산 도로	170	신길동 342-161	신길동 342-142	일반 도로		서고258 (11.9.8)	
기정	소로	3	11	6	집산 도로	35	신길동 4902-16	신길동 4902-14	일반 도로		서고51 (8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38	6	집산 도로	151	신길동 323-2	신길동 325-65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3	46	6	집산 도로	30	신길동 262-54	신길동 236-37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64	6	집산 도로	25	신길동 254-4	신길동 252-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70	6	집산 도로	32	신길동 252-9	신길동 253-126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신길지구 중심
기정	소로	3	102	6	집산 도로	47	신길동 197-6	신길동 196-6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기정	소로	3	104	6	집산 도로	40	신길동 160-28	신길동 159-62	일반 도로		건고768 (64.1.24)	

※ 연장 및 위치내()는 축진지구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34호선	중로 2-34호선	• 도로모통이의 길이 변경 = 6m → 8m	• 교차로 부분 회전폭이 좁아 차량진입의 어려움 및 사고유발 등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모통이의 길이 조정

나) 철 도(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7호선)	성동구 화양6일대	온수동 산2-1일대	-	43,760	-	서고77 (93.3.18)	7호선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신풍역)	신길동 3599 일대	6,623.5	-	6,623.5	서고77 (93.3.18)	신풍역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보라매역)	신길동 508 일대	8,317.6	-	8,317.6	서고77 (93.3.18)	보라매역

다) 주 차 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신길동 232-51 일원	2,977	-	2,977	영고51 (03.10.2)	지하 주차장
기정	2	주차장	신길동 236-10	676.3	-	676.3	서고258 (11.9.8)	

라) 공 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메낙골	근린공원	신길동 895 일대	57,703.6	-	57,703.6	건고138 (77.7.9)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19,503.9	-	19,503.9	건고258 (82.7.12)	
기정	3	-	근린공원	신길동 223-17 일대	10,259.0	-	10,259.0	서고445 (07.11.29)	
기정	4	-	근린공원	신길동 243-58 일대	13,776.7	-	13,776.7	서고445 (07.11.29)	
기정	5	-	근린공원	신길동 314-33 일대	9,089.0	-	9,089.0	서고445 (07.11.29)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337-88	1,633.0	-	1,633.0	-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1,981.0	서고445 (07.11.29)	
기정	3	-	어린이 공원	신길동 281-6 일대	3,464.0	-	3,464.0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	소공원	신길동 202-73 일대	5,901.0	—	5,901.0	서고445 (07.11.29)	
기정	2	—	소공원	신길동 205-63 일대	1,015.0	—	1,015.0	서고445 (07.11.29)	
기정	3	—	소공원	신길동 201-84 일대	513.0	—	513.0	서고445 (07.11.29)	
기정	4	—	소공원	신길동 4903-16 일대	1,188.0	—	1,188.0	서고445 (07.11.29)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79.9	—	1,479.9	서고445 (07.11.29)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636.2	—	1,636.2	서고445 (07.11.29)	
기정	7	—	소공원	신길동 2135 일대	1,024.1	—	1,024.1	서고445 (07.11.29)	
기정	8	—	소공원	신길동 3584 일대	4,046.3	—	4,046.3	서고445 (07.11.29)	
기정	9	—	소공원	신길동 3126 일대	2,348.5	—	2,348.5	서고445 (07.11.29)	
기정	10	—	소공원	신길동 3403 일대	2,133.8	—	2,133.8	서고445 (07.11.29)	
기정	11	—	소공원	신길동 3591 일대	527.0	—	527.0	서고445 (07.11.29)	
기정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523.2	—	2,523.2	서고445 (07.11.29)	
기정	13	—	소공원	신길동 335-10 일대	1,661.4	—	1,661.4	서고445 (07.11.29)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1.3	—	2,001.3	서고445 (07.11.29)	
기정	15	—	소공원	신길동 285-9 일대	912.0	—	912.0	서고445 (07.11.29)	
기정	16	—	소공원	신길동 279-1 일대	1,279.0	—	1,27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	소공원	신길동 296-65 일대	331.0	—	331.0	서고258 (11.9.8)	
기정	18	—	소공원	신길동 159-35 일대	433.0	—	433.0	서고258 (11.9.8)	
기정	19	—	소공원	신길동 3599 일대	805.0	—	805.0	서고258 (11.9.8)	

마) 녹 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9-1 일대	1,004.0	-	1,004.0	서고445 (07.11.29)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5-163 일대	1,000.0	-	1,000.0	서고445 (07.11.29)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5-143 일대	803.0	-	803.0	서고445 (07.11.29)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9-31 일대	1,701.0	-	1,701.0	서고445 (07.11.29)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25 일대	614.0	-	614.0	서고445 (07.11.29)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20 일대	568.0	-	568.0	서고445 (07.11.29)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 일대	726.3	-	726.3	서고445 (07.11.29)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 일대	709.8	-	709.8	서고445 (07.11.29)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 일대	1,274.3	-	1,274.3	서고445 (07.11.29)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 일대	735.3	-	735.3	서고445 (07.11.29)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4921-1 일대	2,722.0	-	2,722.0	서고445 (07.11.29)	
변경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97.3	감) 11.9	2,585.4	서고445 (07.11.29)	
기정	1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66 일대	830.0	-	830.0	서고445 (07.11.29)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1,404.0	-	1,404.0	서고445 (07.11.29)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847.2	-	847.2	서고445 (07.11.29)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335 일대	749.0	-	74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121 일대	1,226.6	-	1,226.6	서고445 (07.11.29)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1 일대	1,621.0	-	1,621.0	서고445 (07.11.29)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88 일대	1,210.7	-	1,210.7	서고445 (07.11.29)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35 일대	314.5	-	314.5	서고445 (07.11.29)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156 일대	811.2	-	811.2	서고445 (07.11.29)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516 일대	1,912.4	-	1,912.4	서고445 (07.11.29)	
기정	2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91 일대	535.0	-	535.0	서고445 (07.11.29)	
기정	2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94 일대	638.0	-	638.0	서고445 (07.11.29)	
기정	2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0-1 일대	1,602.0	-	1,602.0	서고445 (07.11.29)	
기정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298.1	-	298.1	서고445 (07.11.29)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25.9	-	1,425.9	서고445 (07.11.29)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771.7	-	771.7	서고445 (07.11.29)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622.1	-	622.1	서고445 (07.11.29)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6 일대	170.7	-	170.7	서고445 (07.11.29)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43 일대	250.0	-	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50.4	-	1,250.4	서고445 (07.11.29)	
기정	33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94 일대	409.0	-	409.0	서고445 (07.11.29)	
기정	3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1-3 일대	1,250.0	-	1,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 일대	664.0	-	664.0	서고445 (07.11.29)	
기정	3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68-3 일대	1,277.0	-	1,277.0	서고445 (07.11.29)	
기정	3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76-44 일대	920.0	-	920.0	서고445 (07.11.29)	
기정	3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20 일대	534.0	-	534.0	서고445 (07.11.29)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연결녹지	• 녹지면적 감소 - 면적 : 2,597.3㎡ → 2,585.4㎡ (감 11.9㎡)	• 연결한 도로의 도로모퉁이의 길이 변경에 따른 연결녹지 면적 일부 감소

바)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공지	신길동 253-312 일대	153.0	-	153.0	-	신길5 주택건설사업
기정	14	공공공지	신길동 201-65	37.0	-	37.0	서고445 (07.11.29)	
기정	15	공공공지	신길동 202-28	382.0	-	382.0	서고445 (07.11.29)	
기정	16	공공공지	신길동 567 일대	269.0	-	269.0	서고445 (07.11.29)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사) 시 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5-9	2,580.0	-	2,580.0	서고370 (83.7.20)	신영 사려가
기정	2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9-4외 6	781.0	-	781.0	서고5 (83.1.7)	신동

아)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신길동 253-251	2,980.0	-	2,980.0	서고127 (97.11.10)	대림 (변전시설)

자)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	신길동 223-7 일대	1,444.0	-	1,444.0	서고445 (07.11.29)	신길4 동주민센터
기정	2	공공청사	-	신길동 302-5 일대	1,561.0	-	1,561.0	서고445 (07.11.29)	신길3 동주민센터
기정	3	공공청사	-	신길동 232-79 일대	163.0	-	163.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4	공공청사	-	신길동 340-4 일대	118.0	-	118.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57.2	-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차) 학 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신길4동 210	21,940.0	—	21,940.0	서고373 (78.7.27)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2,273.0	—	22,273.0	서교위76 (88.12.21)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2,888.0	—	32,888.0	서고683 (87.9.24)	
	4	학교	중학교	신길5동 342-49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5	학교	고등학교	신길5동 342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6 (85.7.10)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신길3동 285-1	19,063.0	—	19,063.0	서교위76 (88.12.21)	
기정	7	학교	중학교	신길동 2064 일대	9,999.2	—	9,999.2	서고445 (07.11.29)	

카)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문화시설	—	신길동 158-20 일대	1,208.0	—	1,208.0	서고445 (07.11.29)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 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타) 도 서 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신길동 252-11 일대	2,300.3	—	2,300.3	서고445 (07.11.29)	구립 도서관

파)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32-51 일원	873.0	—	873.0	영고51 (03.10.2)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24-24 일대	1,181.0	—	1,181.0	서고445 (07.11.29)	
기정	4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243-26일대	389.6	—	389.6	서고313 (1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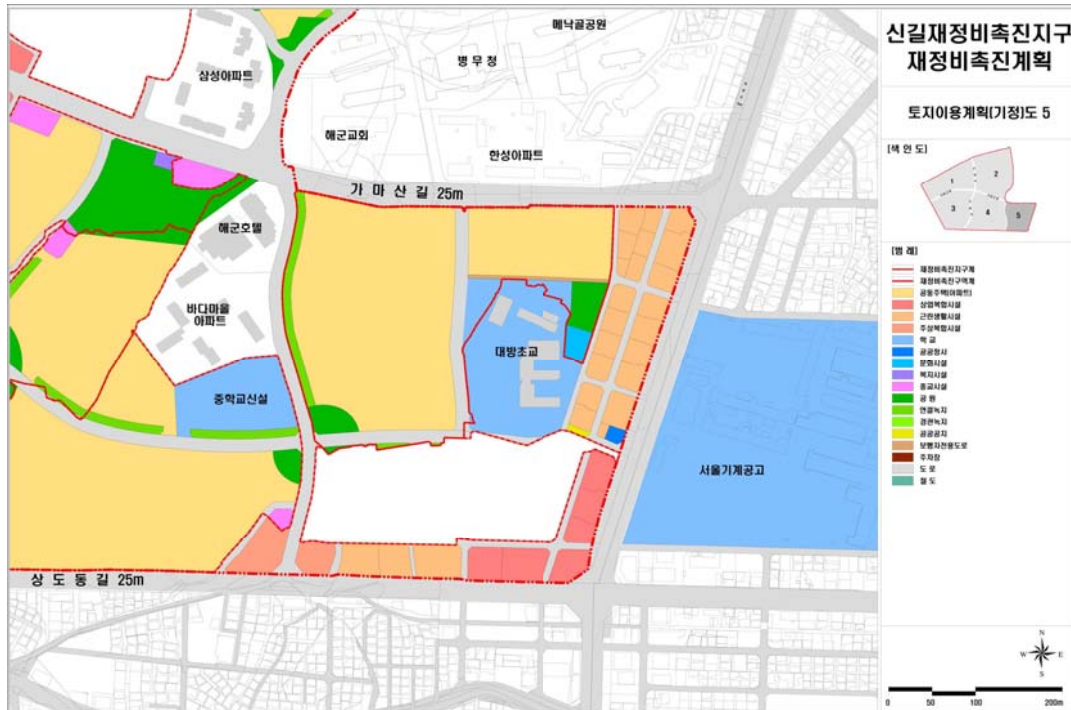
- 러. 광고물관리계획 (변경없음)
- 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버. 방재계획 (변경없음)
- 서.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 어. 에너지순환계획 (변경없음)
- 저.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 처. 기타 (변경없음)

3. 신길1, 2, 4, 6, 10, 15, 16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관련사항 및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되는 단독주택지의 존치계획은 향후 신길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일괄 반영하여 고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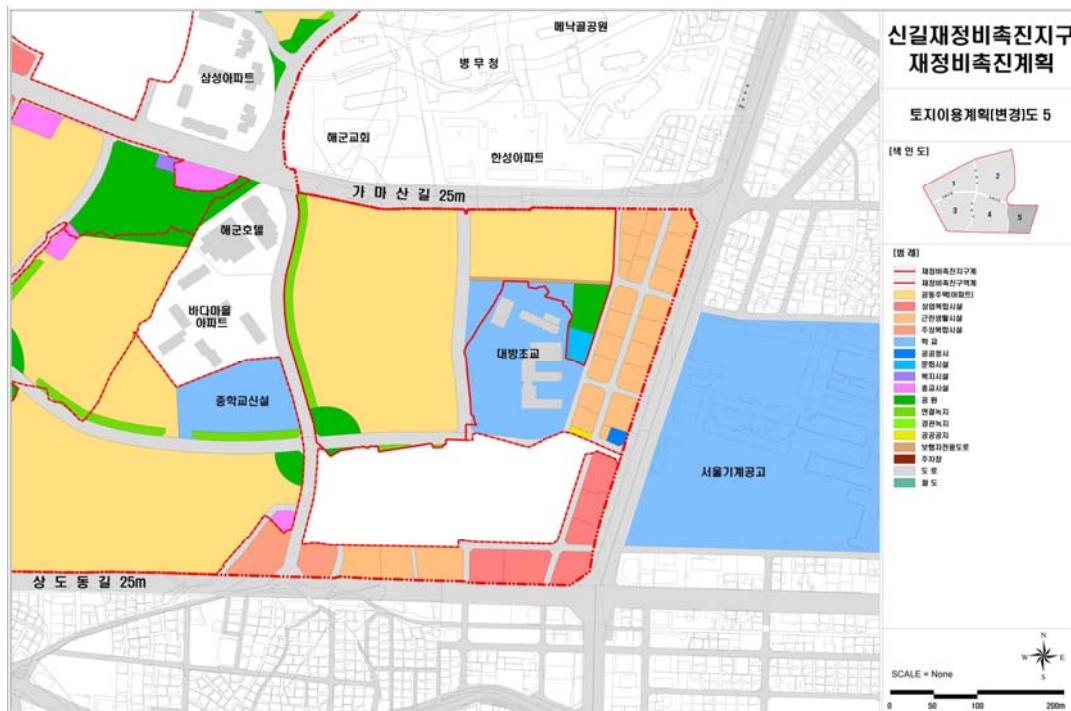
4.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6~352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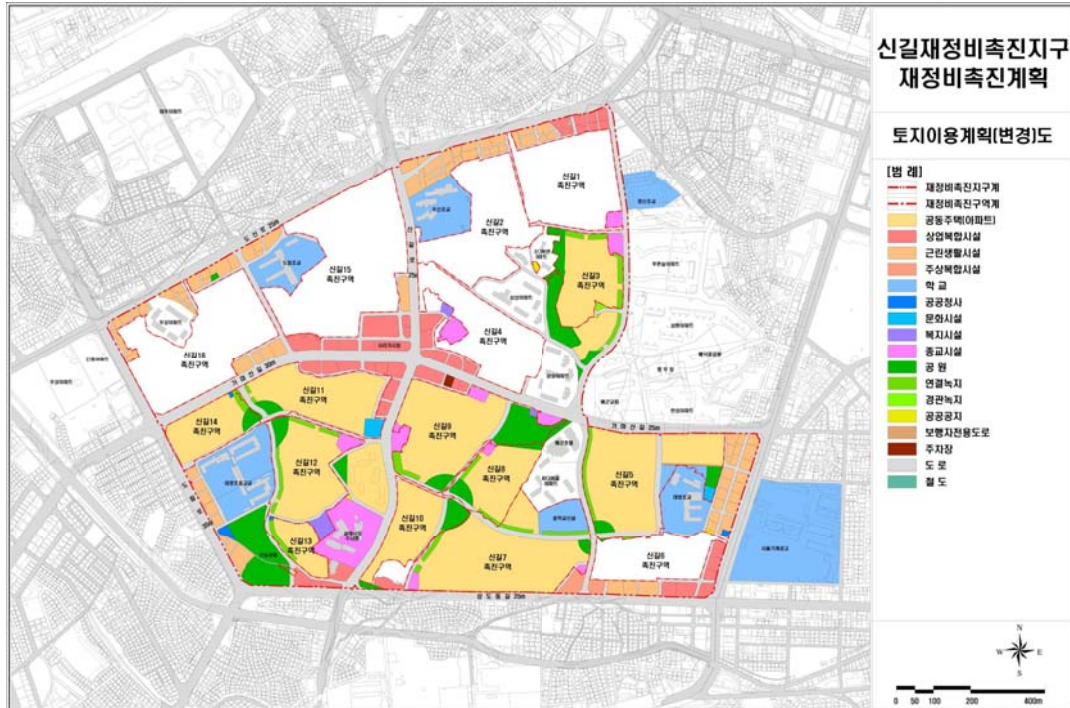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기정)도(신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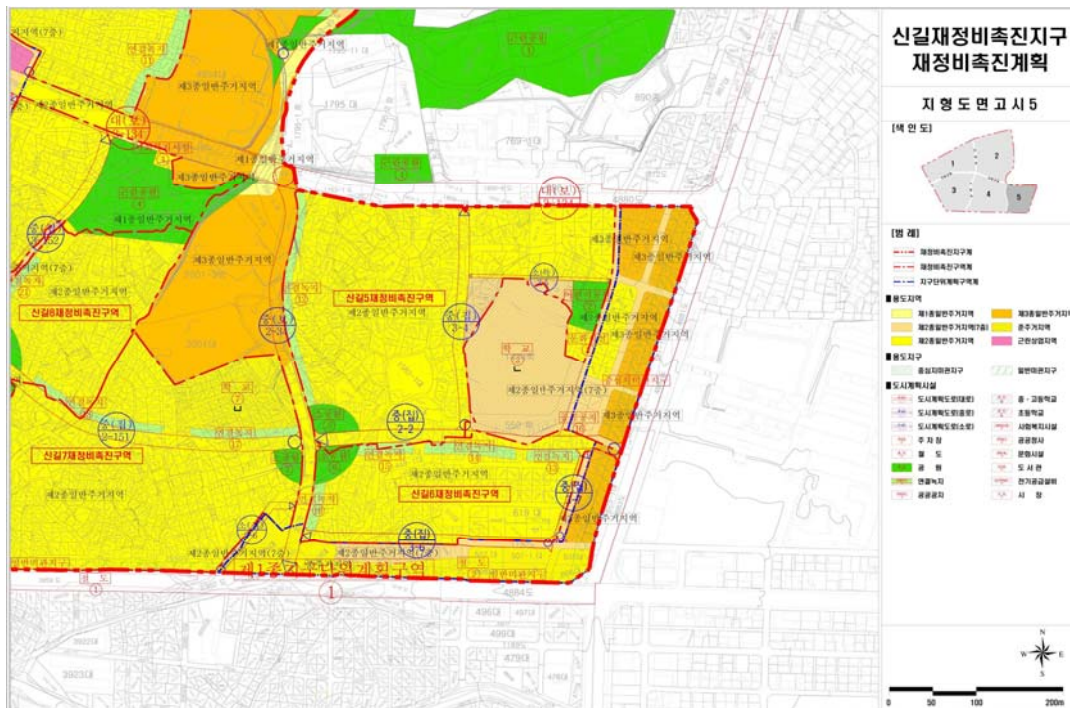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변경)도(신길5)]



[토지이용계획도]



[지형도면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2호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비고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아파트건설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2-6 일원	14,213.00	12,697.30	아파트 4개동(장기전세 2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4. 사업비 : 50,443.588천원
5. 사업시간 변경전 : 2013. 1 - 2015.12
사업시간 변경후 : 2013. 1 - 2022. 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7,772.6	증) 78.9	737,851.5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 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의 측량 결과 반영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년도 : 2016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737,772.6	증) 78.9	737,851.5	100.0	
획 지	소 계	505,562.0	감) 286.1	505,275.9	68.5	
	단독주택	29,673.0	—	29,673.0	4.0	
	공동주택	310,639.8	감) 286.1	310,353.7	42.1	측량결과 반영(감134.1㎡) 현황도로 제척(감152.0㎡)
	복합시설	148,709.2	—	148,709.2	20.2	
	근린생활시설	7,907.0	—	7,907.0	1.1	
	종교시설	8,633.0	—	8,633.0	1.2	
기반시설	소 계	232,210.6	증) 365.0	232,575.6	31.5	
	공원녹지	47,235.0	—	47,235.0	6.4	
	공공시설	16,528.0	—	16,528.0	2.2	
	공공공지	178.0	—	178.0	0.0	
	문화시설	5,566.0	—	5,566.0	0.8	
	학 교	59,407.0	감) 14.0	59,393.0	8.1	
	도 로	103,296.6	증) 379.0	103,675.6	14.0	측량결과 반영(증 237.0㎡) 제척된 현황도로 반영(142.0㎡) ※측량에 따른 현황도로 감소(10.0㎡)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및 8-2획지 제척 반영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소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교육시설	계	2	59,407.0	감) 14.0	59,393.0	
	초등학교	1	12,061.0	-	12,061.0	
	고등학교	1	47,346.0	감) 14.0	47,332.0	
공공청사	계	4	6,361.0	증) 18.0	6,379.0	
	치안센터	1	400.0	-	400.0	
	주민센터	1	3,364.0	-	3,364.0	
	일자리+복지센터	1	1,997.0	-	1,997.0	
	도시재생지원센터	1	600.0	증) 18.0	618.0	
문화시설	문화시설	1	5,566.0	-	5,566.0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1	뉴타운	노량진1동	232-19	7.3	19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		노량진2동	278-2	13.2	19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		노량진2동	294-220	7.3	21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22	뉴타운	노량진2동	312-75	1.6	19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3		노량진1동	227-5	4.1	210%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4		노량진2동	270-3	3.7	19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5		대방동	13-31	3.3	190%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6		대방동	23-61	5.7	210%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26		대방동	23-61	5.6	210%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및 8-2획지 제척 반영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737,772.6	증) 78.9	737,851.5	－	
촉진 구역	소계 (8개 구역)		461,922.0	감)1,292.1	460,629.0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2,118.0	－	132,118.0	주택재개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07.0	－	16,207.0	주택재개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3,153.0	－	73,153.0	주택재개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40,512.5	－	40,512.5	주택재개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6,918.0	－	36,918.0	주택재개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24.0	－	72,824.0	주택재개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3,154.5	－	33,154.5	주택재개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44-1번지 일대	57,035.0	감)1,292.1	55,742.9	주택재개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존치 구역	소계 (5개 구역)		147,416.0	-	147,416.0	-	
	노량진9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1번지 일대	18,564.0	-	18,564.0	-	
	노량진10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305.0	-	57,305.0	-	
	노량진1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0	-	21,415.0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577.0	-	15,577.0	-	
	노량진13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34,555.0	-	34,555.0	-	
존치시설		103,570.0	증)1,371.0	104,941.0	-		
기시행 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17,539.6	-	17,539.6	(주택재개발)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7,325.0	-	7,325.0	(시장정비사업)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존치시설-종교시설:1,229.0㎡, 현황도로:152.0㎡)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측량에 따른 8-2획지 내 현황도로 감소(10.0㎡)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계획 (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계			737,772.6	증) 78.9	737,851.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722,236.6	증) 78.9	722,315.5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6,991.0	－	46,991.0	6.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7,859.9	감) 14.0	167,845.9	22.7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26,914.2	증) 92.9	127,007.1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0,471.5	－	380,471.5	51.6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측량에 따른 8-2획지 내 현황도로 감소(10.0㎡)

○ 노량진 1~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용도지역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57,035.0	감) 1,292.1	55,742.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481.0	감) 1,243.0	2,238.0	4.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53,554.0	감) 49.1	53,504.9	96.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존치시설-종교시설:1,229㎡, 현황도로:152㎡)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 면적 18.0㎡ 증가 / KT 면적 18.0㎡ 감소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10) 용도지구의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별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구역면적 (㎡)	기준 용적률(%)	상한용적률 (%)	순부담면적 (㎡)	대지면적 (㎡)	완화 받을 수 있는 용적률(%)	계획용적률 (%)	비고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132,118	190	250	20,907.0	101,866.0	244.21	244.21	-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16,207.0	190	414	2,846.0	12,108.0	414.00	397.94	역세권밀도계획 적용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73,153.0	190	250	9,392.0	44,300.0	244.03	244.03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40,512.5	210	260	5,796.2	31,540.8	260.17	252.66	기준용적률 20% 완화 (측량성과반영)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36,918.0	190	250	6,890.0	28,527.0	249.65	249.65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72,824.0	210	300	12,305.0	54,346.0	271.81	268.01	기준용적률 20% 완화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33,154.5	195	240	4,173.0	22,478.0	242.06	237.44	기준용적률 20% 완화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57,035.0	210	300	7,029.3	42,215.0	244.60	227.00	기준용적률 20% 완화
	변경 55,742.9			6,923.3	42,080.9	242.77	229.70	

※ 기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2017.6.15.)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계획용적률 산정 착오 정정
 (227.59%→227.0%)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및 8-2획지 제척 반영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기반시설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 반 시 설	총 계	232,210.6	증) 365.0	232,575.6	100.0
	도 로	103,296.6	증) 379.0	103,675.6	44.5
	공 원	47,235.0	-	47,235.0	20.3
	학 교	59,407.0	감) 14.0	59,393.0	25.6
	공공시설	16,528.0	-	16,528.0	7.1
	공공공지	178.0	-	178.0	0.1
	문화시설	5,566.0	-	5,566.0	2.4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

- 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비율은 1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재정비 촉진구역 (㎡) ①	계획 기반시설 (㎡) ②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③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④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 시설면적(㎡) ⑤	순부담면적 (㎡) (B=②-③-④-⑤)	순부담비율 (%) (B/①)
계	기정	461,922.00	126,610.20	35,007.70	22,303.30	-	69,338.50	15.01
	변경	460,629.90	126,865.20	34,987.30	22,684.70	-	69,232.50	15.03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18.00	30,252.00	3,681.00	5,664.00	-	20,907.00	15.82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7.00	4,099.00	215.00	1,038.00	-	2,846.00	17.56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153.00	28,853.00	14,415.00	5,046.00	-	9,392.00	12.84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40,512.50	9,955.70	2,098.90	2,099.90	-	5,796.20	14.31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6,918.00	8,391.00	467.00	1,034.00	-	6,890.00	18.66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24.00	22,197.00	6,733.00	3,159.00	-	12,305.00	16.9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0	10,676.50	5,442.50	1,061.00	-	4,173.00	12.59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57,035.00	12,186.00	1,955.30	3,201.40	-	7,029.30	12.32
	변경	55,742.90	12,441.00	1,934.90	3,582.80	-	6,923.30	12.42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존치시설-종교시설:1,229㎡, 현행도로:152㎡)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7) 방재계획(변경없음)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20)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1)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구역별 정비계획

구 역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 준 용적률(%)	상 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 고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18.0	101,886.0	190	250	50	244.21	-/30이하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7.0	12,108.0	190	414	50	244.03	-/30이하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153.0	44,300.0	190	250	50	235.77	19/30이하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512.5	31,540.0	210	260	60	252.66	20/30이하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6,918.0	28,527.0	190	250	50	249.65	-/30이하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24.0	54,346.0	210	300	50	244.84	-/30이하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0	22,470.0	195	240	60	232.44	16/30이하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57,035.0	42,215.0	210	300	60	227.00	22/30이하	-
	변경	55,742.9	42,080.9	210	300	60	229.70	22/30이하	-

※ 기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2017.6.15.)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계획용적률 산정 착오 정정
(227.59%→227.0%)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존치시설-종교시설:1,229㎡, 현황도로:152㎡)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없음)

가) 노량진1~7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3-61번지 일대	57,035.0	감)1,292.1	55,742.9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준치시설-종교시설:1,229㎡, 현황도로:152㎡)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57,035.0	감) 1,292.1	55,742.9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13,439.0	증) 223.0	13,662.0	24.5	－
	도로	11,187.0	증) 237.0	11,424.0	20.5	－
	학교	799.0	감) 14.0	785.0	1.4	－
	공공시설	1,453.0	－	1,453.0	2.6	· 공공청사(618㎡), 치안센터(400㎡), KT(435㎡)
	소 계	43,596.0	감) 1,515.1	42,080.9	75.5	－
택 지 (획 지)	8 - 1	42,215.0	감) 134.1	42,080.9	77.9	
	8 - 2	1,381.0	감) 1,381.0	－	－	· 종교시설(1,229.0㎡) · 현황도로(152.0㎡)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준치시설-종교시설:1,229㎡, 현황도로:152㎡)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 면적 18.0㎡ 증가 / KT 면적 18.0㎡ 감소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 도로	745 (268)	노량진동 240-79	대방동 23-5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5 (35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기정	소로	3류	12	6~8	국지 도로	238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 43-2	일반도로	

※ ()는 노량진8구역 내 연장임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폭원 및 연장 변경은 없음

○ 학 교(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①	영화초교, 영등포중고교	학교	대방동 13-2번지일대	47,346.0 (799.0)	감) 14.0	47,332.0 (785.0)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공공청사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대방동 45-4번지일대	400.0	-	400.0	
변경	④	공공청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방동 45-4번지일대	600.0	증) 18.0	618.0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 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공동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내	90.00	증) 64.29	154.29	
	근린생활시설		1,533.09	증) 205.60	1,738.69	
	주민공동이용시설		1,500.00	감) 127.89	1,372.11	
	경로당		450.00	감) 4.25	445.75	
	어린이놀이터		1,265.15	증) 290.95	1,556.10	
	주민운동시설		781.20	감) 491.17	290.03	
	문고(작은도서관)		243.60	증) 22.80	266.40	
	보육시설		696.00	증) 61.20	757.20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노량진8 재정비	57,035.0	8	-	동작구 노량진동 23-61번지일대	277	1	2	275	-	-
변경	촉진구역	55,742.9		-		275	-	-	275	-	-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존치시설-종교시설:1,229㎡, 현황도로:152㎡)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57,035.0	8-1	42,215.0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일대	공동 주택	26.1	227.0	88	22층 이하	29층 이하
			8-2	1,381.0	동작구 대방동 44-1번지일대	종교 시설, 도로	건축법규에 따름				
변경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55,742.9	8-1	42,080.9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일대	공동 주택	20.1	229.7	88	22층 이하	29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 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기정	1,007	172	80	70	22	835	325	46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6m ●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 기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2017.6.15.)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계획용적률 산정 착오 정정
(227.59%→227.0%)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존치시설-종교시설:1,229㎡, 현황도로:152㎡)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규모별 세대수				비고
					합계	40㎡이하	40㎡~50㎡	50~60㎡	
기정	노량진8구역	42,215.0	3	—	172	80	70	22	—
변경		42,080.9	3	—	172	80	70	22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8-2획지(준치시설-종교시설:1,229㎡, 현황도로:152㎡)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2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계			737,772.6	증) 78.9	737,851.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722,236.6	증) 78.9	722,315.5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6,991.0	－	46,991.0	6.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7,859.9	감) 14.0	167,845.9	22.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26,914.2	증) 92.9	127,007.1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0,471.5	－	380,471.5	51.6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측량에 따른 8-2획지 내 현황도로 감소(1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40	주간선 도로	6,490 (730)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 도로	상도동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장승배 기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도로	142	노량진동 51	노량진동 84-9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715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A	12~ 15	집산도로	2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101	12	집산도로	200	노량진동 27-2	노량진동 87-49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중로	3류	33	12	국지도로	3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46-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4	12	국지도로	65	노량진동 233-5	노량진동 248-1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5	12	국지도로	95	노량진동 232-143	노량진동 232-25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6	12	국지도로	250	노량진동 232-188	노량진동 84-1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도로	188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도로	27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 도로		동작구고시 2000-45호 2000.10.26	
기정	소로	2류	C	8	국지도로	59	노량진동 271-32	노량진동 289-4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소로	2류	D	8	국지도로	61	노량진동 256-51	노량진동 294-63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4.25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안은 지구 내 연장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류	3	6	국지도로	71	노량진동 310-150	노량진동 310-46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A	6	국지도로	130	대방동 39-1	대방동 68-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20호 1976.06.02	
기정	소로	3류	6	6~1 5	국지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 우선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7	4	국지도로	93	노량진동 219-37	노량진동 215-87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C	4	국지도로	242	노량진동 83-15	노량진동 92-2				사도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745	노량진동240-79	대방동23-5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도로	645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25	15~ 20	집산도로	1,325 (292)	대방동49-6	상도동366-5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등용길
기정	소로	3류	B	6	국지도로	34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64호 1981.07.11	
기정	소로	3류	10	5~6	특수도로	25	대방동11-25	대방동11-8	보행자 전용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06.03	
기정	중로	2류	1	15~ 20	국지도로	944 (163)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60호 1993.03.12	만양로 3길
기정	소로	3류	12	6~8	국지도로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43-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안은 지구 내 연장

(2) 공간시설

■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기정	-	노량진근린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25-291일대	47,208	-	47,208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 1940.03.12	
지구 내	①	노량진근린공원 (대방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226-7번지	15,735.4	-	15,735.4	-	-
	②	노량진근린공원 (송학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25-291번지일대	11,654.0	-	11,654.0	-	-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일대	11,080.0	-	11,080.0	-	-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일대	1,235.0	-	1,235.0	-	-
	⑤	노량진근린공원 (노들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119-171번지일대	6,881.6	-	6,881.6	-	-

■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노량진동 329-12번지 일대	178	-	178	동작구고시 제2003-94호 (2003.8.30)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대방동 45-4일대	400	-	400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6.3)	-
기정	②	공공청사	노량진2동 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일대	3,364	-	3,364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기정	③	공공청사	동작구 일자리+복지 센터	노량진동 225-171일대	1,997	-	1,997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공공청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방동 45-4일대	600	증) 18	6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영화초교, 영등포중고교	학교	대방동 13-2번지일대	47,346	감) 14	47,332	서울시고시 제178호 (1978.4.26)	-
기정	②	노량진초교	학교	노량진동 237번지일대	12,061	-	12,061	서울시고시 제399호 (1978.8.08)	-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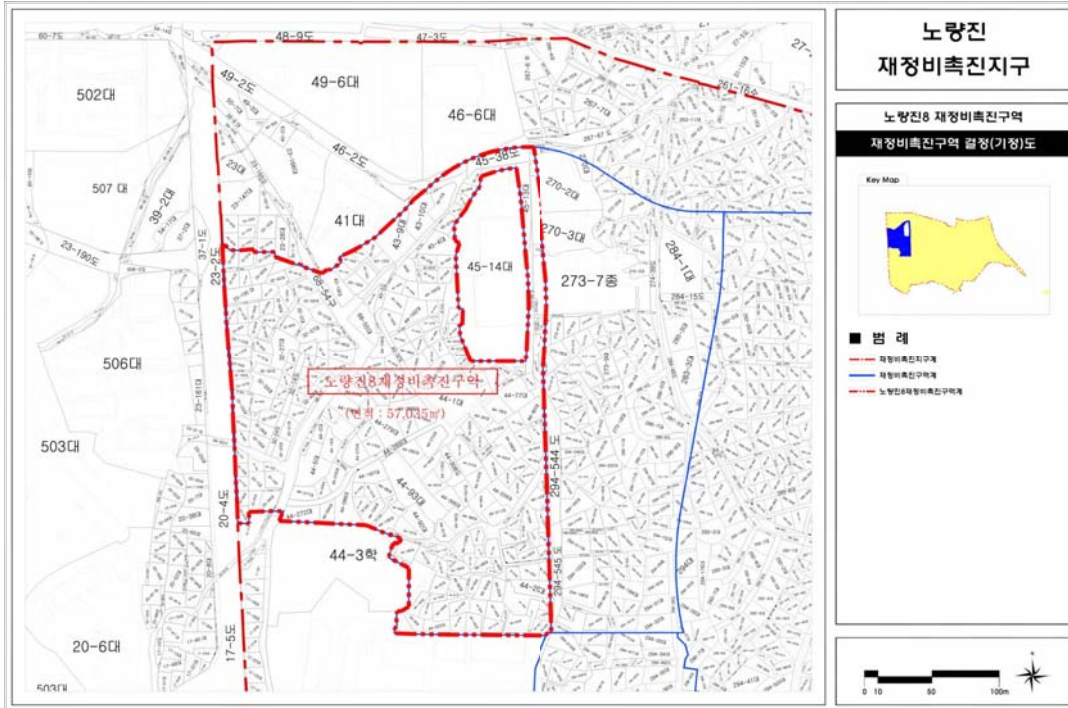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	노량진동 224-6번지	159	-	159	동작구고시 제2008-33호 (2008.7.31)	-

■ 문화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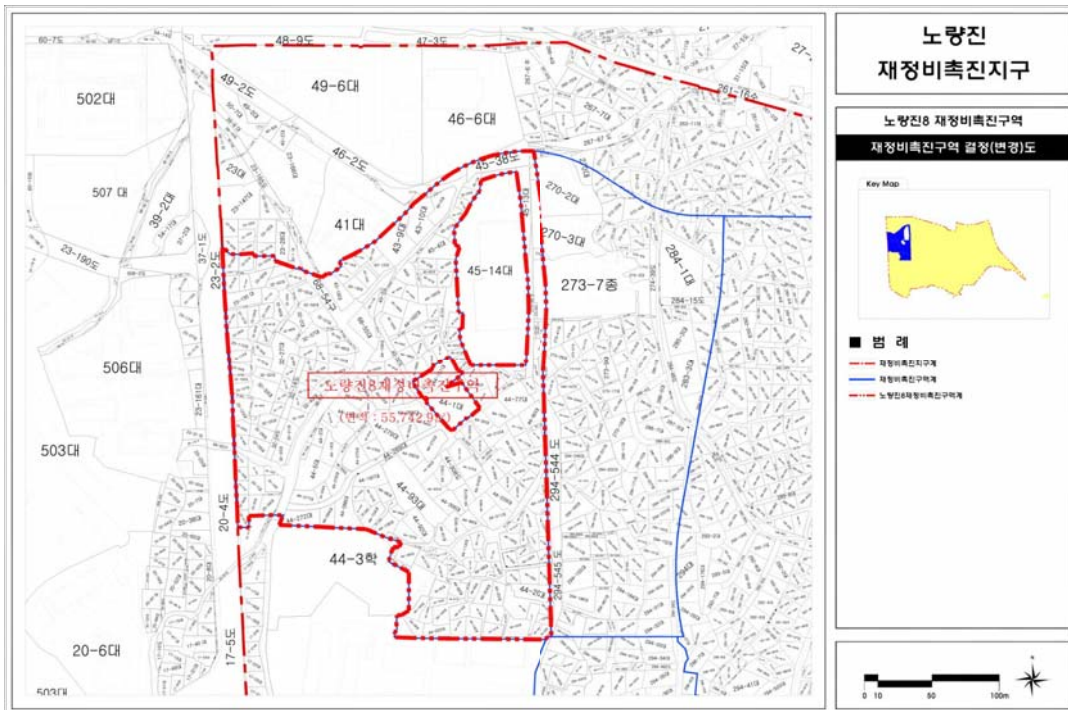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노량진동 294-432번지	5,566	-	5,566	서울시고시 제2017-213호 (2017.6.15)	-

-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따름
-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81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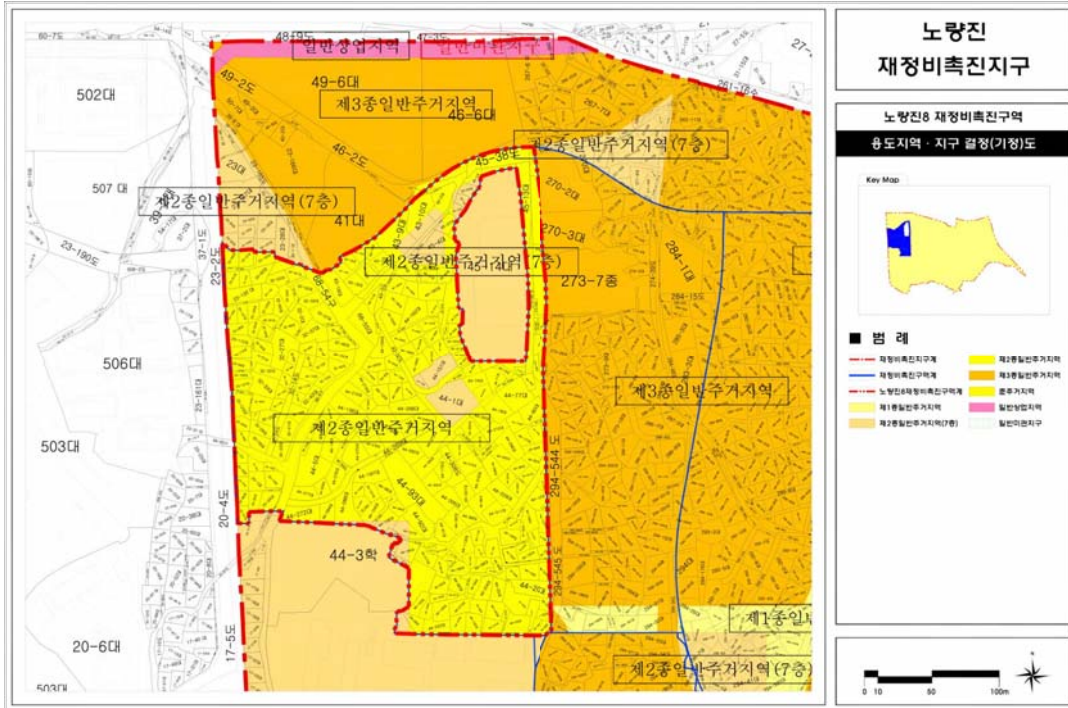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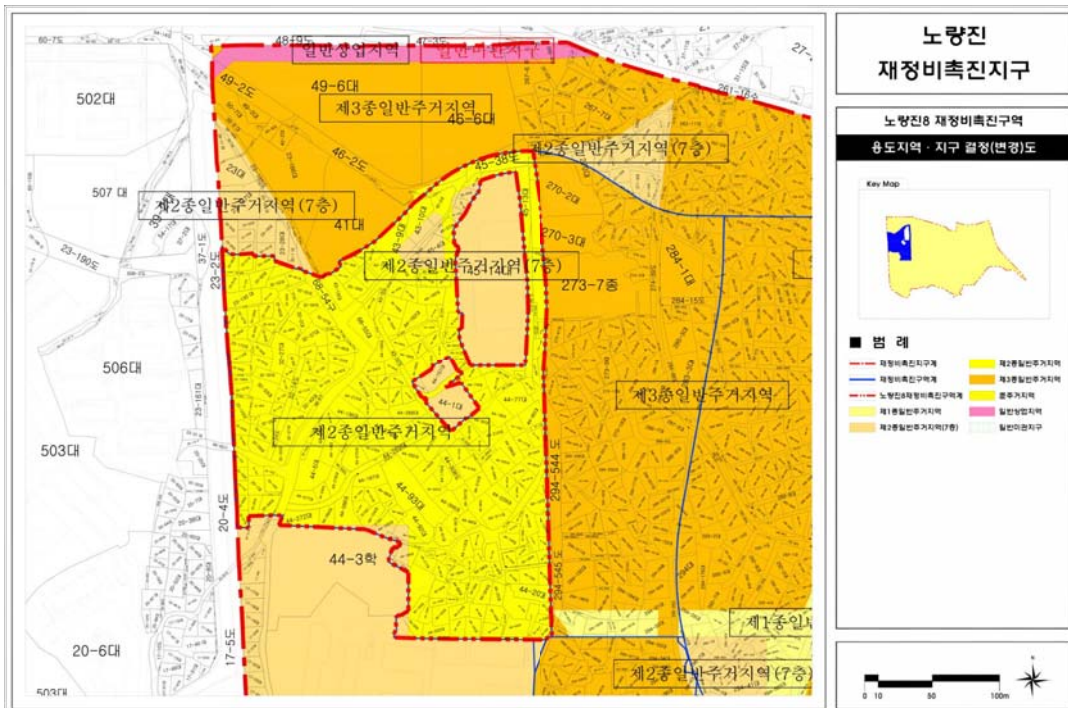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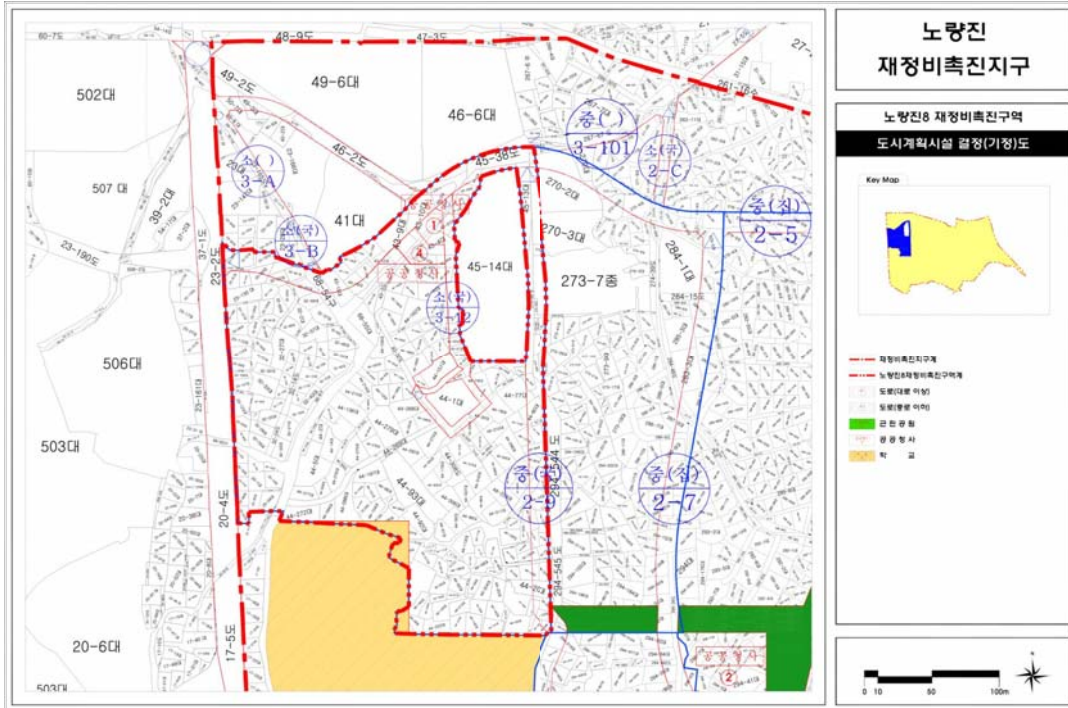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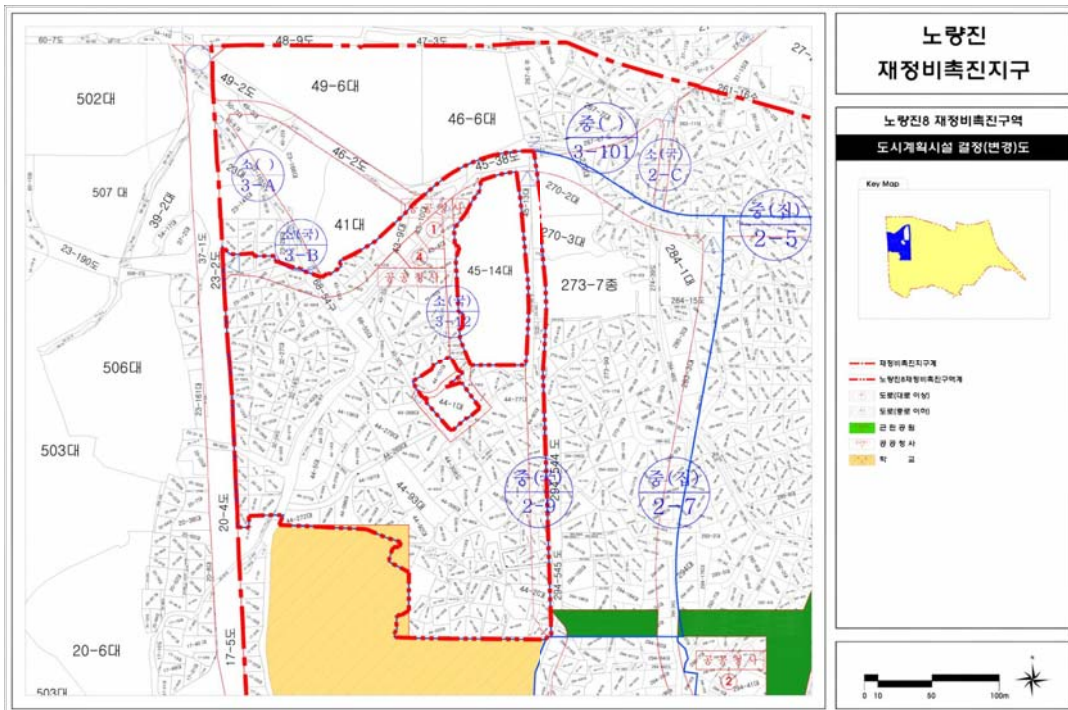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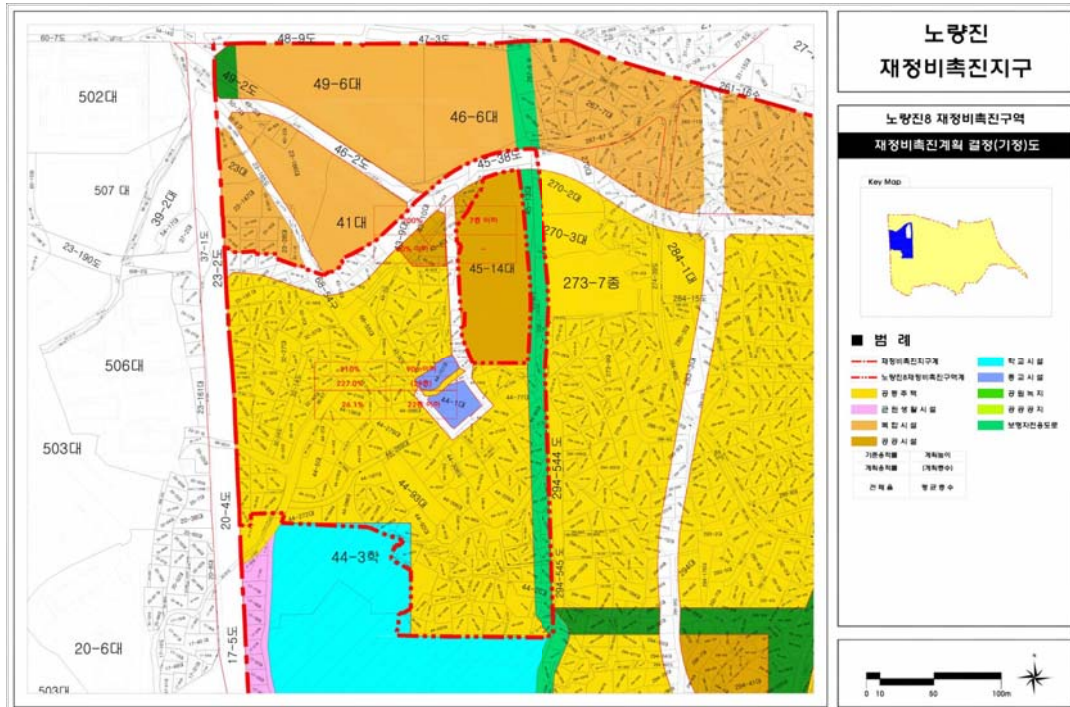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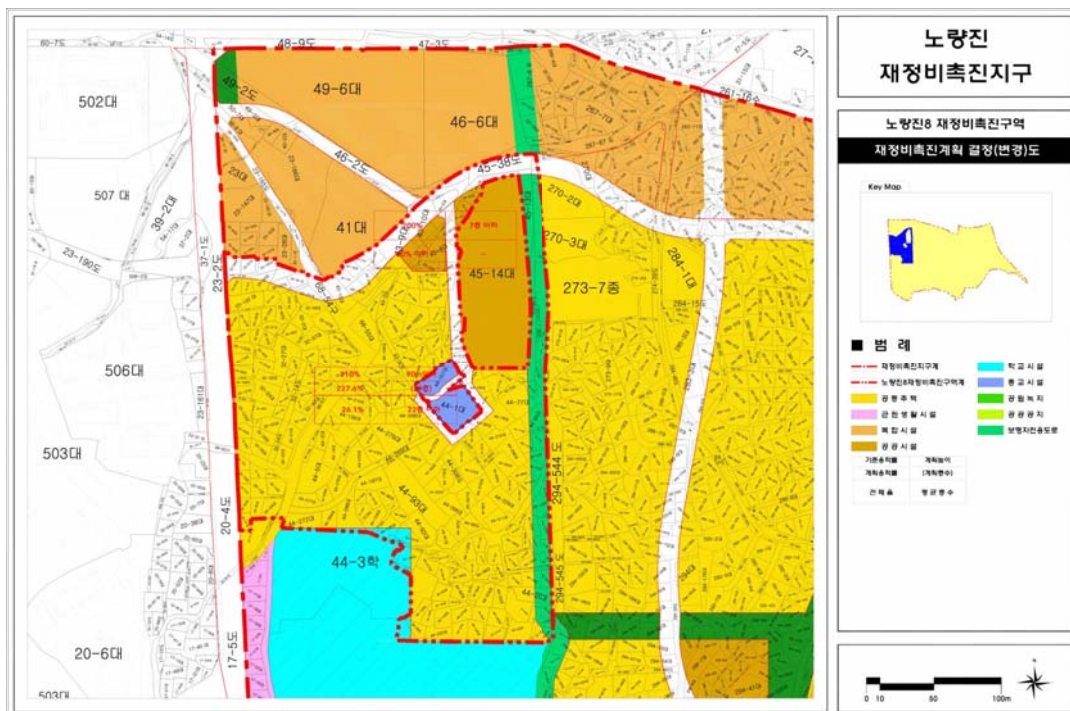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최초 결정, 서울시고시 제2016-303호(2016.10.6.)로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현황측량 결과 연속지적도가 정정됨에 따라 천마근린공원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마천동 산1-1일원	182,420	-	182,420	건설부고시 제465호 '71.8.6.	천마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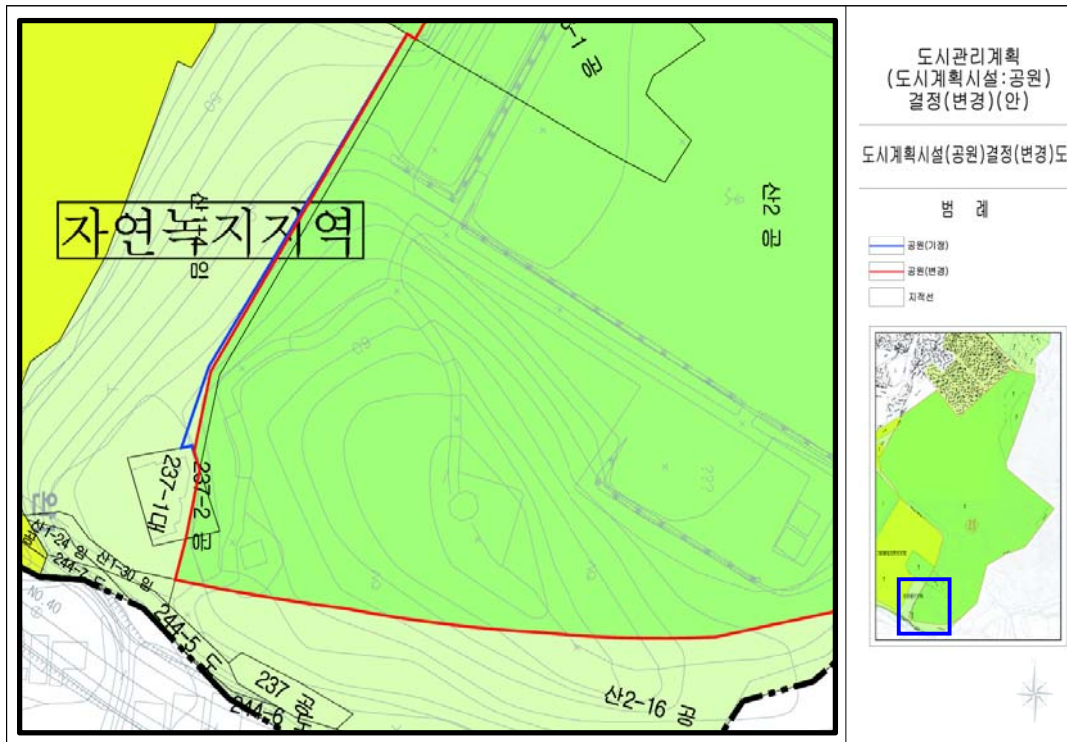
나. 지형도면 : 불임참조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9) 및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2147-2995)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5호

도시관리계획(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90호(2001.9.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9호(2016.4.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중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9.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결정 된 일부 토지에 직업훈련소 등이 기 입지되어 있어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 하계, 공릉동 일원	1,556,949.5	-	1,556,949.5	서고시 제2001-290호 (2001. 9.10.)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56,949.5	-	1,556,949.5	100.0	
주거지역		1,453,366.5	-	1,453,366.5	93.4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1,453,366.5	-	1,453,366.5	93.4	
	제1종일반주거지역	133,446.5	-	133,446.5	8.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70,922.0	-	170,922.0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160.0	-	119,160.0	7.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29,838.0	-	1,029,838.0	66.1	
일반상업지역		33,461.0	-	33,461.0	2.1	
자연녹지지역		70,122.0	-	70,122.0	4.5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③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 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56,949.5	-	1,556,949.5	100.0	
주택용지	844,108.8	-	844,108.8	54.2	
단독주택용지	297.6	-	297.6	0.0	
연립주택용지	16,909.4	-	16,909.4	1.1	
아파트용지	826,901.8	-	826,901.8	53.1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근린생활시설용지	1,726.7	—	1,726.7	0.1	
상업시설용지	33,461.6	—	33,461.6	2.1	
공공시설용지	677,652.4	—	677,652.4	43.6	
도로	307,844.2	—	307,844.2	19.8	
공원	114,140.0	—	114,140.0	7.3	
녹지	3,457.8	—	3,457.8	0.2	
공공공지	2,550.0	—	2,550.0	0.2	
공공청사	1,432.8	—	1,432.8	0.1	
사회복지시설	21,959.4	감)4,959.0	17,000.4	1.1	
자동차정류장	9,852.6	—	9,852.6	0.6	
종교시설	850.3	—	850.3	0.1	
주차장	10,362.3	—	10,362.3	0.7	
종합의료시설	11,076.0	—	11,076.0	0.7	
학교	189,099.5	—	189,099.5	12.1	
하천	746.6	—	746.6	0.0	
기타(충전소)	2,370.0	—	2,370.0	0.2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911.0	—	911.0	0.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999.9	—	999.9	0.1	
기타(직업훈련소 등)	—	증)4,959.0	4,959.0	0.3	—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사회복지시설용지 결정조서 : 변경

구분	토지이용계획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시설용지	중계동 501-1	9,757.5	감)4,959.0	4,798.5	

■ 변경사유서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용지	감)4,959.0㎡	직업훈련소 등이 입지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용지에서 제외

나. 기타(직업훈련소 등)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토지이용계획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기타(직업훈련소 등)	중계동 501-9	-	증)4,959.0	4,959.0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구)중계동 501-1

■ 변경사유서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타(직업훈련소 등)	증)4,959.0㎡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결정 된 중계동 501-1 일부 토지에 직업훈련소인 북부여성 발전센터 및 어린이집이 기 입지되어 있어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변경

④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

구분	획지	위치	면적(㎡)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	허용	상한	
신설	-	중계동 501-1	4,798.5	사회복지시설용지 - 불허용도 :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6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 변경사유서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	기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용지에 대하여 누락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조서 신설

2. 기타(직업훈련소 등) : 신설

구분	획지	위치	면적(㎡)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	중계동 501-9	4,959.0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구)중계동 501-1

구분	획지	위치	면적 (㎡)	건축물의 용도	건폐 율	용적 률	높이	비고
신설	-	중계동 501-9	4,959.0	다 이용원, 미용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차. 동물미용실 주)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4호너 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구)중계동 501-1

III. 위 변경 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IV.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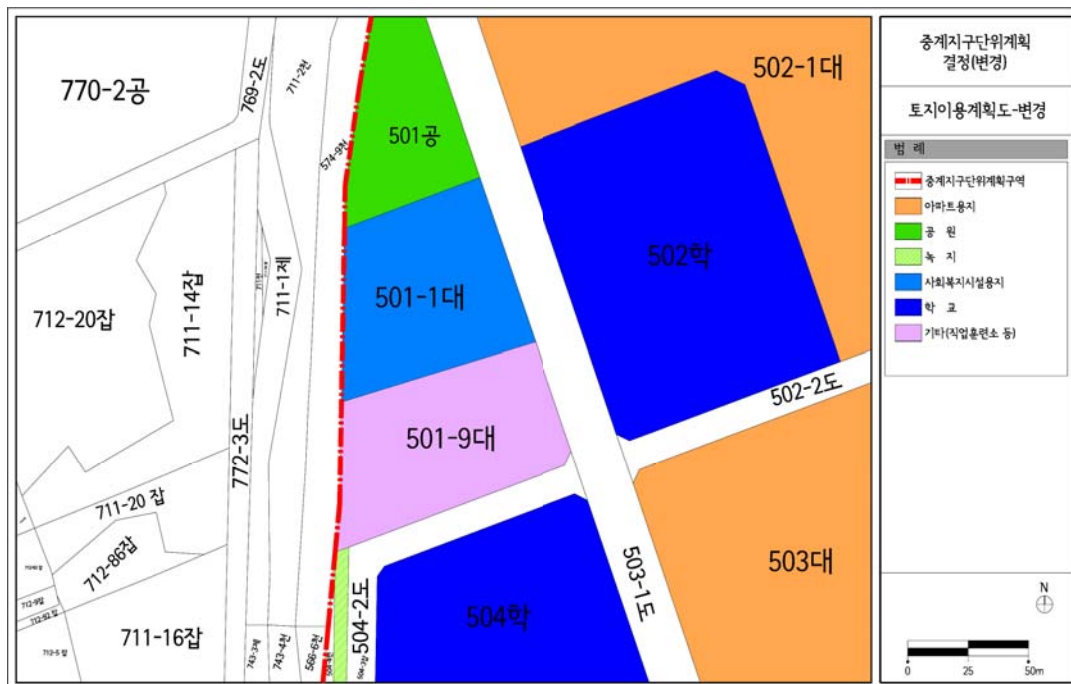
V.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0)
및 노원구 도시관리과(☎2116-38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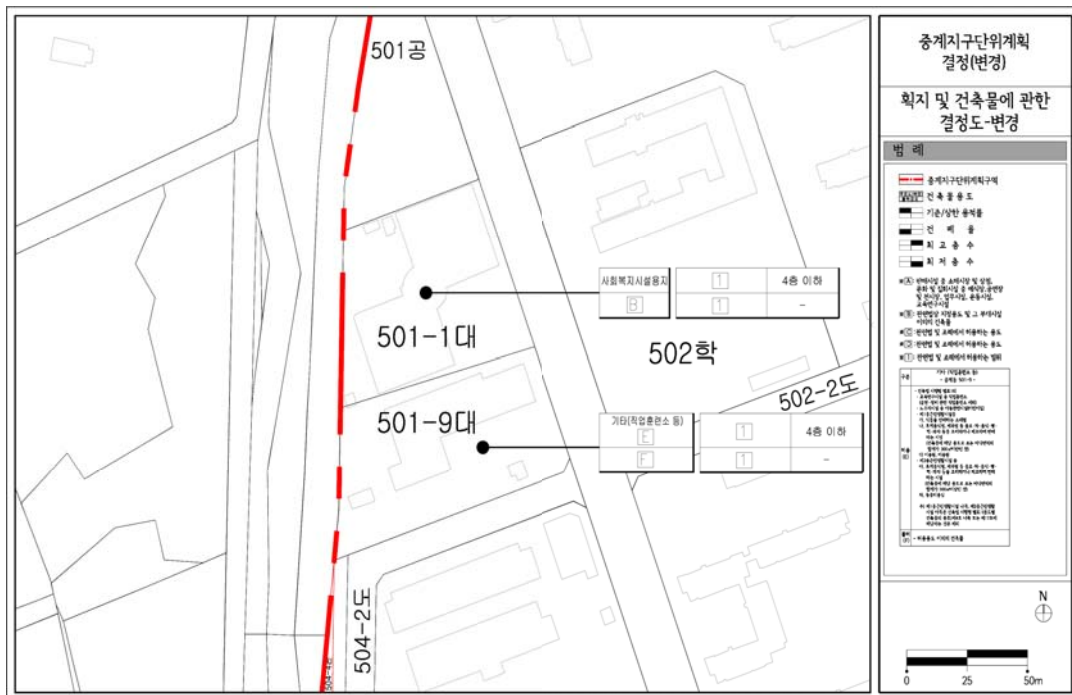
-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6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중량물재생센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경제적,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량물재생센터 내(변경사항 없음)
- 면 적 : 801,000㎡(변경사항 없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구분	처리시설	명 칭	시설의 종류 및 용량	처리공법	비고
당초	공공하수 처리시설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300톤/일	간접디스크 공법	
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슬러지 건조시설 650톤/일	(위와 같음)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배수구역 : 중랑, 뚝도, 청계
- 하수처리구역 : 동대문·중랑·성북·노원·강북·도봉·광진구 전역, 종로·중구·성동 및 의정부시 일부

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2019년까지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완료

7. 사업시행기간 : 2016. 6월 ~ 2019.12월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10.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29)와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02-2211-25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7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경제적,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서남물재생센터 내(변경사항 없음)
 - 면 적 : 1,032,000㎡(변경사항 없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구분	처리시설	명 칭	시설의 종류 및 용량	처리공법	비 고
당초	공공하수 처리시설	서남물재생센터	-	-	
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슬러지 건조시설 285톤/일 설치	간접디스크 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배수구역 : 반포, 노량진, 안양천, 강서
 - 하수처리구역 : 영등포·관악·동작·구로·양천·금천·강서 전역과 강남·서초 일부 및 광명시 일부
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2019년까지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완료
7. 사업시행기간 : 2016. 6월 ~ 2019.12월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10.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29)와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운영2실(☎ 02-3660-21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8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고시사유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
2.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자치구에서 자체 처리함.

3.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 95개소
(유형 45, 기념물 20, 민속문화재 22, 문화재자료 8)

연번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유형 (45)	유형 제1호	장충단비	중구 장충동 2가 197
2		유형 제2호	봉황각	강북구 우이동 254
3		유형 제4호	낙성대 삼층석탑	관악구 봉천동 228
4		유형 제5호	정업원 터	종로구 송인동 산3 청룡사 내
5		유형 제6호	용양봉저정	동작구 본동 10-7,10-30
6		유형 제7호	성제묘	중구 방산동 4-96
7		유형 제16호	삼군부 청헌당	노원구 공릉동 산 230-30육군사관학교 내
8		유형 제18호	수표교	중구 장충동 2가 197-1산 4-50호, 산6-5
9		유형 제19호	경희궁 흥화문	종로구 새문안길 50(서울역사박물관)
10		유형 제20호	경희궁 승정전	중구 장충동2가 192-5 동국대학교 내
11		유형 제22호	안평대군 이용 집터	종로구 부암동319-3외4필지
12		유형 제23호	석파정 별당	종로구 홍지동 125
13		유형 제25호	황학정	종로구 사직동 산 1-1
14		유형 제28호	삼층석탑	성북구 성북2동 97-1간송미술관
15		유형 제29호	석조팔각승탑	성북구 성북2동 73-2 간송미술관
16		유형 제30호	석불입상	성북구 성북2동 81-1간송미술관
17		유형 제31호	석 비로자나불좌상	성북구 성북2동 97-1간송미술관
18		유형 제32호	선화궁 터	종로구 신교동 1-1서울농학교내
19		유형 제34호	도선사 마애불입상	강북구 우이동 264
20		유형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	종로구 경운동 88
21		유형 제37호	삼군부총무당	성북구 삼선동1가303외 2필지
22		유형 제38호	금암기적비	은평구 진관동 45-5
23		유형 제39호	약사사 삼층석탑	강서구 개화동 332-1
24		유형 제40호	약사사 석불입상	강서구 개화동 332-2
25		유형 제41호	화산군 이연 신도비	서대문구 북가좌동 75-122
26		유형 제42호	구영릉 석물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45외1필지
27		유형 제43호	연령군 이훤 신도비	노원구 공릉동 산 230-30육군사관학교내
28		유형 제49호	봉천동 마애미륵불좌상	관악구 봉천동 산 4-9호
29		유형 제51호	기기국 번사창	종로구 삼청동 28-1
30		유형 제56호	종묘 어정	종로구 훈정동 2,62

연번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31	유형 (45)	유형 제57호	우암 송시열 집터	종로구 명륜동1가 2-22외3필지
32		유형 제65호	화계사 대웅전	강북구 수유동487
33		유형 제66호	흥천사 극락보전	성북구 돈암동 595
34		유형 제67호	흥천사 명부전	성북구 돈암동 595외1필지
35		유형 제71호	옛 제일은행 본점	중구 충무로1가53
36		유형 제72호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	성동구 성수동1가 642-1
37		유형 제91호	양호거사비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내
38		유형 제93호	원지동 석불입상 및 석탑	서초구 원지동 362-4외1필지
39		유형 제122호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종로구 창신동 130-1
40		유형 제124호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	노원구 중계본동 산102
41		유형 제127호	조계사 대웅전	종로구 견지동 27-7, 수송동44
42		유형 제130호	승동교회	종로구 인사동 137
43		유형 제131호	동아일보 사옥	종로구 세종로139-5외 3필지
44		유형 제134호	순명비 유강원 석물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45		유형 제315호	진관동 석 삼존불상	은평구 진관동 산 100-35
46		기념물제1호	잠실 뽕나무	서초구 잠원동 55-1
47		기념물제2호	화양동 느티나무	광진구 화양동 110-34
48		기념물제3호	강감찬 생가 터	관악구 봉천동 217-2외3필지
49	기념물 (20)	기념물제4호	세검정 터	종로구 신영동 168-6외1필지
50		기념물제5호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	중구 만리동 2가 6-1
51		기념물제7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성북구 성북동 222-1외2필지
52		기념물제8호	양천향교 터	강서구 가양동234
53		기념물제9호	망원정 터	마포구 합정동 457-1외1
54		기념물제10호	보신각 터	종로구 관철동 17-21등 총17필지
55		기념물제11호	허가바위	강서구 가양동 26-5외2필지
56		기념물제13호	무악산 동봉수대 터	서대문구 봉원동 산 1외1필지
57		기념물제14호	목멱산 봉수대 터	중구 예장동 산8-1외 1필지
58		기념물제15호	아차산 봉수대 터	종량구 목동 산 46-19
59		기념물제16호	배재학당 동관	중구 정동 34-5
60		기념물제18호	구룡산 수위관측소	용산구 청암동 169외1
61		기념물제19호	광통관	중구 남대문로 1가19
62		기념물제23호	해공 신익희 가옥	종로구 효자동 164-2
63		기념물제25호	숙옹 심씨 묘표	은평구 진관동 126
64		기념물제30호	월산대군 이정 태실	서초구 우면동 291-1
65		기념물제32호	불암산성	노원구 중계동 산 101-1

연번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66	민속 문화재 (22)	민속문화재제2호	서빙고동 부군당	용산구 서빙고동 195-3
67		민속문화재제3호	평창동 보현산신각	종로구 평창동 541-1
68		민속문화재제5호	와룡묘	중구 예장동 산5-6
69		민속문화재제6호	관성묘	중구 장충동2가 186-140
70		민속문화재제7호	장교동 한규설 가옥	성북구 정릉동 855-2국민대학교
71		민속문화재제8호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중구 필동2가 84-1남산골 한옥마을
72		민속문화재제9호	도정궁 경원당	광진구 모진동 145건국대학교
73		민속문화재제10호	성북동 이종석 별장	성북구 성북동 243-4
74		민속문화재제11호	상허 이태준 가옥	성북구 성북동 248외1필지
75		민속문화재제12호	반계 윤웅렬 별장	종로구 부암동 348외1
76		민속문화재제14호	가회동 한씨 가옥	종로구 가회동 175-2외3필지
77		민속문화재제15호	경운동 민병옥 가옥	종로구 경운동 66-7
78		민속문화재제17호	용강동 정구중 가옥	마포구 용강동 335
79		민속문화재제18호	관훈동 민씨 가옥	중구 필동2가 84-1남산골 한옥마을
80		민속문화재제20호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중구 필동2가 84-1남산골 한옥마을
81		민속문화재제22호	가회동 백인제 가옥	종로구 가회동 93-1
82		민속문화재제24호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중구 필동2가 84-1남산골 한옥마을
83		민속문화재제25호	장위동 김진흥 가옥	성북구 장위동 76-55외1필지
84		민속문화재제28호	해화동 김상협 가옥	종로구 해화동 15-139
85		민속문화재제29호	체부동 홍종문 가옥	종로구 체부동 127-5외4필지
86		민속문화재제30호	가회동 김형태 가옥	종로구 가회동 8-3외2필지
87		민속문화재제32호	만리동 정영국 가옥	중구 만리동 2가 207외2필지
88	문화재 자료 (8)	문화재자료제1호	옥인동 박노수 가옥	종로구 옥인동 168-2
89		문화재자료제2호	가회동 이준구 가옥	종로구 가회동 31-1
90		문화재자료제9호	백사 이항복 집터	종로구 필운동 산 1-1외2필지
91		문화재자료제33호	진관사 칠성각	은평구 진관동 354
92		문화재자료제34호	진관사 독성전	은평구 진관동 354
93		문화재자료제37호	마포 최사영 가옥	성북구 성북동 9-21외1
94		문화재자료제51호	진관동 석 아미타불좌상	은평구 진관동 산 100-35
95		문화재자료제53호	원구단 정문	중구 소공동 97-3

4.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참조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등록 게재

5. 기준 시행일 : 2017.12.21.(목)

-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 고시일 기준 현행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고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허가 신청되었거나, 도시계획(변경)결정 입안된 경우 예외 인정

6. 연락처

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주 소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 연락처 : (02) 2133-2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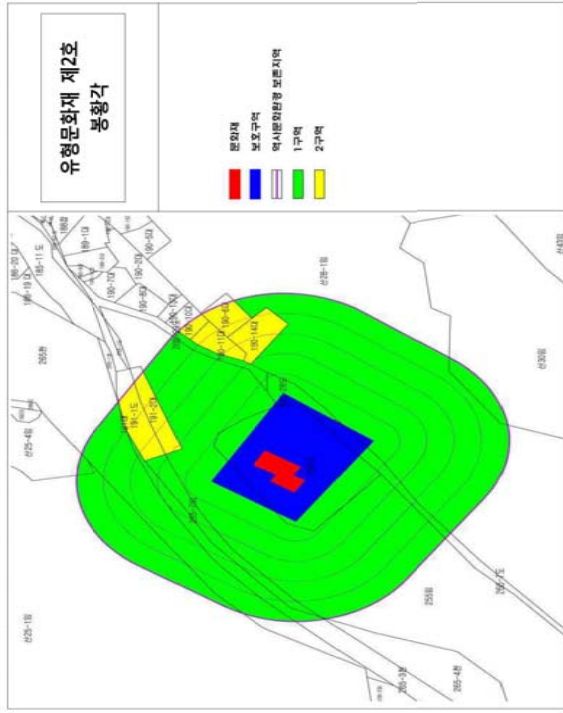
나. 자치구

- 서울시 종로구 문화과 (02) 2148-1824
- 서울시 중구 건축과 (02) 3396-5842
- 서울시 용산구 문화체육과 (02) 2199-7245
- 서울시 성동구 문화체육과 (02) 2286-5203
- 서울시 광진구 문화체육과 (02) 450-7593
- 서울시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02) 2127-4158
- 서울시 중랑구 문화체육과 (02) 2094-1832
- 서울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02) 2241-2653
- 서울시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02) 901-6205
- 서울시 도봉구 문화체육과 (02) 2091-2262
- 서울시 노원구 문화과 (02) 2116-3787
- 서울시 은평구 문화관광과 (02) 351-6522
- 서울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02) 330-1121
- 서울시 마포구 문화관광과 (02) 3153-8372
- 서울시 양천구 문화체육과 (02) 2620-3406
- 서울시 강서구 문화체육과 (02) 2600-6077
- 서울시 구로구 문화체육과 (02) 860-2278
- 서울시 금천구 문화체육과 (02) 2627-145
- 서울시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02) 2670-3519
- 서울시 동작구 교육문화과 (02) 820-2946
- 서울시 관악구 문화체육과 (02) 879-5618
- 서울시 서초구 문화체육관광과 (02) 2155-6201
- 서울시 강남구 문화체육과 (02) 3423-5938
- 서울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02) 2147-2012
- 서울시 강동구 선사유적과 (02) 3425-6522.

붙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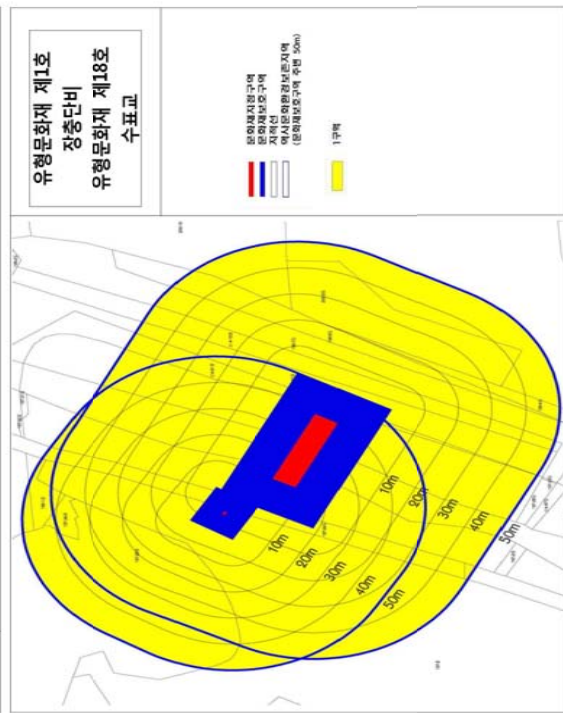
[유형 제2호 봉향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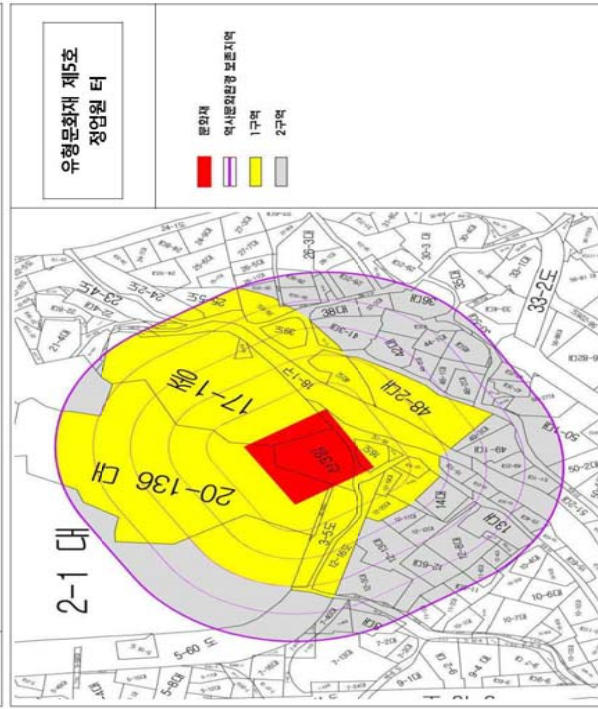
[유형 제1호 장충단비, 유형 제18호 수표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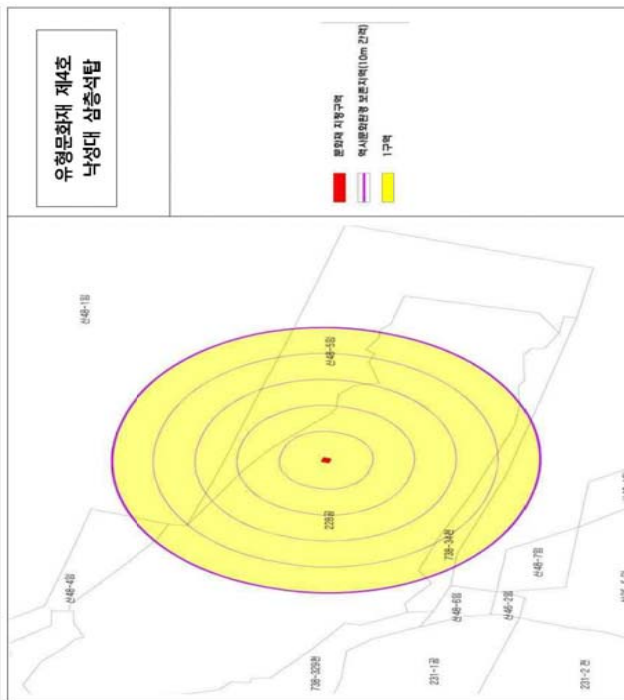
[유형 제5호 정업원 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 문화재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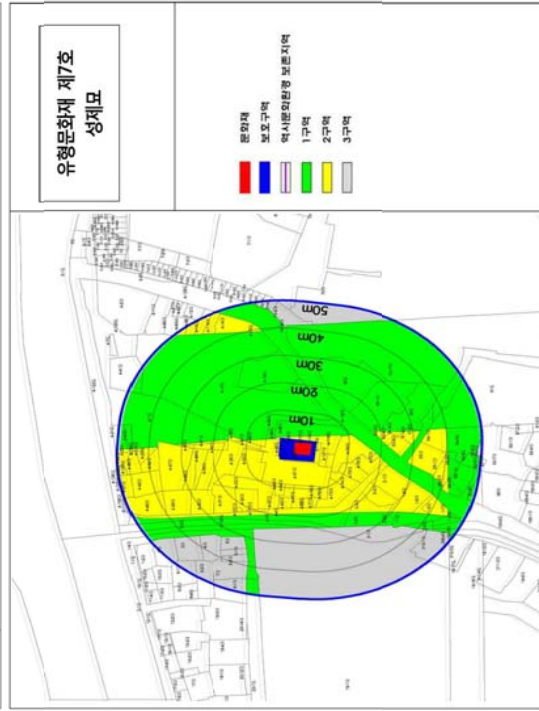
[유형 제4호 낙성대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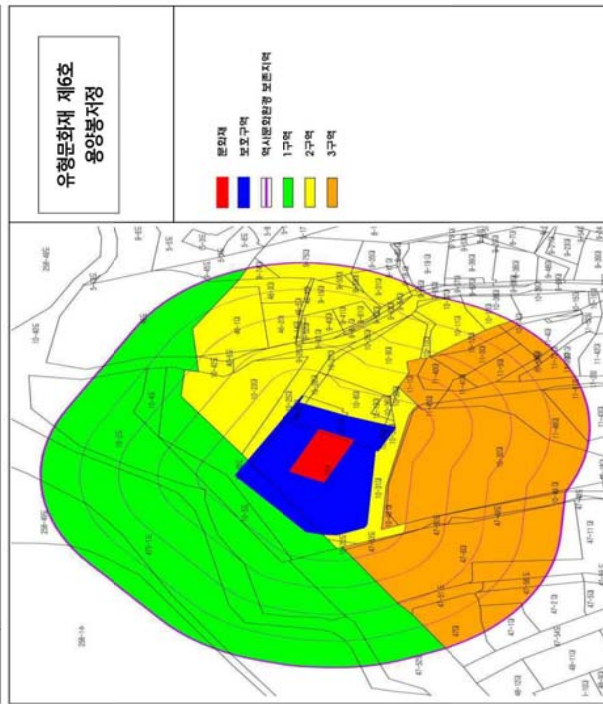
[유형 제7호 성제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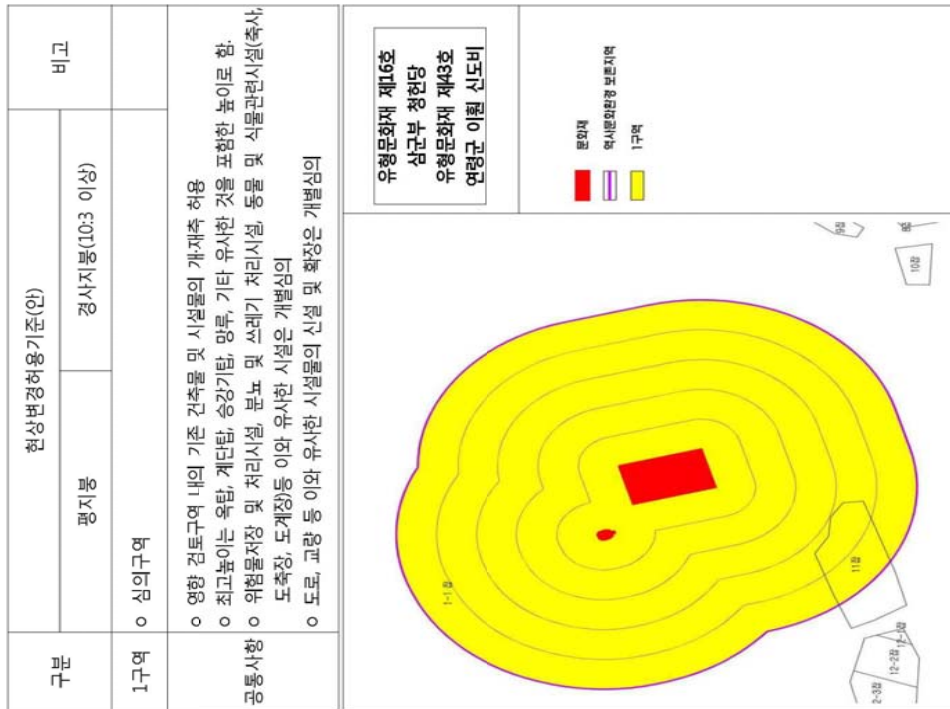


[유형 제6호 용양봉저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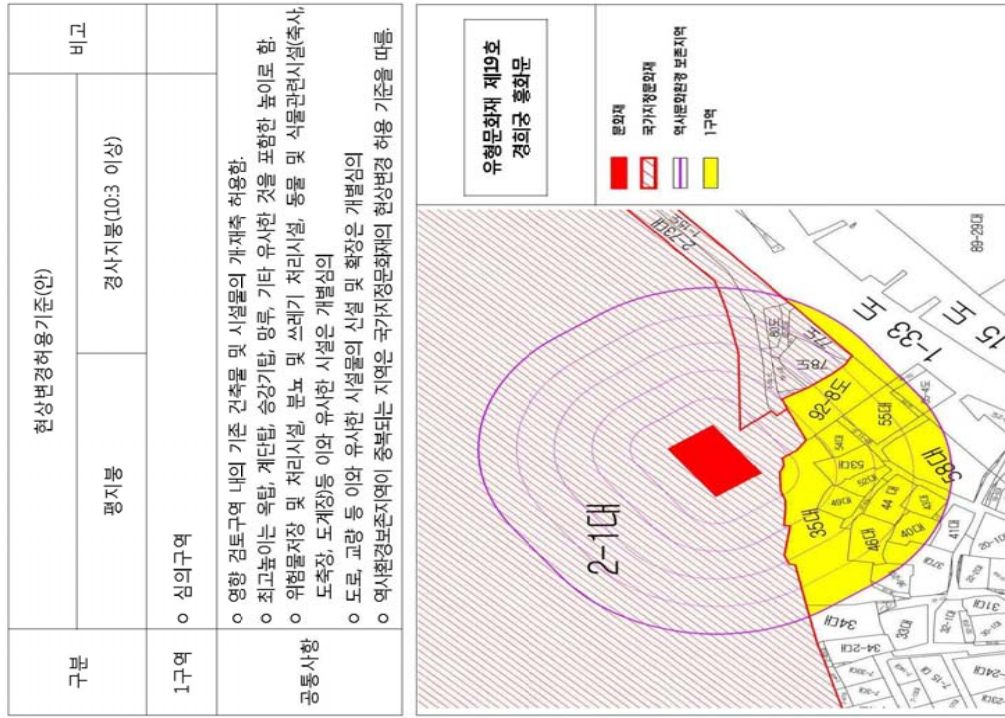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유형 제16호 삼군부 청안당, 유형 제43호 연령군 이원 신도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유형 제19호 경희궁 홍화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유형 제20호 경희궁 승정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 영항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유형문화재 제20호
경희궁 승정전

시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50(m)
1구역

[유형 제22호 인평대군 이용 집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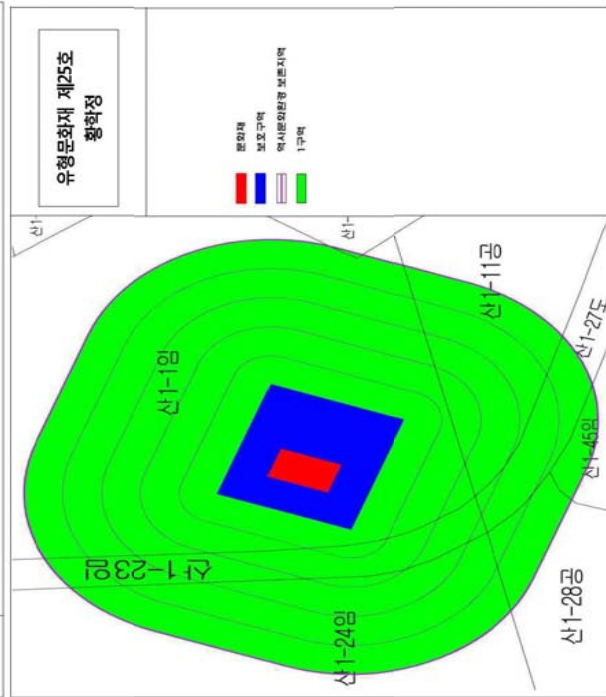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 영항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유형문화재 제 22호
인평대군 이용 집터

문화재 지정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10m, 20m)
1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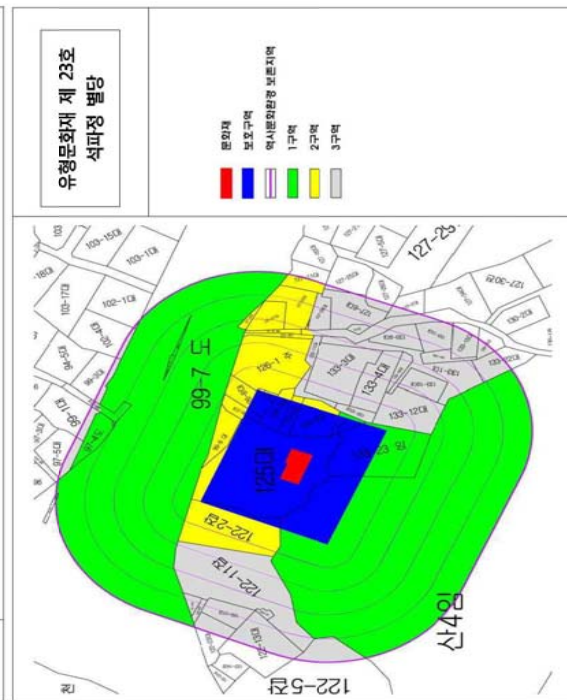
[유형 제25호 황학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인)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공통사항	○ 영항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재건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신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행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신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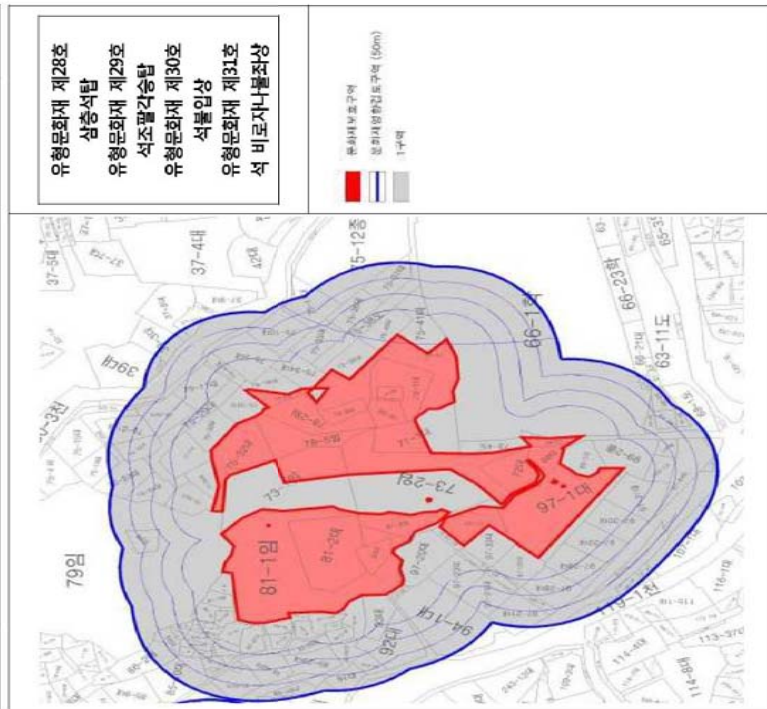
[유형 제23호 석파정 별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을 높이(건축용)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광택(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노계장)을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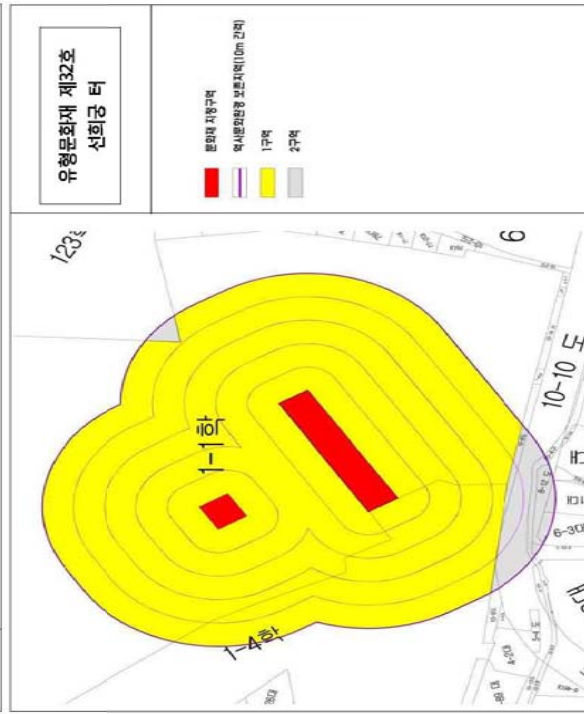
[유형 제28호, 삼층석탑, 유형 제29호 석조팔각승탑, 유형 제30호, 석불입상, 유형 제31호 석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유형 제32호 선화궁 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공동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제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유형 제34호 도선사 마애불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불	경사지불(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유형문화재 제34호
도선사 마애불입상

- 문화재
- 보존구역
- 국가지정문화재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 1구역
- 2구역

[유형제 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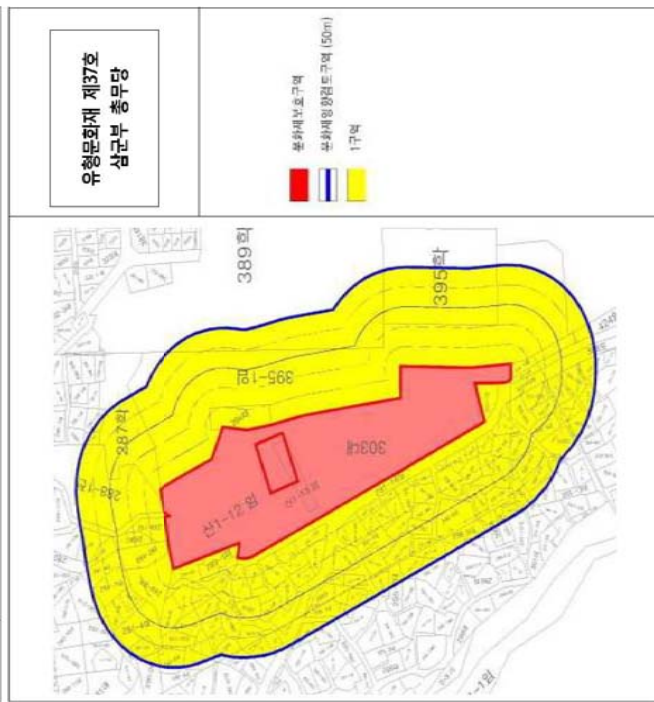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불	경사지불(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최고높이 29m이하	○ 최고높이 32m이하	
4구역	○ 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7호)에 따라 처리(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경사항은 별도심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재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중앙대교당
민속문화재지료 제15호
경운동 민병옥 기옥

- 문화재
- 보존구역
- 국가지정문화재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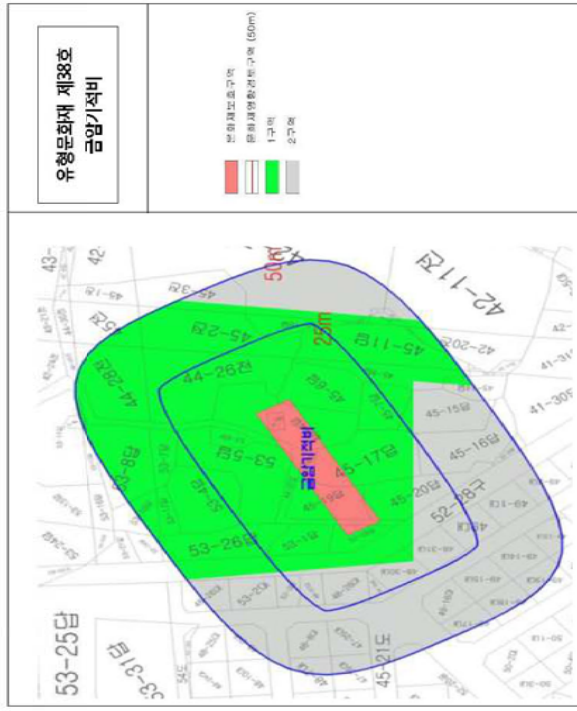
[유형 제37호 삼군부 총무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발심의		



[유형 제38호 금암기적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에 따른 문화재유역 건축물 높이제한)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발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완충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발심의		



[유형 제39호 약사사 심층석탑, 유형 제40호 약사사 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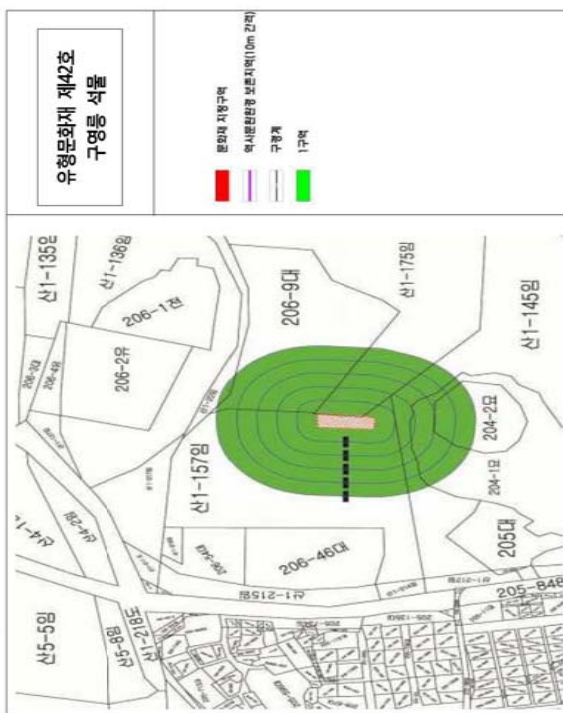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유형문화재 제39호 약사사 심층석탑 유형문화재 제40호 약사사 석불입상 영향검토구역 경사지붕면적(10:3 이하) (50㎡) 1구역 2구역

[유형 제41호 화산군 이연 신도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유형문화재 제41호 화산군 이연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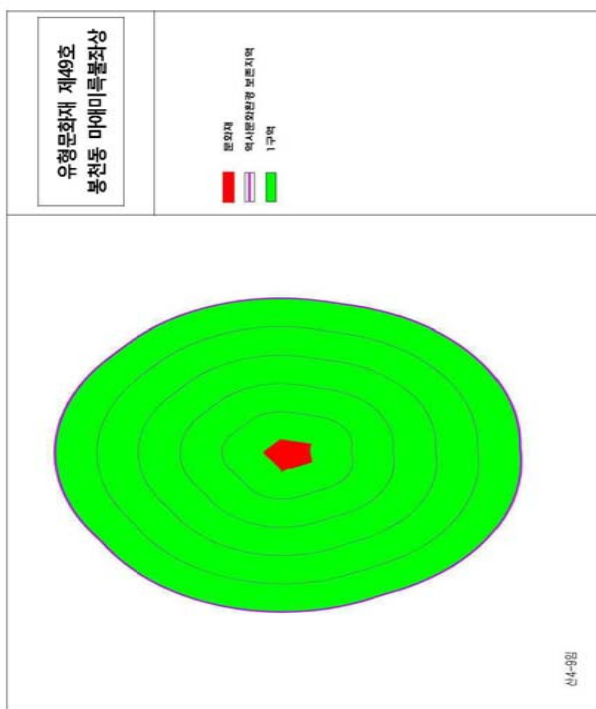
[유형 제42호 구영릉 석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충구역		
주요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작 축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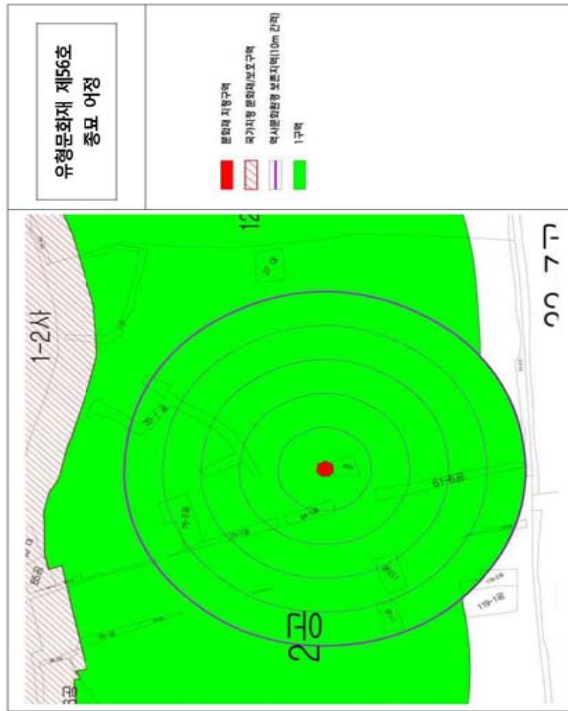
[유형 제49호 봉천동 마에미루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공동생활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민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제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통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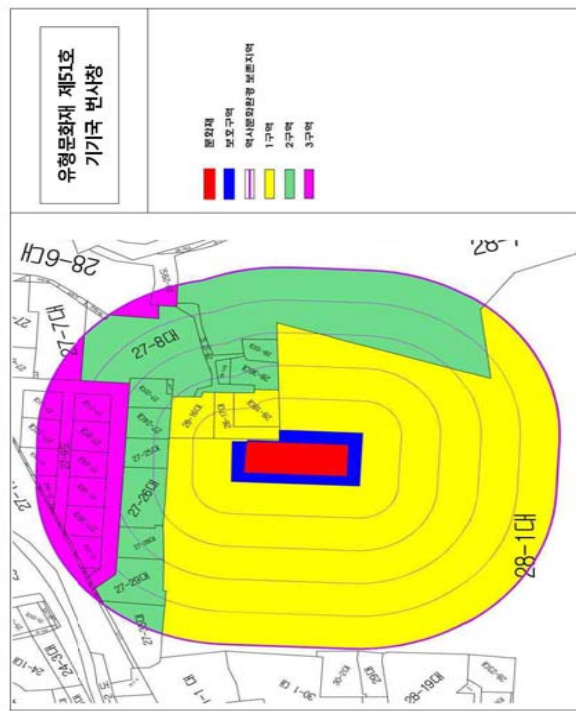
[유형 제56호 종교 어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용	경사지용(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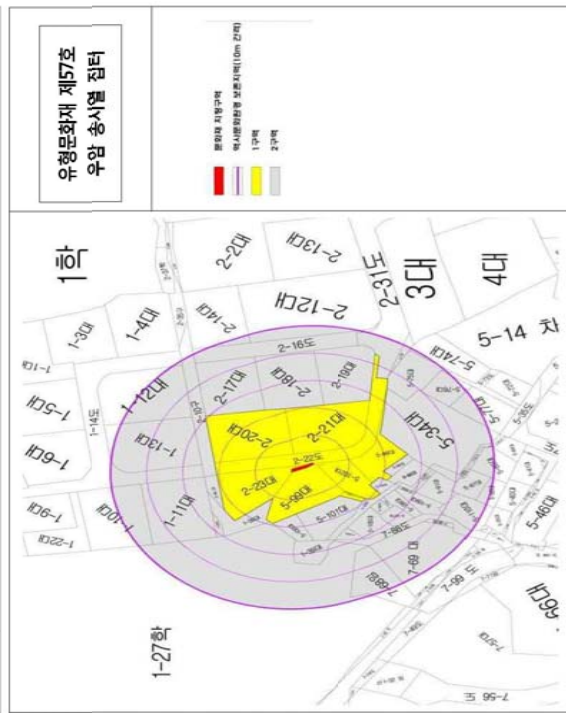
[유형 제51호 기기국 번사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용	경사지용(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3구역	○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에 따라 처리 (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경사항은 별도심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벽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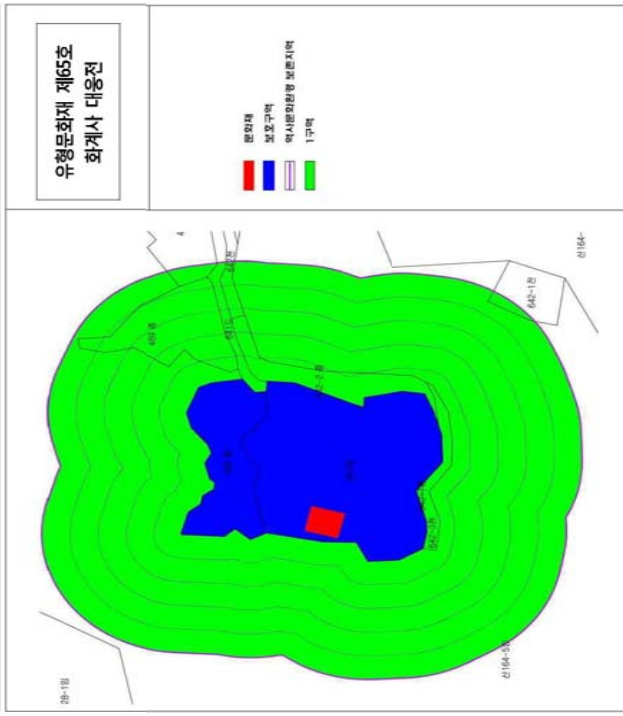
[유형 제57호 우암 송시열 집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 영항 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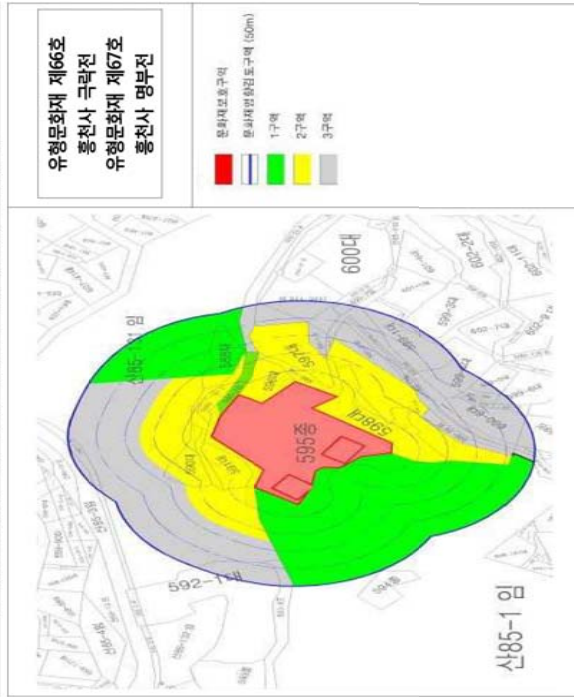
[유형 제65호 화계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공통사항	○ 영항 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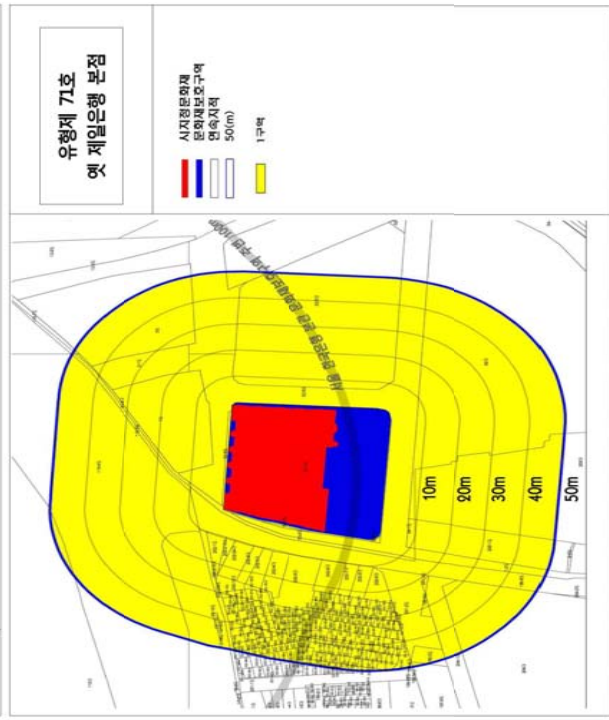
[유형 제66호 흥천사 극락보전, 유형 제67호 흥천사 명부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제 발효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물색상: 회색, 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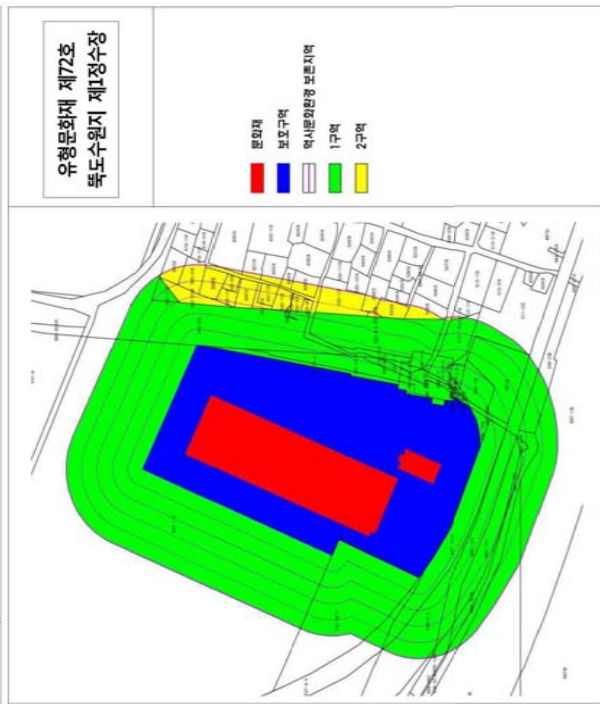
[유형 제71호 옛 제일은행 본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원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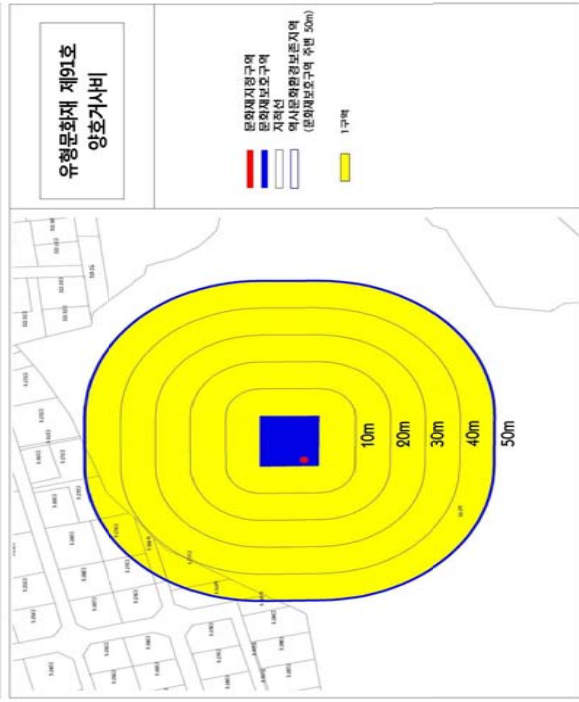
[유형 제72호 독도수원지 제1정수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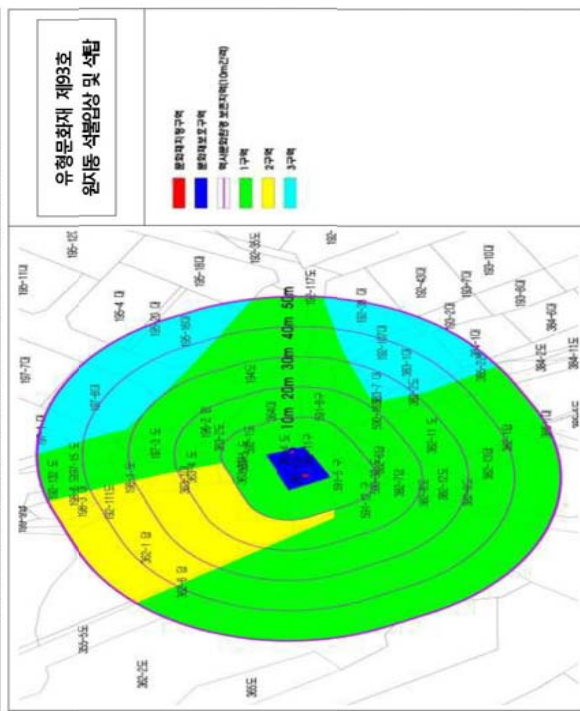
[유형 제91호 양호거사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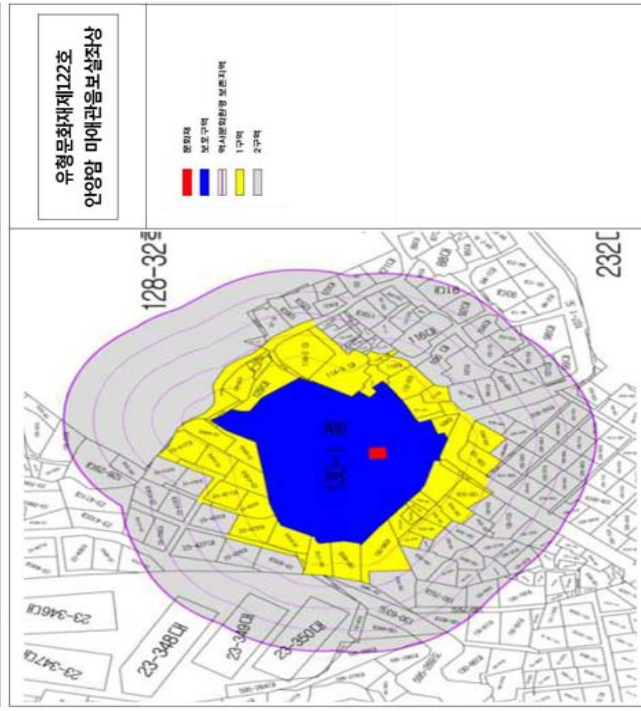
[유형 제93호 원지등 석물입상 및 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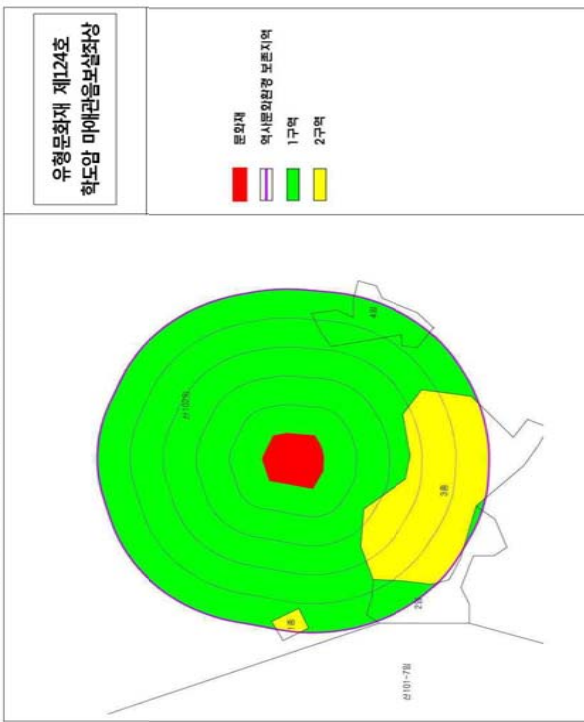
[유형 제122호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제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중색상, 회색, 밍크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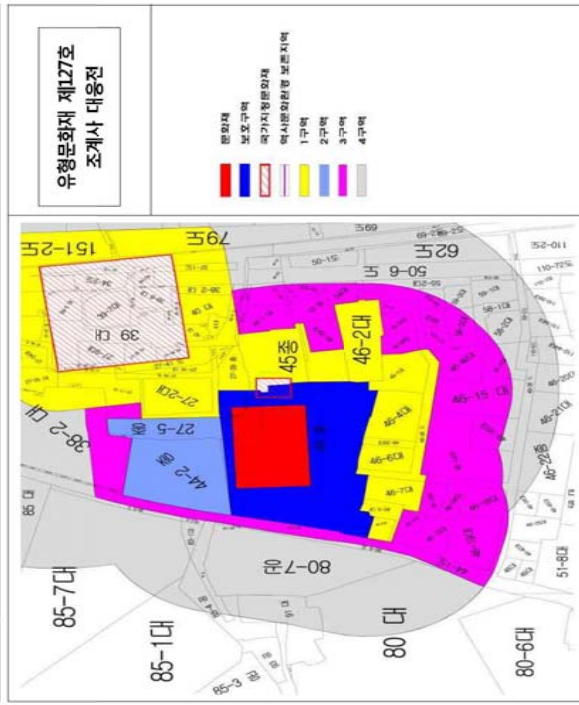
[유형 제124호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랑 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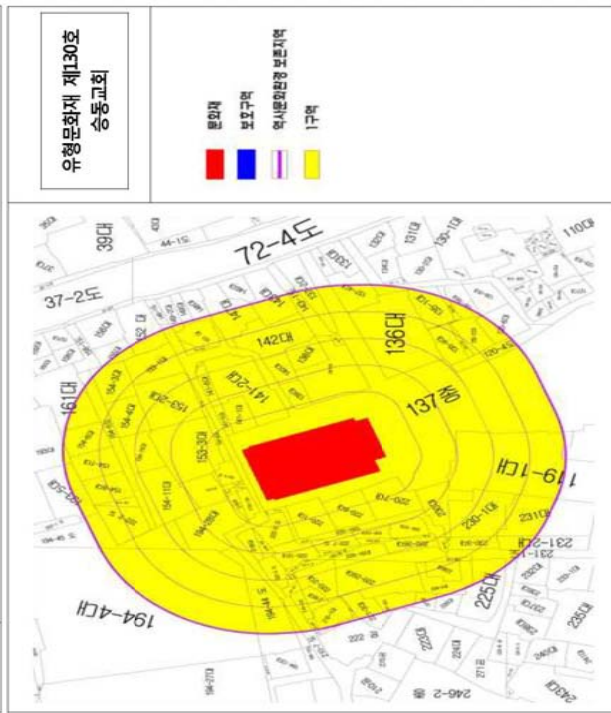
[유형 제127호 조계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 온천궁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04호)에 따라 처리(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변경사항은 별도 심의)		
4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및표준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공통사항	○ 영랑 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되는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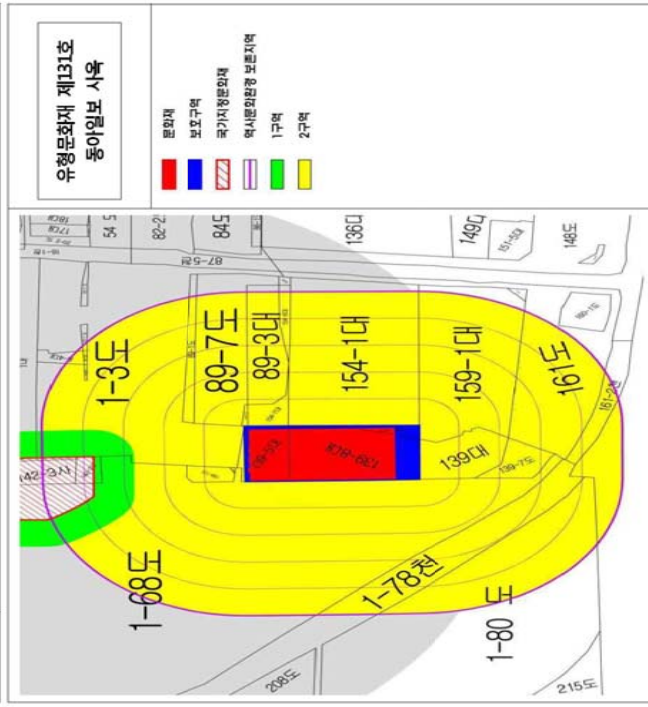
[유형 제130호 승동교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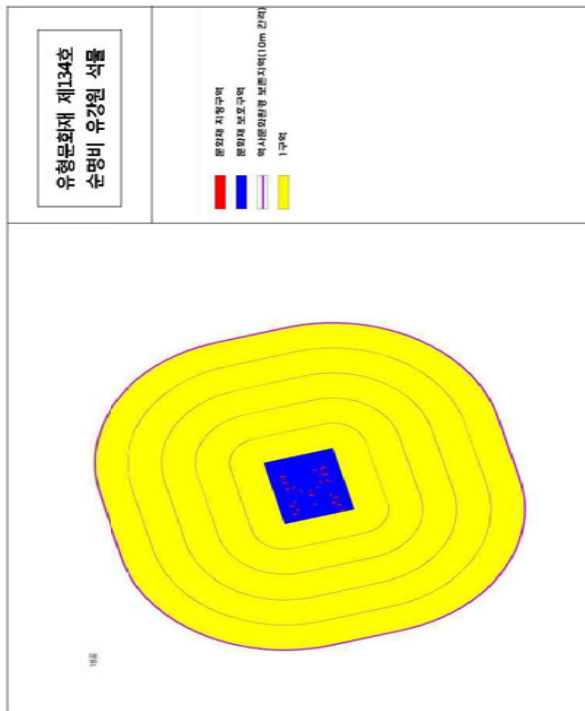
[유형 제131호 동아일보 사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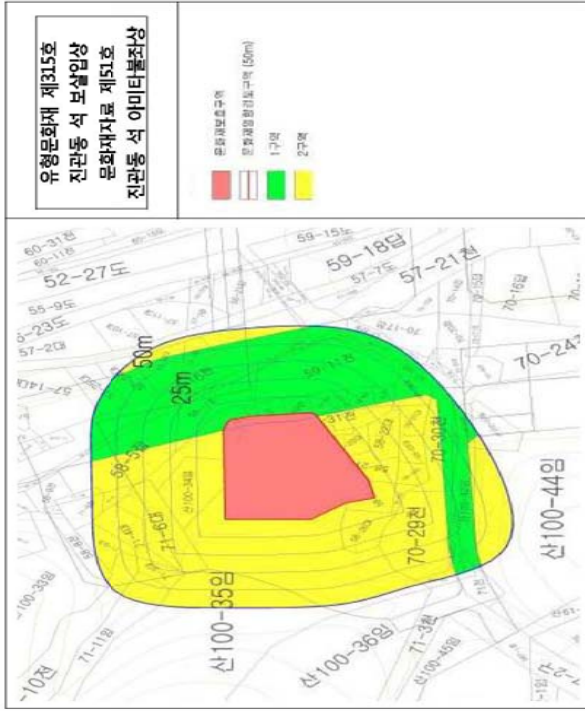
[유형 제134호 순명비 유강원 석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제측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발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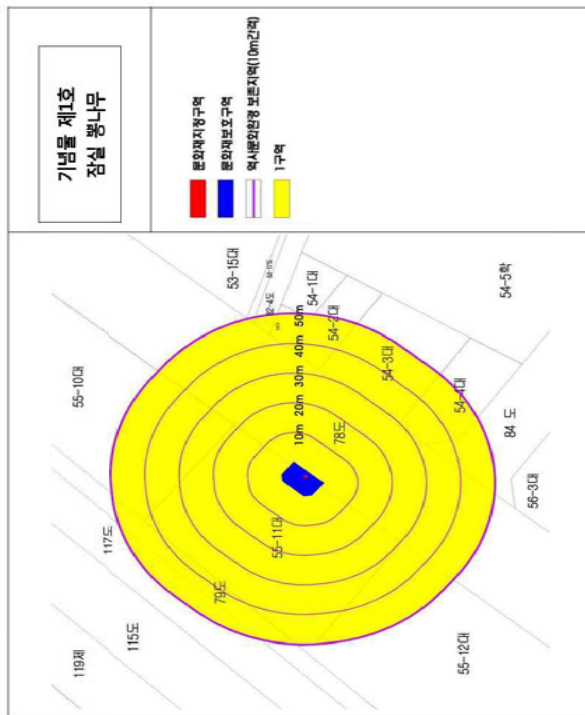
[유형 제15호 진관동 석 보살입상, 문화재지로 제51호 진관동 석 아미타불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제측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발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발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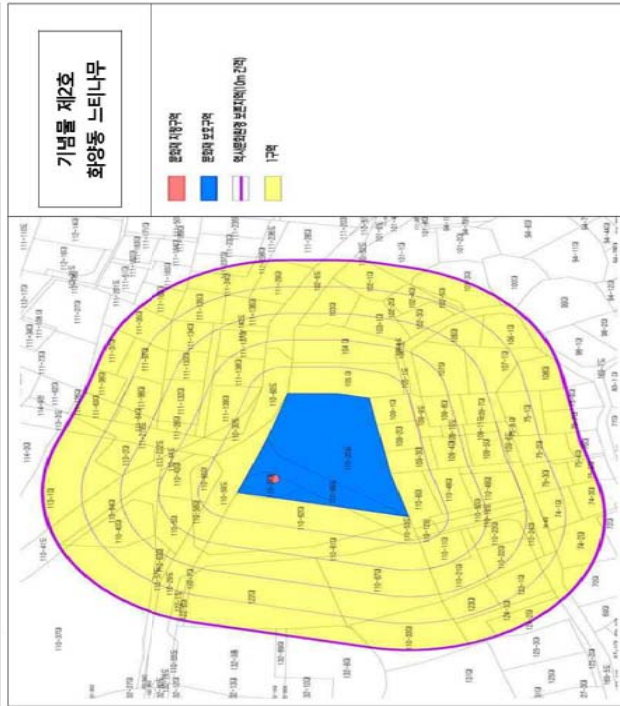
[기념물 제1호 잠실 뽕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범위내에서 재건축시에도 기념물의를 통해 허용)		
공통사항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기념물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기념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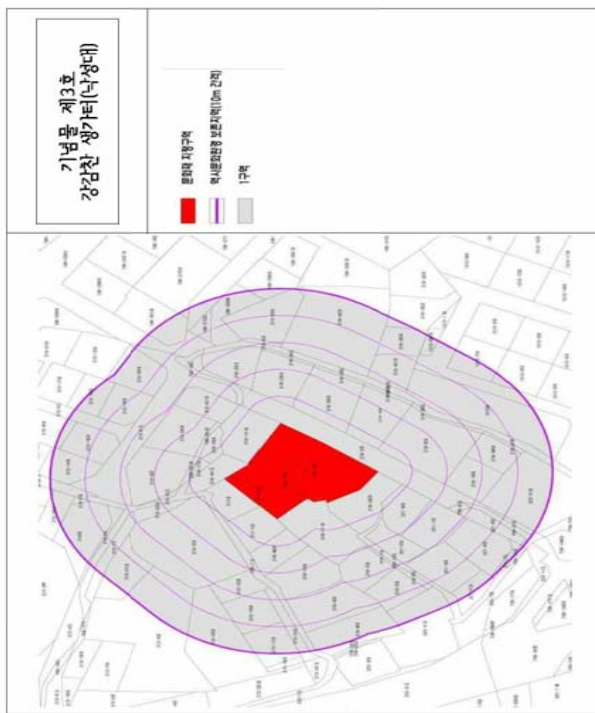
[기념물 제2호 화양동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항 김포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재건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완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기념물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기념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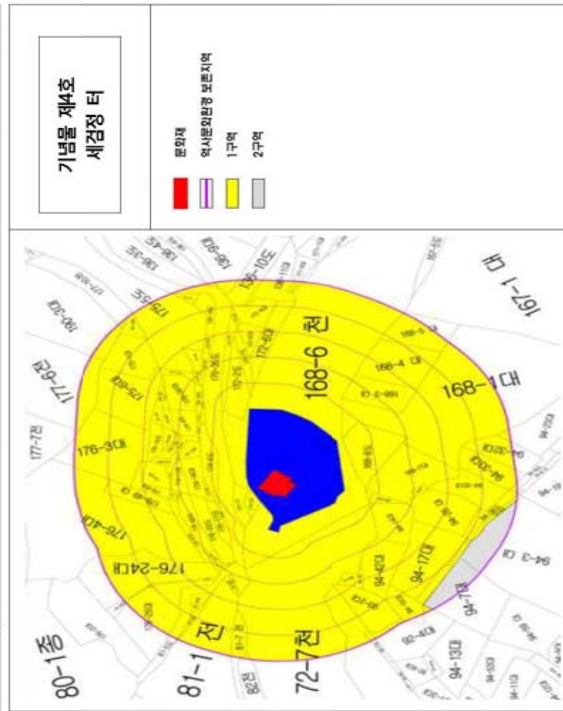
[기념물 제3호 강감찬 생가 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공동사항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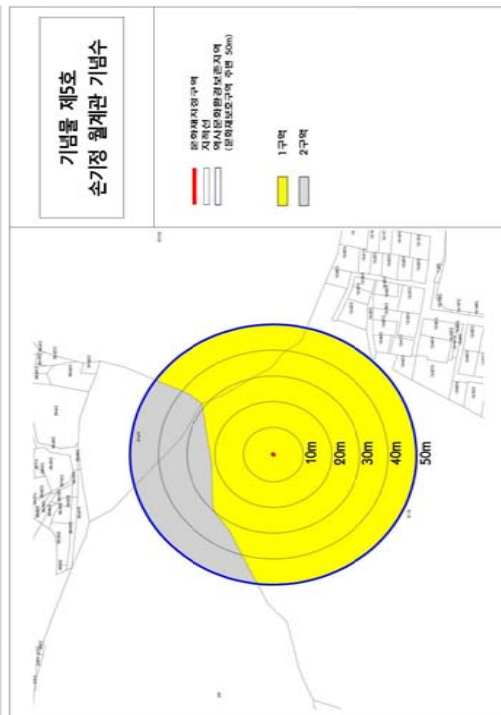
[기념물 제4호 세검정 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공동사항	○ 명함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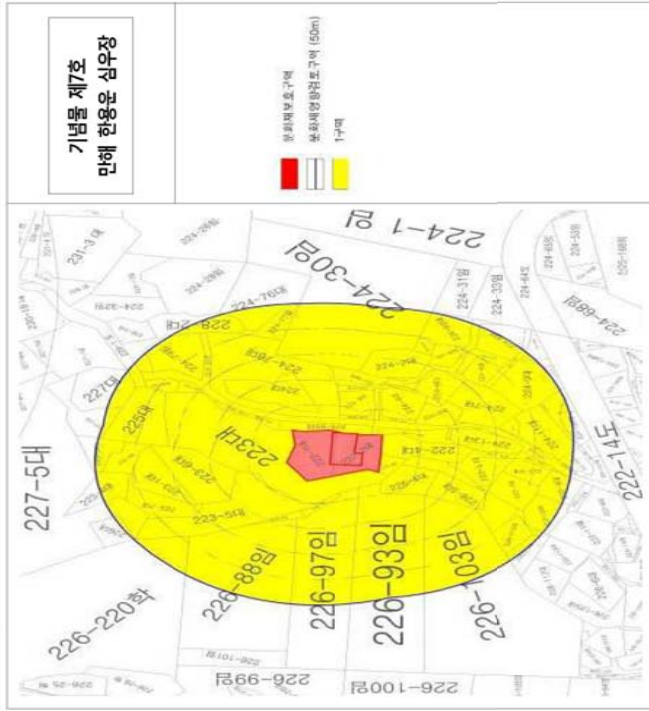
[기념물 제5호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요율)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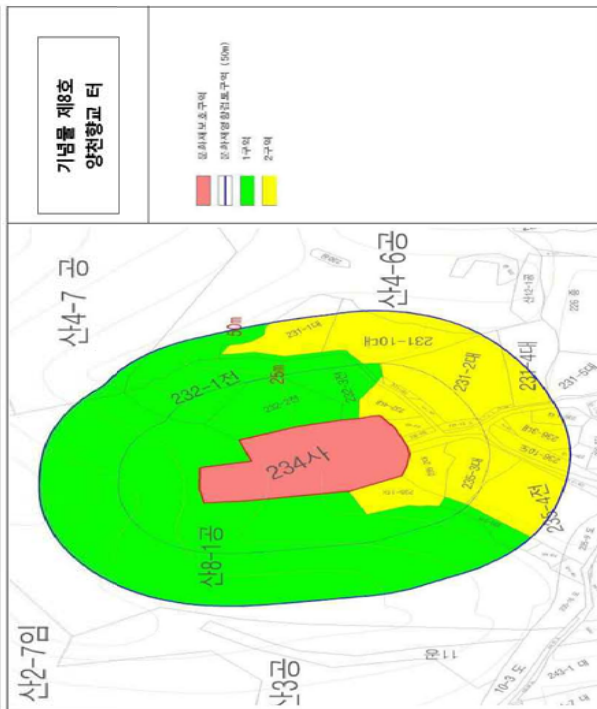
[기념물 제7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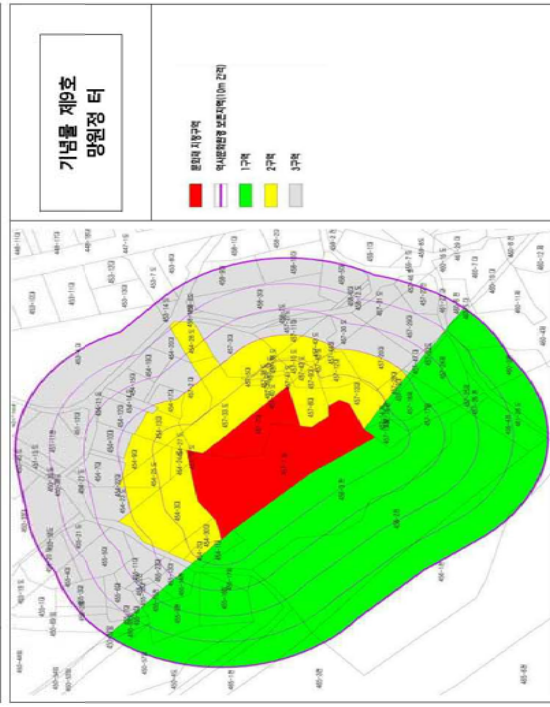
[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 테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한.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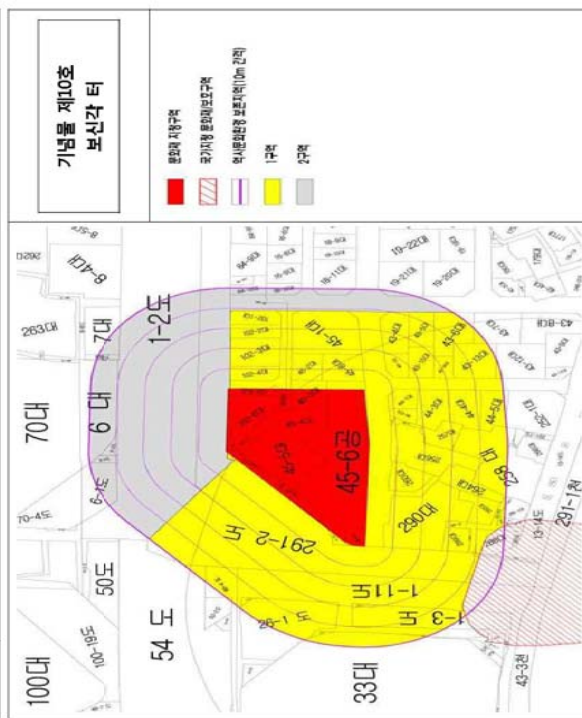
[기념물 제9호 망원정 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한.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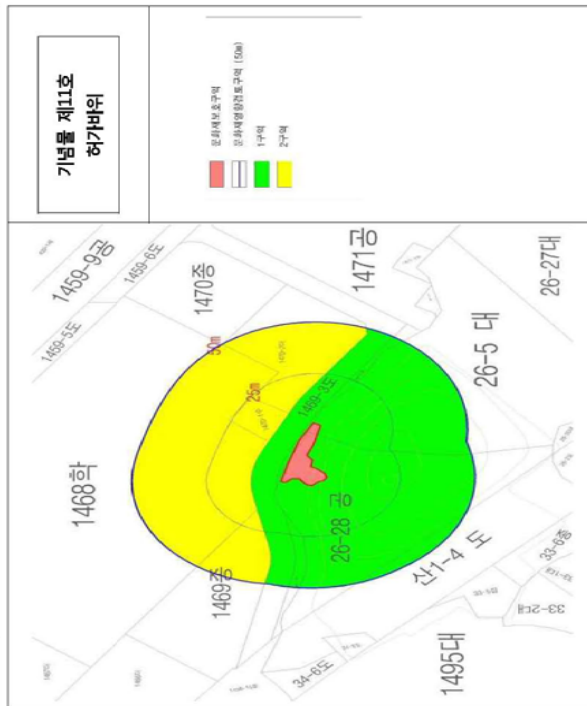
[기념물 제10호 보신각 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제 별표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왕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우형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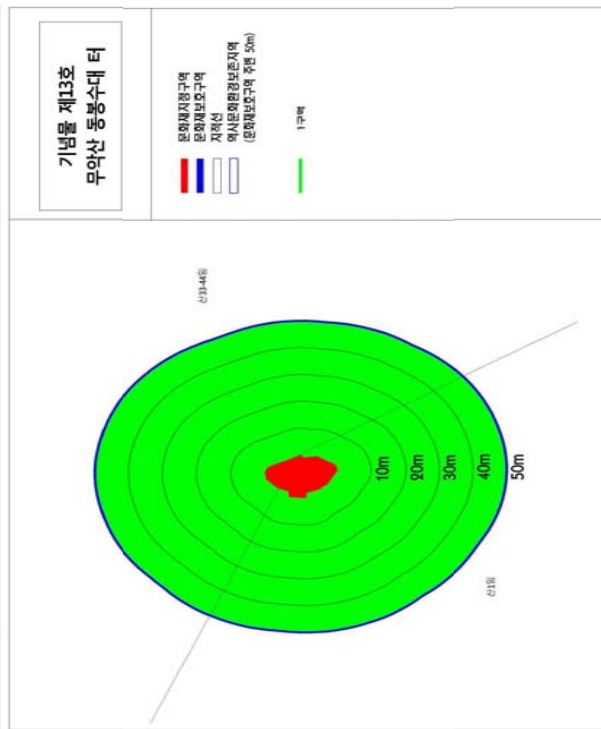
[기념물 제11호 허가바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왕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우형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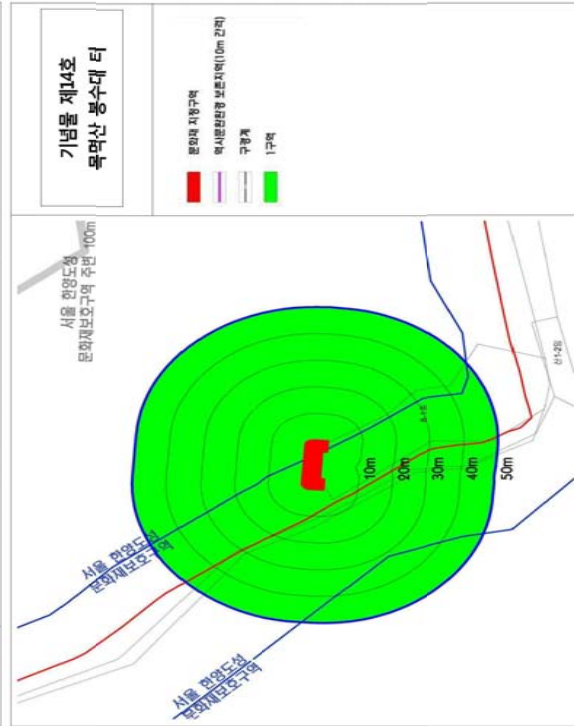
[기념물 제13호 무악산 동봉수대 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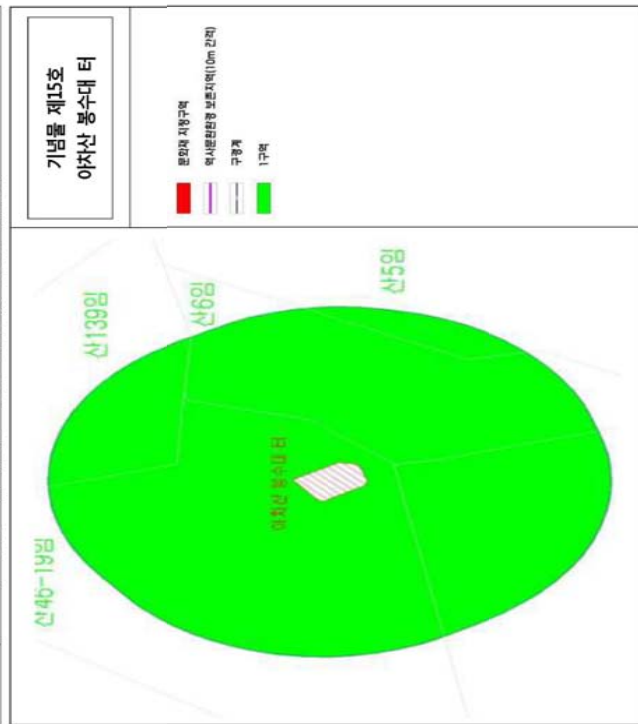
[기념물 제14호 목멱산 봉수대 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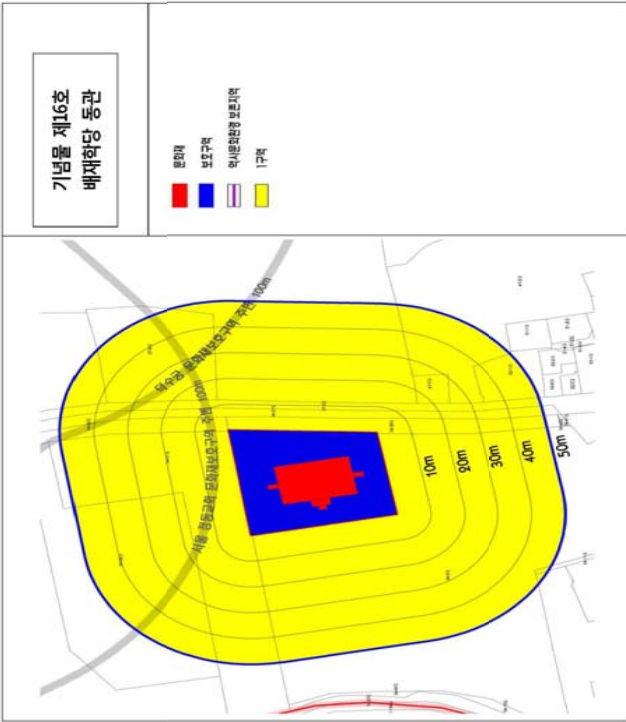
[기념물 제15호 아차산 봉수대 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	경사지(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왕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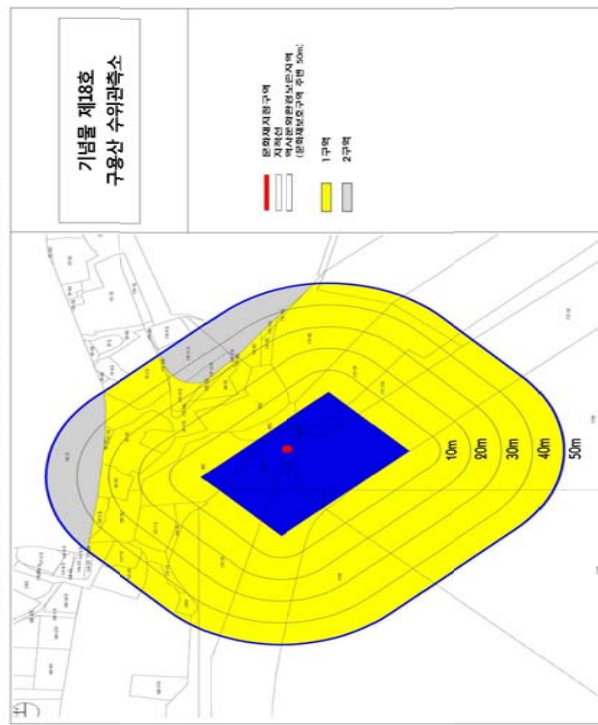
[기념물 제16호 배재학당 동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	경사지(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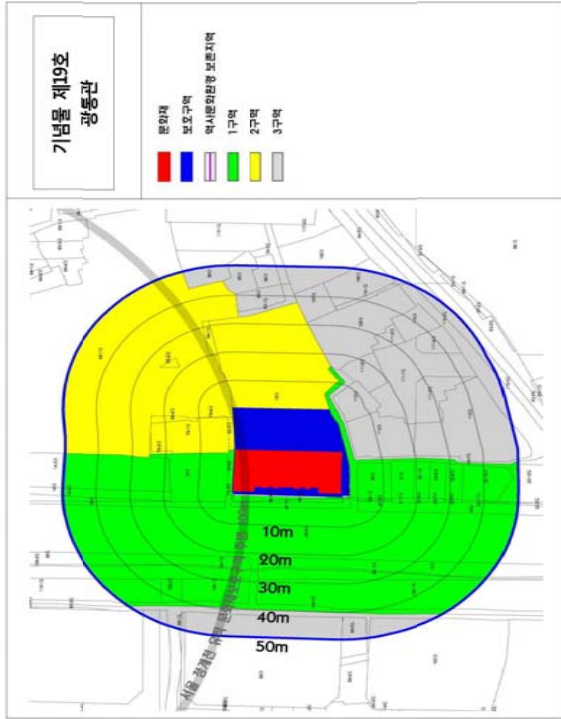
[기념물 제18호 구용산 수위관측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의 신청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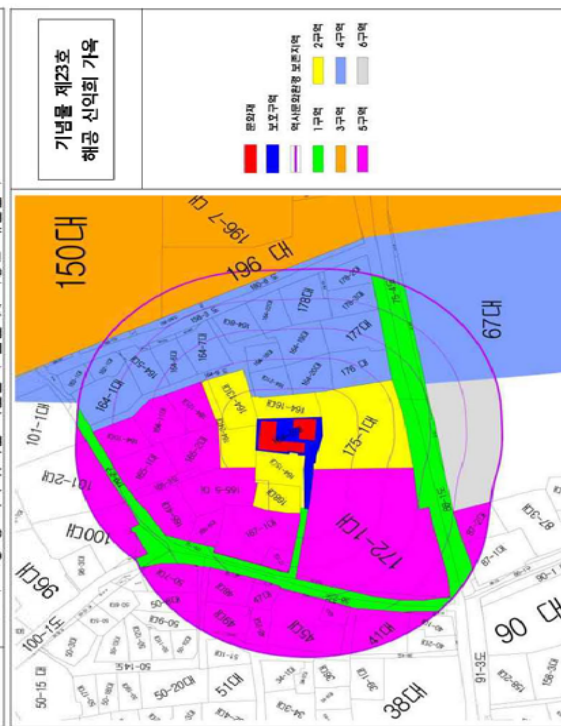
[기념물 제19호 광통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청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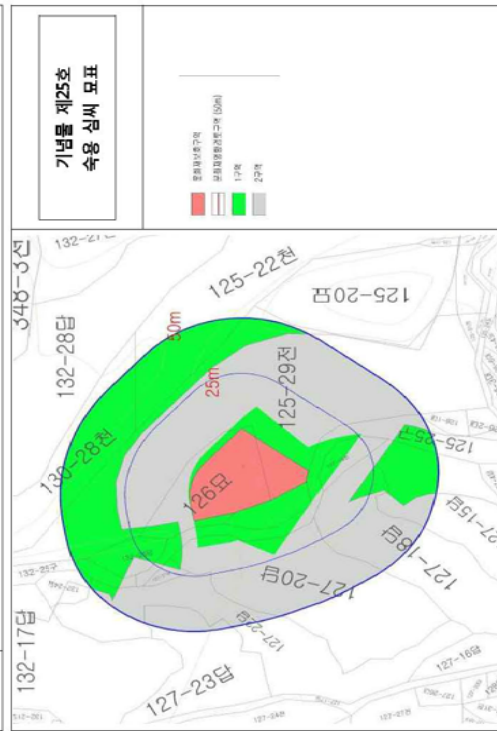
[기념물 제23호 해공 신의회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경복궁 서측 제2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3호)에 따라 처리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내용은 별도 심의)		
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양쪽,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채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층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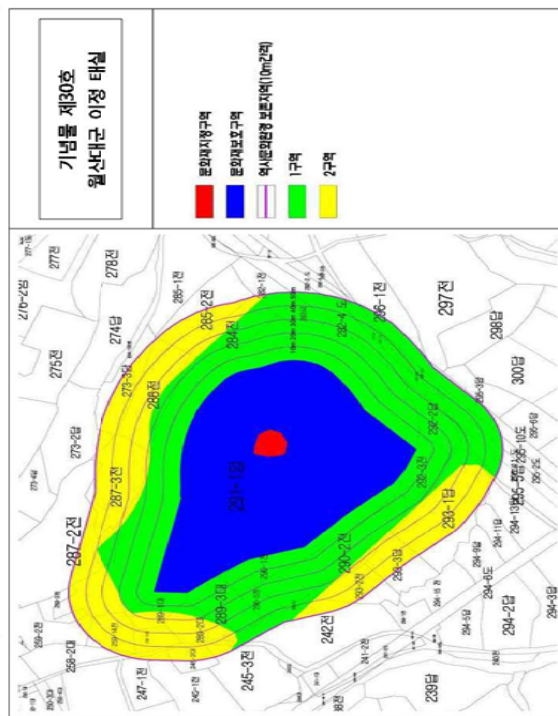
[기념물 제25호 숙용 심씨 묘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양쪽,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채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층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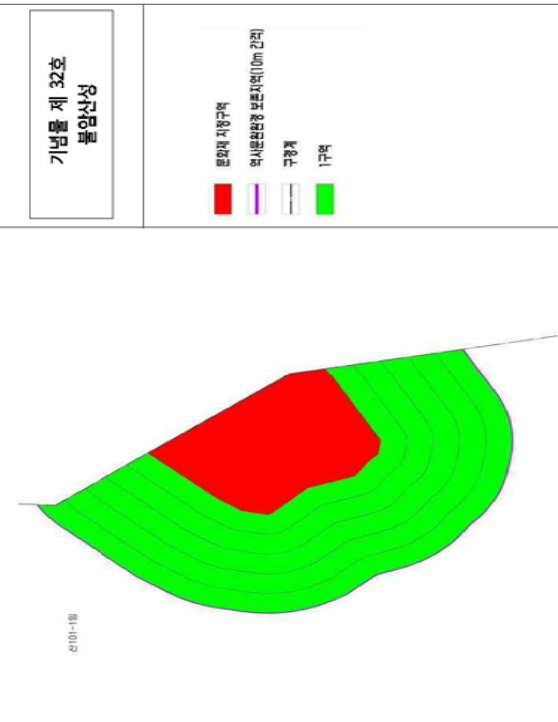
[기념물 제30호 원산대군 이정 태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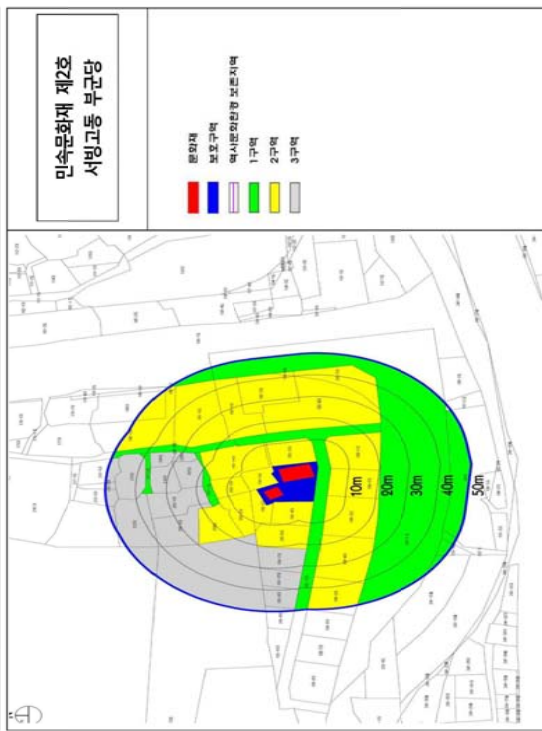
[기념물 제32호 불암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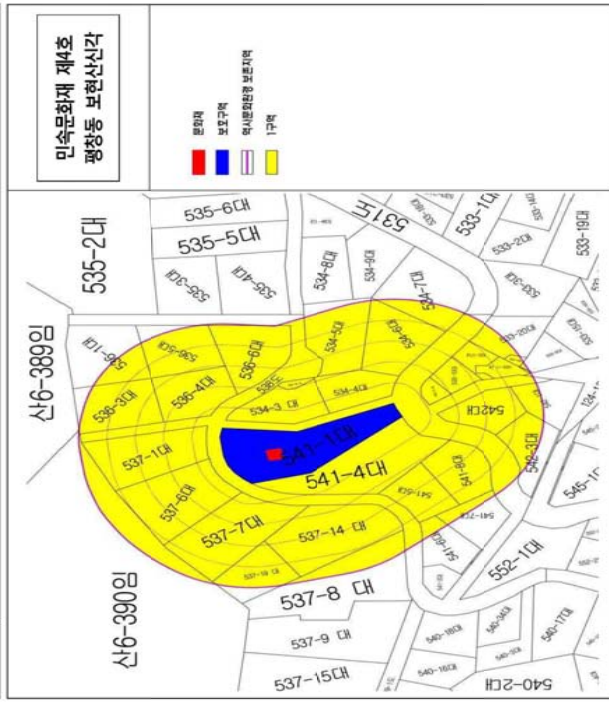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2호 서빙고동 부군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공통사항	○ 영항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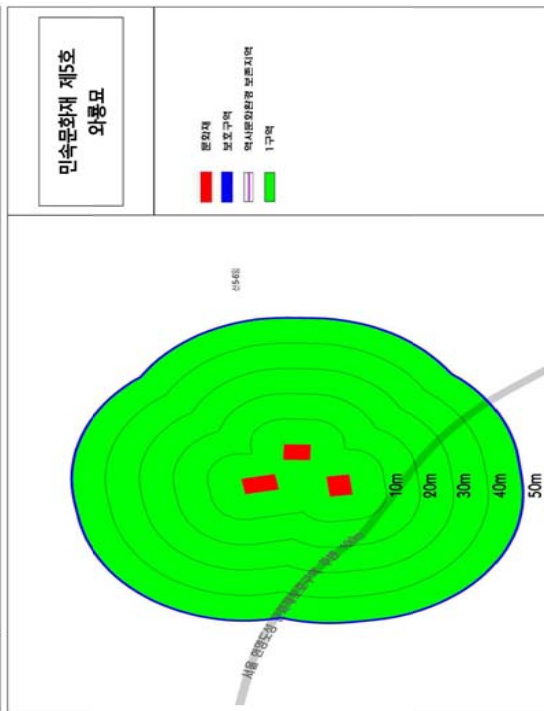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3호 평창동 보현산신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항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영항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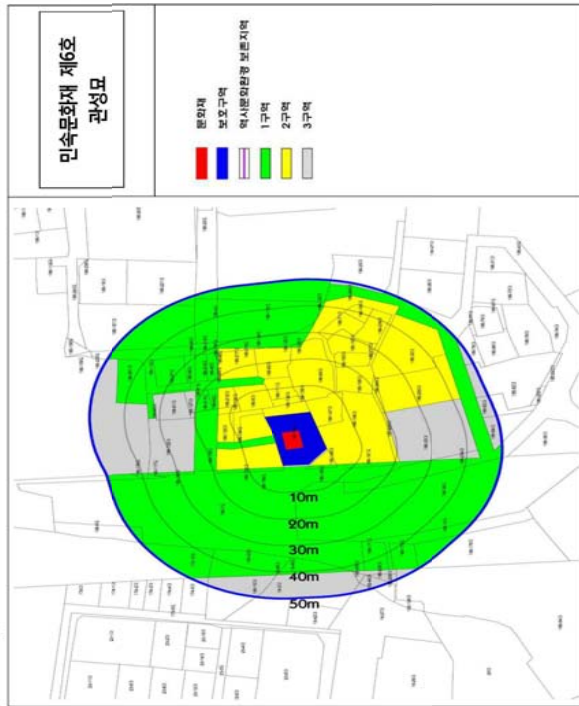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5호 외룡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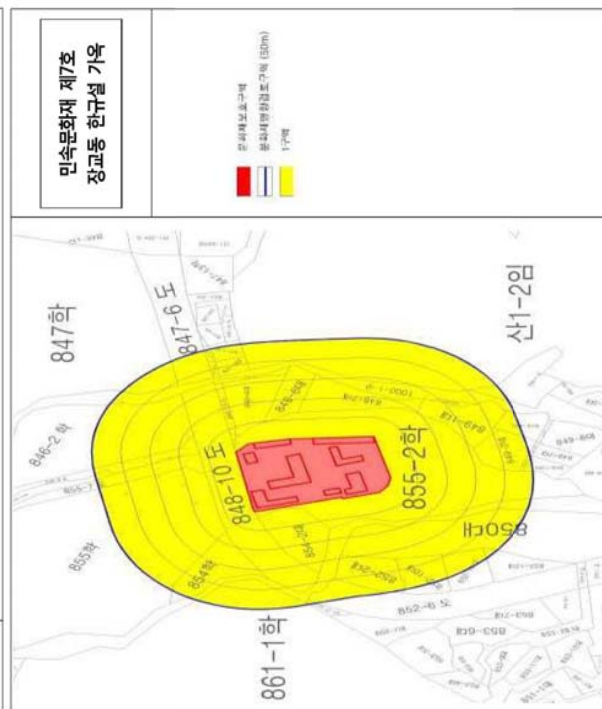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6호 관성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형계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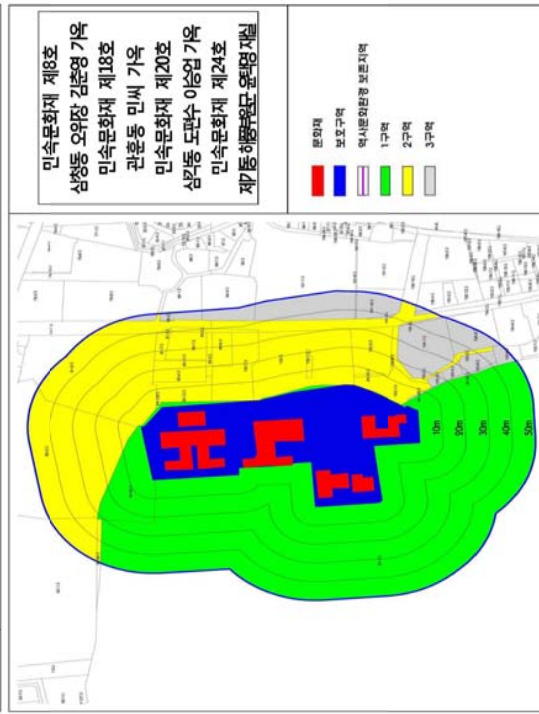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7호 장교동 한규설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제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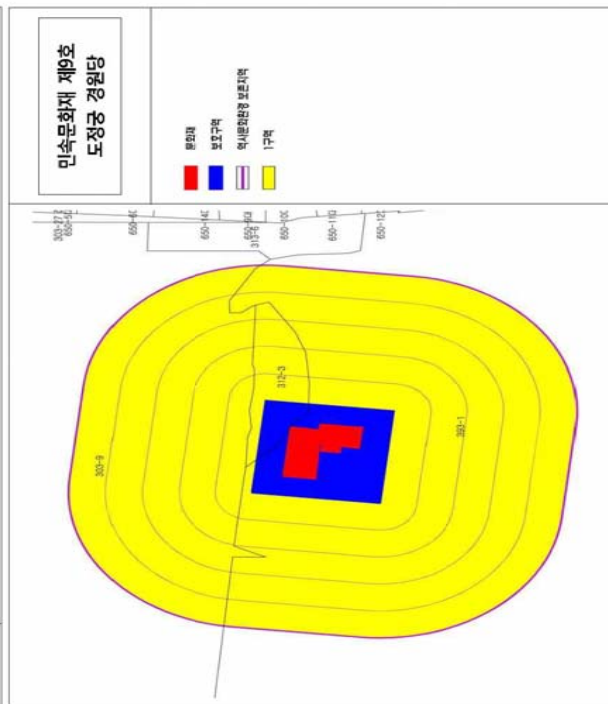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8호 심정동 오양장 김춘영 가옥, 민속문화재 제18호 관훈동 민씨 가옥, 민속문화재 제20호 삼각동 도판수 이승업 가옥, 민속문화재 제24호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조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준거용))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제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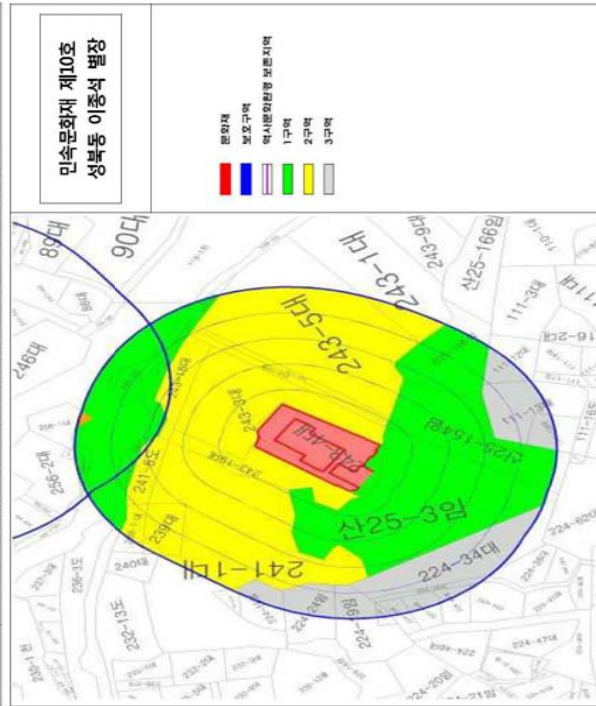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9호 도정궁 경원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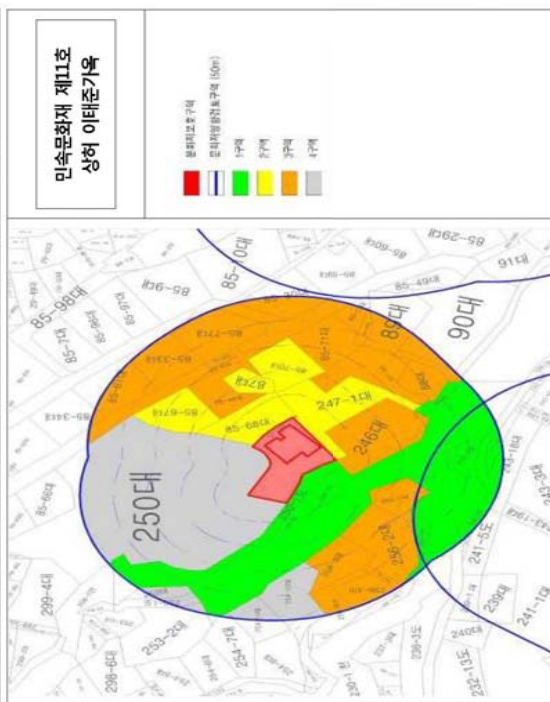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10호 성복동 이종석 별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문화재영역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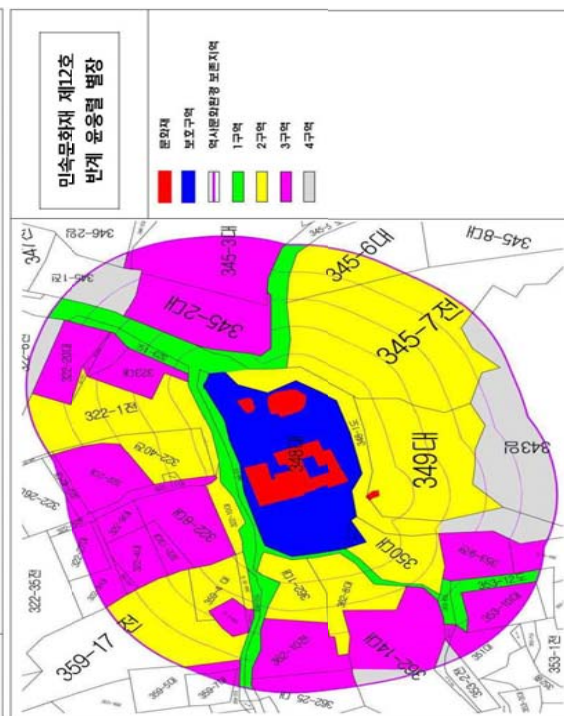
[민속문화] 제11호 상허 이태준 기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4m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		
공동생활 주택지역	○ 영한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거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처리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양도와 재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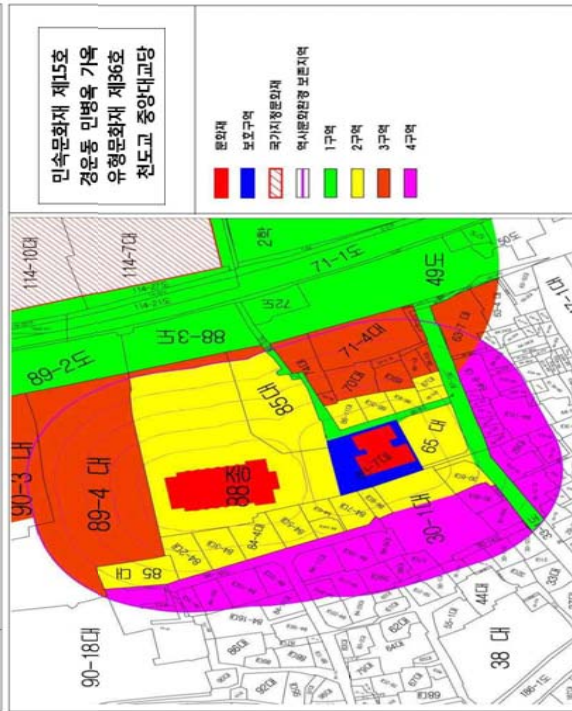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12호 반계 유형별 별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인)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준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부영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5호에 따라 처리 (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경사항은 별도심의)		
4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및 법규에 따른 문화재유변 건축물 높이기준준용)		
공동생활	○ 영합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층 허용가치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처리되는 옥탑, 계단실, 승강기실,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환경에(지붕색상, 회색, 벽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제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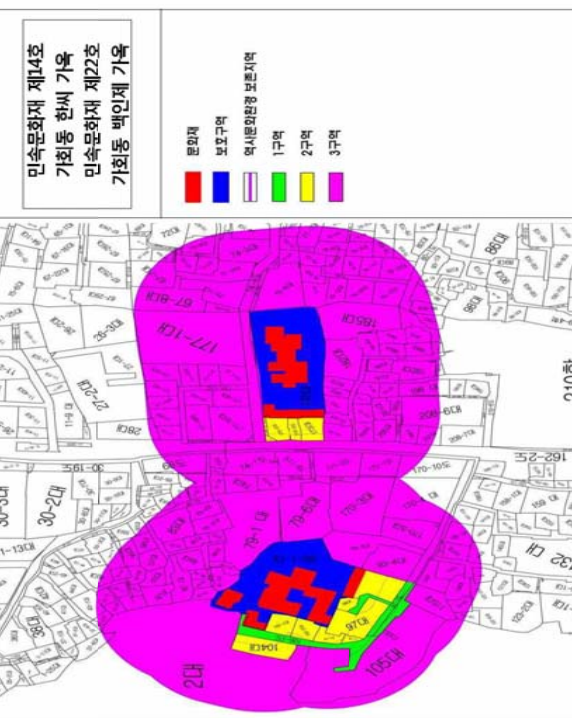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15호 경운동 민병옥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최고높이 29m이하	○ 최고높이 32m이하	
4구역	○ 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7호)에 따라 처리(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경사항은 별도심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관장(예: 지붕색상- 회색, 벽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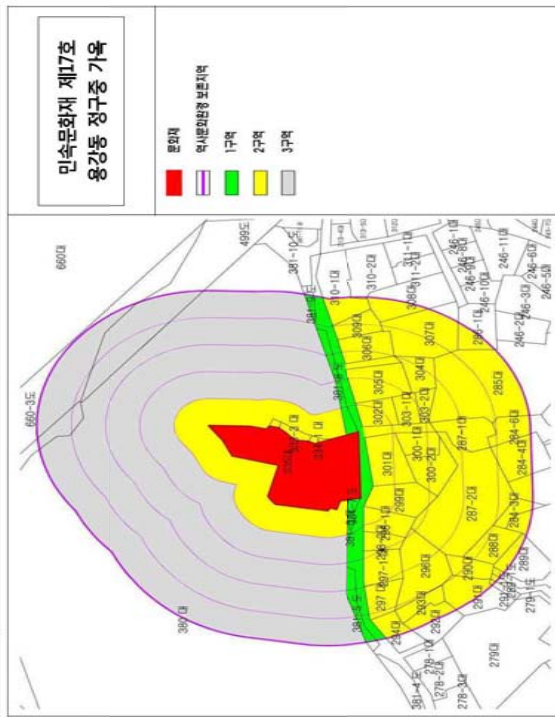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14호 기회동 한씨 가옥, 민속문화재 제22호 기회동 백인제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북촌제1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에 따라 처리(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경사항은 별도심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관장(예: 지붕색상- 회색, 벽색 등)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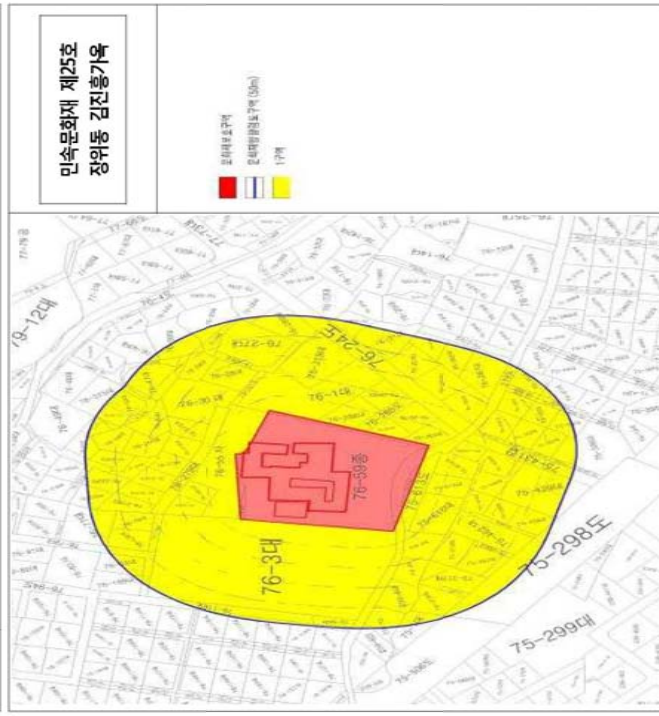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17호 용강동 정구중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용)		
공동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관장(예: 지붕색상- 회색, 벽색 등) ○ 원색계열을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관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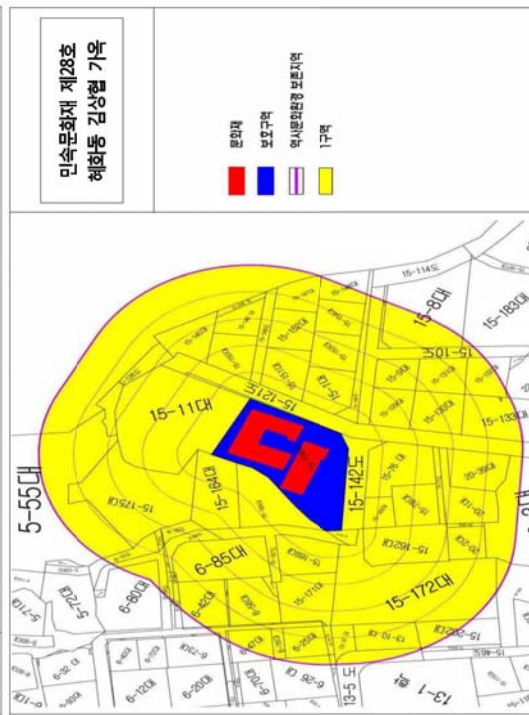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25호 장위동 김진홍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동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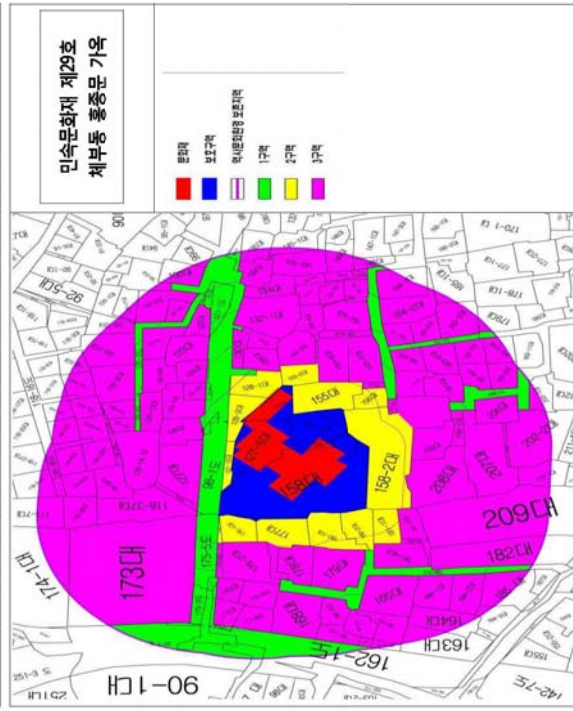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28호 해화동 김상협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역사환경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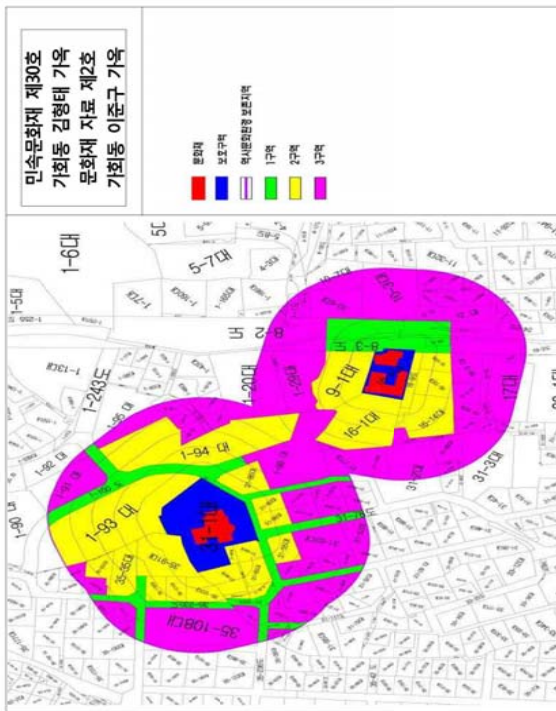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29호 체부동 홍종문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경복궁 서측 제2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고시제 2013-133호)에 따라 처리 (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경사항은 별도심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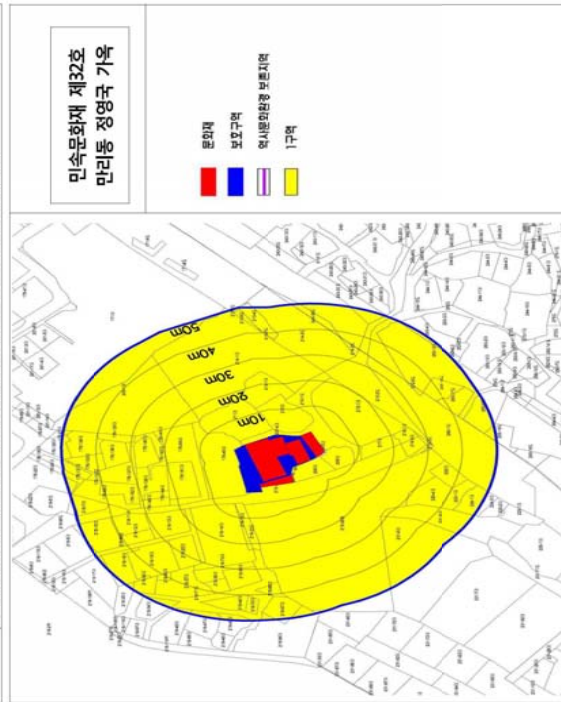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30호 가회동 김형태 가옥, 문화재자료 제2호 가회동 이준구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에 따라 처리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변경사항은 별도심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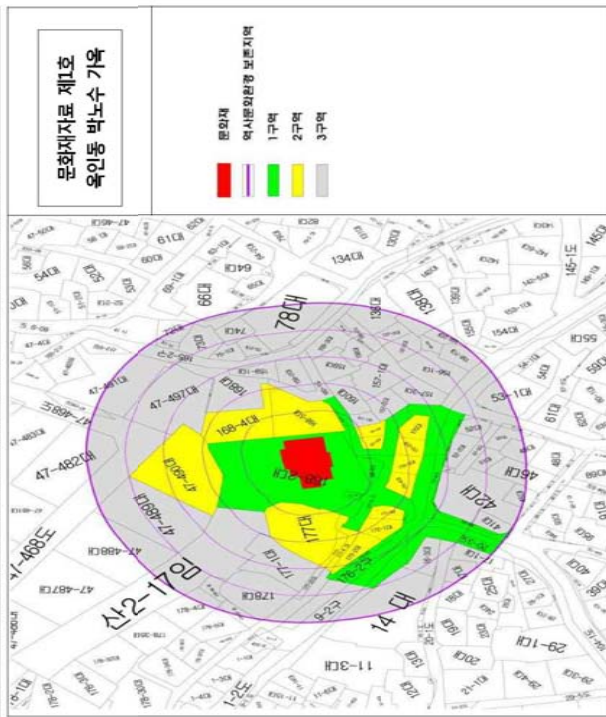
[민속문화재 제32호 만리동 정영국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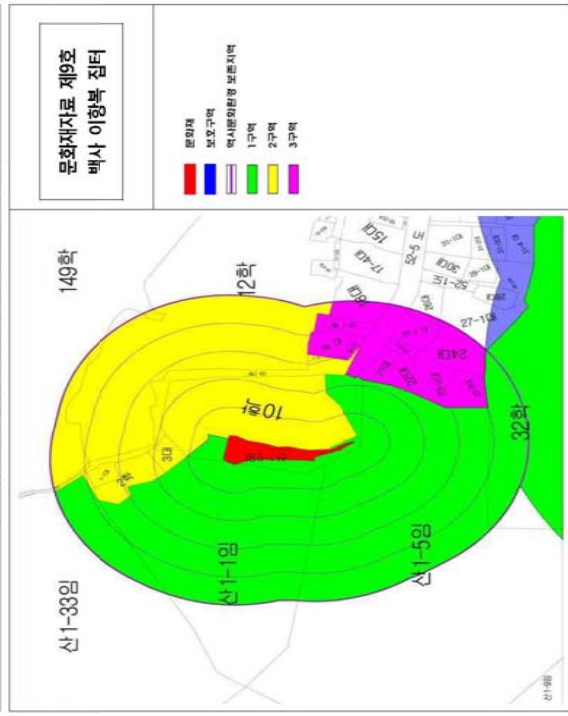
[문화재자료 제1호 옥인동 박노수 기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준축용)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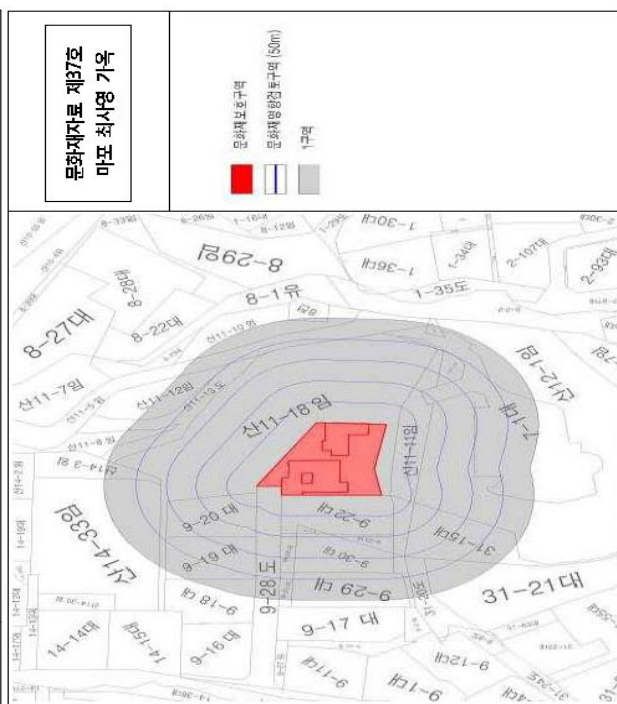
[문화재자료 제9호 백사 이항복 집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경복궁 사적 제29(한양재)지구(서울특별시 고시제 2013.1339)에 따라 처리 (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경사항은 별도심의)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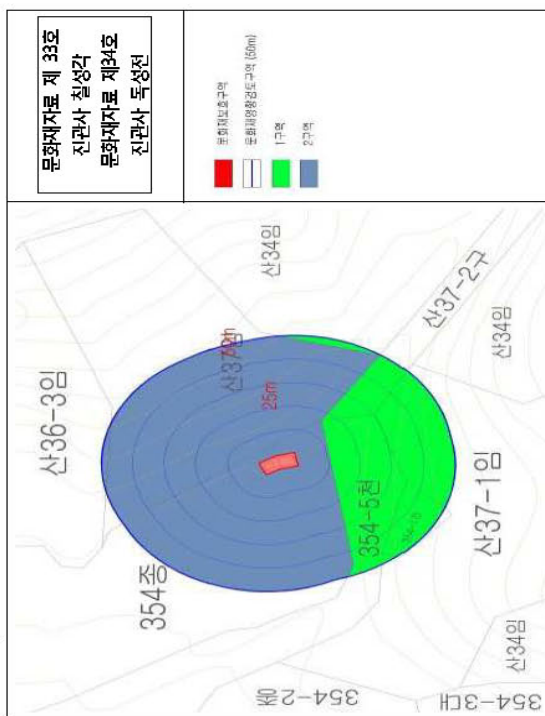
[문화재자료 제37호 마포 최시영 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범경하용기준(안)		비고
	평지용	경사지용(10:3 이상)	
1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금릉시향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법물자장, 및 처리시설, 분고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장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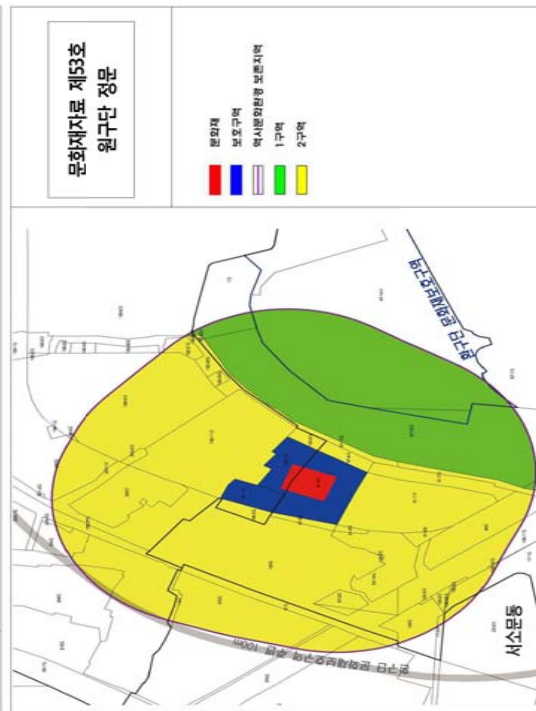
문화재자료 제33호 진문사 칠상각, 제34호 진문사 두상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설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영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 원색계열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포 및 소리가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제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설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설의		



[문화재자료 제53호 원구단 정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인)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축·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99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09.08.)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동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1.12.) 동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9(호2017.4.20.)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동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또는 도시공간개선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7-24외 9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 사업
- 명 칭 : 동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다. 사업규모(변경)

문화시설(변경)			
구분	내용		
	기정	변경	비고
대지면적	9,042.50㎡	9,042.50㎡	-
건축면적	4,234.85㎡	4,242.01㎡	증)7.16㎡
연 면 적	9,204.50㎡ (용적률산정용 7,327.92㎡)	9,217.15㎡ (용적률산정용 7,340.57㎡)	증)12.65㎡ (증)12.65㎡)
건 폐 율	46.83%	46.91%	증)0.08%
용 적 률	81.04%	81.18%	증)0.14%

문화시설(변경)				
구분	내용			
	기정	변경		비고
규 모	43개동 지하2층, 지상4층 (기존5층 2개동포함)	1단계	40개동 지하2층, 지상4층 (기존5층 2개동포함)	- 기 공사완료 ※ E6 유구전시관 공사진행중
		2단계	3개동 지하2층, 지상3층	- 경찰박물관(K) 리모델링 - 한옥2동(J1,J2) 증축
		계	43개동 지하2층, 지상4층 (기존5층 2개동포함)	
용 도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수련시설(유스호텔)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삭제
최고높이	동별 건축물 현황(관련도면) 참조			
소공원(변경)				
구분	내용			
	기정	변경		비고
대지면적	727.60㎡	727.60㎡		(변경없음)
녹지면적	623.31㎡	623.31㎡		(변경없음)
시설면적	104.29㎡	104.29㎡		(변경없음)
시 설 율	14.33%	14.33%		(변경없음)

※ 2단계에 포함

- 건축허가 의제 동별 건축물 현황(변경)

단계 구분	연번	구분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1단계	1	기정	A2	7-5	수련시설(유스호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39	52.56	52.56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	기정	A3	7-50	수련시설(유스호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2	41.37	41.37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단계 구분	연번	구분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1단계	3	기정	A4	7-7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1	52.88	52.88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4	기정	A5	7-8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8	45.81	45.81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5	기정	B1	7-10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68	31.12	31.12
		변경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6	기정	B2	7-12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91	34.84	34.84
		변경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7	기정	B3	7-13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88	30.37	30.37
		변경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8	기정	B6	7-15(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30	40.09	40.09
		변경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9	기정	B7	7-17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2	39.46	39.46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10	기정	B8	7-20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6	50.81	50.81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11	기정	B9	7-11,18,19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5	132.51	132.51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12	기정	C	7-22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1층/ 지상5층	17.36	142.54	800.86
	13	기정	D	6, 6-3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점)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1층/ 지상5층	25.70	839.83	2,114.18
	14	기정	E1E2	7-33, 34-2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62	221.43	448.40

단계 구분	연번	구분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1단계	15	기정	E3	33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55	99.25	187.97
	16	기정	E4	36-2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상2층	6.30	72.35	85.98
	17	기정	E5	37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2층/ 지상3층	12.35	180.73	601.78
	18	기정	E6	7-3,7-4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철골구조	지상1층	4.56	148.64	148.64
		변경					지상2층	6.20	155.80	161.29
	19	기정	F1	32-1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21	68.90	99.02
	20	변경	F2	30-1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일반목구조	지상2층	7.61	83.66	130.19
	21	기정	F3	31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6.96	56.70	93.83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2	기정	G1	27,28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7.01	124.25	221.50
	23	기정	G2	22-2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47	90.99	221.52
		변경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24	기정	G3	22-3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6.55	78.32	145.69
	25	기정	G4	25(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조적조 철골구조	지상3층	11.66	59.91	172.10
	26	기정	G5	25(나,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1층/ 지상1층	6.75	112.03	159.69
		변경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27	기정	G6	23-1,23-2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조적조	지상1층	3.67	69.95	69.95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8	기정	G7	20-1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조적조	지상1층	4.96	79.88	79.88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9	기정	H1	17-1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철골조	지상3층	10.90	37.69	113.07
	30	기정	H2	18-1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2층	7.55	51.44	90.83

단계 구분	연번	구분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1단계	31	기정	H3	19-7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1층	5.25	46.59	46.59
	32	기정	H4	19-1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4층	13.10	72.40	224.17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33	기정	I1	40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6.70	74.96	95.88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34	기정	I2	41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하1층/ 지상3층	9.80	60.50	181.14
	35	기정	I3	43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1층	5.50	62.29	62.29
	36	기정	I4	44(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6.55	54.15	91.10
	37	기정	I5	44(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0	35.68	35.68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38	기정	I6	46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2층	8.50	86.03	122.67
	39	기정	I7	49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10	54.90	80.10
	40	기정	I8	52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31	58.71	99.92
2단계	41	기정	J1	35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5.73	90.02	90.02
		변경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42	기정	J2	35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90	63.84	63.84
	43	기정	K	58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점)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3층	11.50	304.47	1,474.20
		변경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 시행 방법(변경)

- 기정 : 전체일괄시공(총43개동)
- 변경 : 1단계) 도시건축센터(11개동) 및 돈의문전시관(5개동) 외 24개동/기공사완료
2단계) 경찰박물관(K동) 리모델링, 한옥2동(J1,J2) 증축, 소공원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9.12.31일까지
- 변경 : 1단계)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12.31.일까지
2단계) 경찰박물관 이전 완료일로부터 2020.06.30일까지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주거사업과(☎02-2133-7219, 무교별관 4층) 또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공간개선단(☎02-2133-7634~5, 본청 5층)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조서 : 변경없음 [붙임] 참조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거사업과(☎02-2133-7219) 또는 도시공간개선단(☎02-2133-76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편입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총 계				10,218.70	9,042.50	727.60	448.6	박물관마을 편입면적 합계 : 9,770.10				
1	신문로2가	1-402	대	253.80	204.20		49.6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	신문로2가	2-45	대	16.50	16.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3	신문로2가	2-46	대	20.80	20.80			김** 경북 영주시 번영로 1**,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	신문로2가	2-47	대	22.10	22.10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원로 36번길 **, 1**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	신문로2가	3-1	도	13.20	4.40		8.8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6	신문로2가	4	대	117.40	72.20		45.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	신문로2가	4-1	도	3.30	2.10		1.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8	신문로2가	4-3	대	143.80	92.00		51.8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9	신문로2가	6	대	494.50	281.40		213.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10	신문로2가	6-3	대	842.00	780.70		61.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11	신문로2가	7-1	대	3.30	3.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2	신문로2가	7-3	대	79.30	79.30			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원로 36번길 **, 1**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신문로2가	7-4	대	88.20	88.20			이**	서울 서초구 비우미로1길*, 1**-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황**	서울 은평구 진흥로 267, 1**-6**		
14	신문로2가	7-5	대	109.00				신**	서울 종로구 송월길 **-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5	신문로2가	7-7	대	111.50	111.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6	신문로2가	7-8	대	104.80	104.8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7	신문로2가	7-10	대	52.90	52.90			백**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8	신문로2가	7-11	대	69.40	69.4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9	신문로2가	7-12	대	66.10	66.10			왕**	서울 종로구 송월길 **-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0	신문로2가	7-13	대	52.90	52.90			유**	충남 당진시 범절로 1**,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1	신문로2가	7-14	대	52.90	52.90			연**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2	신문로2가	7-15	대	135.50	135.50			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음대로 8**, 9**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3	신문로2가	7-17	대	56.20	56.20			김**	서울 종로구 송월길 **-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4	신문로2가	7-18	대	59.50	59.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5	신문로2가	7-19	대	56.20	56.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폐입	공원 폐입	도로 폐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6	신문로2가	7-20	대	82.60	82.60			김나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7	신문로2가	7-21	도	479.30	475.30		4.0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8	신문로2가	7-22	대	261.20	261.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9	신문로2가	7-23	대	178.50	178.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30	신문로2가	7-24	대	208.30	208.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31	신문로2가	7-29	대	30.10	30.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2	신문로2가	7-31	대	1.30	1.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3	신문로2가	7-33	대	89.30	89.30			김**	경북 영주시 번영로 1**,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4	신문로2가	7-35	대	34.00	22.00		12.0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5	신문로2가	7-36	대	2.60	1.00		1.6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6	신문로2가	7-43	도	46.30	46.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37	신문로2가	7-50	대	90.20	90.20			김**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 *동 36**호			
38	신문로2가	8-1	대	34.40	34.4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39	신문로2가	8-4	대	2.30	2.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0	신문로2가	8-7	도	5.10	5.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41	신문로2가	17-1	대	64.10	64.10			차**	서울 양천구 오목로 2**, *동 1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42	신문로2가	18-1	대	56.50	56.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43	신문로2가	19-1	대	52.90	52.9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44	신문로2가	19-4	도	9.20	9.20			국(국토교통부)					
45	신문로2가	19-5	대	24.80	24.8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46	신문로2가	19-7	대	53.20	53.20			김**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 1**동 6**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7	신문로2가	19-13	대	6.30	6.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48	신문로2가	20-1	대	152.10	152.10			재단법인학원 밀알장학재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1406호				
49	신문로2가	22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길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50	신문로2가	22-2	도	84.30	84.30			윤**	경남 진주시 서정대로 2**, 2**동 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1*, 1**동 7**호	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편입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신문로2가	22-3	대	132.20	132.20			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길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윤**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 2**동 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1*, 1**동 7**호				
52	신문로2가	22-4	도	0.5	0.5			국(국토교통부)					
53	신문로2가	22-7	대	2.60	2.6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54	신문로2가	22-8	대	3.50	3.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55	신문로2가	23-1	대	40.70	40.70			서**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 1**동 9**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56	신문로2가	23-2	대	45.30	45.30			서**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 1**동 9**호				
57	신문로2가	25	대	261.40	261.40			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58	신문로2가	27	대	115.70	115.70			박**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3** 발렌시아 헤시엔 다랜취프트 29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59	신문로2가	28	대	56.20	56.20			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8**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0	신문로2가	29	대	56.20	56.20			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8**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61	신문로2가	30-1	대	95.20	95.20			곽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62	신문로2가	30-2	대	10.60	10.60			곽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63	신문로2가	31	대	69.40	69.40			구**	서울 중랑구 신내로2길 **, 5**동 10**호	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64	신문로2가	32-1	대	109.10	109.10			장**	서울 마포구 창전로2길 **, 1**-1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 1**-10**			
								장**	서울 강남구 연주로29길 **, 5**-3**			
								전**	서울 은평구 진관2로 77, 2**동 13**호			
65	신문로2가	32-2	대	26.40	26.40			곽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66	신문로2가	33	대	158.30	158.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67	신문로2가	34	대	220.80	220.80			이**	서울 성동구 물레15길 *, 1**동 2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 증서 및 내용
								정**	서울 성동구 물레15길 *, 1**동 20**호		
								정**	서울 성동구 물레15길 *, 1**동 20**호		
								정**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		
68	신문로2가	34-1	도	4.50	4.50			국(국토교통부)			
69	신문로2가	34-2	대	132.20	132.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0	신문로2가	34-6	대	8.00	8.0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1	신문로2가	34-7	대	2.70	2.7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2	신문로2가	35-2	대	3.30	3.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3	신문로2가	36-1	대	15.90	15.9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4	신문로2가	36-2	대	87.90	87.9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5	신문로2가	37	대	226.20	226.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6	신문로2가	37-1	도	370.30	370.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종로구			
77	신문로2가	37-2	대	1.50	1.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편입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8	신문로2가	37-3	대	3.40	3.4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9	신문로2가	37-5	도	4.30	4.30			서울특별시				
80	신문로2가	37-6	도	41.10	41.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1**, 5동 15**호			
81	신문로2가	37-7	도	268.10	268.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82	신문로2가	40	대	105.80	105.80			차**	서울 양천구 오목로 2**, *동 15**호	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83	신문로2가	41	대	109.10	109.10			정**	서울 구로구 공원로 **, 2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84	신문로2가	43	대	82.60	82.60			김**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3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4길 **-8, 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85	신문로2가	44	대	135.50	135.50			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4길 **-8, 5**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86	신문로2가	46	대	158.70	158.7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면적	공원 면적	도로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7	신문로2가	49	대	92.60	92.60			양**	29** 올리버 엘엔 아이오아시티 아이에이522** 미합중국				
88	신문로2가	52	대	69.40	69.40			서**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정**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89	신문로2가	54	대	89.30		89.3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90	신문로2가	55	대	214.20		214.2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91	신문로2가	55-2	대	17.50		17.5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92	신문로2가	59-2	도	3.30	3.30			국(국토교통부)					
93	신문로2가	60-2	도	2.30	2.30			국(국토교통부)					
94	신문로2가	92-11	도	75.00	17.90	57.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95	신문로2가	35	대	859.80	594.60	265.20		국(경찰청)					
96	신문로2가	53	대	136.50	52.20	84.30		국(경찰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국(경찰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설정	

○ 건물조서
1) 증축, 대수선 등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7-3	목조	1F	42.85	42.85	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6번길 ***, 1**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	7-4	목조	1F	56.53	56.53	이**	서울 서초구 바우뎬로1길 *, 1**~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황**	서울 은평구 진흥로 2**, 1**~6**				
3	7-5	한옥	2F	59.21	77.39	신**	서울 종로구 송월길 2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	7-50	한옥	1F	33.24	33.24	김**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 비동3604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장**					
5	7-7	한옥	1F	43.96	43.96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6	7-8	한옥	1F	40.68	40.68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7	7-10	목구조+조적	1F	30.04	30.04	백**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8	7-12	목구조+조적	2F	42.96	42.96	왕**	서울 종로구 송월길 2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9	7-13	목구조+조적	1F	29.47	29.47	유**	충남 당진시 범절로 1**,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0	7-15나	목구조+조적	1F	34.05	34.05	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권일대로 8**, 9**동 1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1	7-17	목구조+조적	1F	34.05	34.05	김**	서울 종로구 송월길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자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7-20	목구조+조적	1F	78.21	78.21	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 *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3	7-11	목구조+조적	1F	42.96	42.96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4	7-18	목구조+조적	1F	34.05	34.0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5	7-19	목구조+조적	1F	34.05	34.0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6	4	목구조+조적	B1/1F	58.38	93.72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승월길 106				
17	7-22	철근콘크리트	B1/5F	131.00	727.09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승월길 106				
18	6-가	조적조	1F	14.88	14.88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19	6-나	조적조	1F	39.67	39.6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0	6-다	조적조	2F	341.42	510.28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1	6-3나	조적조	B1/2F	88.30	265.6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6-3다	철근콘크리트	B1/5F	253.59	955.3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3	7-33	조적조	B1/2F	49.75	108.86	김**	경북 영주시 번영로 1**,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24	34-2	조적조	2F	66.12	92.5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승월길 106				
25	33	철근콘크리트+ 조적	B1/2F	86.94	196.3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26	36-2	목구조+조적	1F	52.89	52.89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승월길 106				
27	37	철근콘크리트+ 조적	B1/2F	118.88	336.43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승월길 106				
28	32-1	목조	2F	69.42	115.70	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 1**-10**			근저당권설정	
						장**	서울 마포구 창전로2길 **, 1**-19**				
						장**	서울 강남구 언주로20길 **, 5**-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전**	서울 은평구 진관2로 **, 2**동 13**호				
29	30-1	목구조+조적	B1/2F	84.96	142.15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곽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동**** 1**-8**				
30	31	목구조+조적	2F	36.36	69.42	구**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 5**동 1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31	27	조적조	2F	42.41	84.82	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8**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2	28	조적조	2F	49.59	99.18	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8**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3	22-2	목구조+조적	B1/2F	80.89	152.80	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 1**동 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				
						윤**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 2**동 2**호				
34	22-3	목구조+조적	B1/2F	57.85	117.35	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 1**동 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				
						윤**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 2**동 2**호				
35	25-가	연와조	3F	66.94	200.82	김**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3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6	25-나	연와조	1F	62.61	122.13	김**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3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7	25-다	연와조	1F	59.52							
38	23-1	목구조+조적	1F	21.85	21.85	서**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 1**동 9**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9	23-2	목구조+조적	1F	33.06	33.06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40	20-1	목구조+조적	1F	59.50	59.50	재단법인학원 밀알장학재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 14**호				
41	17-1	연와조	3F	37.69	113.7	차**	서울 양천구 오목로 2**, *동 15**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42	18-1	철근콘크리트	2F	53.20	106.4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19-7	조각조	1F	48.59	48.59	김**	전북 완주군 상판면 신리로 **, 1**동 6**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4	19-1	철근콘크리트	3F	72.40	217.2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45	40	목구조+조적	B1/2F	52.89	76.03	정**	서울 구로구 공원로 **, 27**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6	41	철근콘크리트+조적	B1/2F	60.30	184.86	김**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3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설정	
47	43	조각조	1F	57.85	57.85	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4길 48-*, 5**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4길 48-*, 5**호				
48	44-가	조각조	1F	36.36	36.36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49	44-나	목구조+조적	1F	29.75	29.7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50	46	목구조+조적	1F	39.67	39.6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51	49	목조	2F	46.28	72.73	여**	강남구 대치동 ***, ***아파트 5-15**				
52	52	목구조+조적	2F	52.89	82.64	정**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서**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 3**동 12**호				
53	35	철골조	B1/5F	-	-	국(경찰청)					
54	58	철골철근 콘크리트	B2/13F	304.47	4,518.9	국(경찰청)					

2) 철거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물대장)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1-402	철근콘크리트	B1/4F	111.60	590.0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2	7-14	목구조+조적	1F	32.83	32.83	연**	서울 종로구 송월길 2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3	7-15가	목구조+조적	1F	35.96	35.96	강**	고양 덕양구 권율대로 8**, 9**-동 10**-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4	4-3	연와조	B1/3F	88.76	236.6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5	7-23	철근콘크리트	B1/3F	83.31	327.41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6	7-24	철근콘크리트	B1/2F	96.43	161.32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7	6-3가	철근콘크리트	B1/2F	105.79	294.61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8	5	목구조+조적	2F	13.22	26.44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9	5-4	목구조+조적	2F	9.92	19.84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10	8-1	조적조	1F	33.05	33.0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				
11	34-가	목조	1F	46.45	46.45	이**	서울 성동구 들레15길 *, 1**-동 20**-호				
12	34-나	목조	1F	46.28	46.28	정**	서울 성동구 들레15길 *, 1**-동 20**-호				
13	34-다	시멘트벽돌조	1F	39.52	39.52	정**	서울 성동구 들레15길 *, 1**-동 20**-호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41-**-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설정	
14	55	철근콘크리트	B1/5F	210.74	1077.57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길 13, 상가동 20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친화대로 346	지상권설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05호

2017년도 제17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17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 2017. 12. 6.(수) 14:00 ~ 16: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9건 12작품 (조각 10, 회화 2)
 라. 심의결과 : 승인 7작품, 부결 5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1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조각	공존(Live Together)		○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1-2		조각	말을찾아서+2017		○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2	도봉구 쌍문동 711번지	조각	명상-유토피아		○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3	영등포구 여의도동 55-2번지	조각	하늘 날다		○	작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구조적 안정성 보완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유지관리 방안 필요
4	영등포구 양평동3가 29-1번지	조각	'공존'	○		
5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번지	조각	숲을 그리다	○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6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조각	희망의 내일		○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7	송파구 문정동 652-4번지	조각	어울림(Harmony)	○		
8-1	종로구 새문안로 68	조각	Head 2000	○		
8-2		조각	뿔 있는 우제류를 위하여	○		
9-1	종로구 종로 51	회화	늦가을	○		
9-2		회화	바람좋은날	○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2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115	(재)승일희망재단 (대표 : 박승일, 로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 루게릭요양병원 건립비 지 원 기금 및 루게릭병 환우 를 위한 지원기금 마련	1,000 (현금)	전국	'17.12.14 ~ '18.11.30
						'17.12.14 ~ '19.11.30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116	(사)글로벌희망 나눔 (대표 : 권증현)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62길 66	- 반찬도시락, 푸드뱅크 및 생명존중 자살 예방 운동을 통한 자생적 사회안전망 구축	100 (현금및물품)	전국	'17.12.14~ '18.12.13
						'17.12.14~ '19.12.13
2015-117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대표 : 이남숙)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5길 21	- 소년소녀가장, 불우 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	724 (현금및물품)	전국	'18.1.1 ~ '18.12.31
						'18.1.1~ '19.12.30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2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어 1년이 경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의 해산을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해산명령 조합 : 7개 조합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휴면지정일	해산명령 사유
1	서울중서부공상품 잡화소매업협동조합	1996.12.02.	2013.09.09.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2	서울경기중앙인쇄 사업협동조합	2007.10.15.	2016.09.13.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3	서울남동부인터넷콘텐츠 서비스사업협동조합	2014.01.28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4	서울동북부재활용단지 사업협동조합	2010.06.04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휴면지정일	해산명령 사유
5	중부육류사업협동조합	2009.06.30	2016.09.13.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6	한국전시컨벤션 사업협동조합	2007.01.23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7	한국출산유아 사업협동조합	2008.02.18.	2016.08.04.	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활동재개 미신청)

2. 해산명령일 : 2017. 12. 14.(목)

3. 기타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제1항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해산을 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 02-2133-5241)

우)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23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작구 상도동 183-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사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3-26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I. 열람 기간 : 2017. 12. 22. ~ 2018. 1. 4.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36)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82,985.0	-	82,985.0	1997.02.14. (서울시고시 제1997-14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총괄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2,985.0	-	82,985.0	100.0	
주거 지역	소계	70,671.0	-	70,671.0	85.2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	1.0	0.0	도로 및 광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86.0	-	23,686.0	28.6	도로 및 광장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84.0	-	18,584.0	22.4	
	준주거지역	28,400.0	-	28,400.0	34.2	
상업 지역	소계	12,314.0	-	12,314.0	14.8	
	근린상업지역	12,314.0	-	12,314.0	14.8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21.0	-	621.0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1.0	-	621.0	100.0	

나. 용도지구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노량진동240-1 ~ 대방동 400-5	65,280 (346.3)	2,720 (31.4)	양측 12	1982.04.22. (서고시 제164호)	장승배기로 상도로

※ ()는 대상지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b	9,454.0	상도동 183-26	621.0	-	

※ 가구번호 A, B, C, a, b(대상지 제외), c, d : 기재 생략, 변경 없음

나. 필지의 교환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다.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불허용도(변경 없음)

구 분		불허용도(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 고
기정	공통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B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 제28호 장례식장	준주거지역

• 건축물의 권장용도(변경 없음)

구 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 고
기정	2	전층 (1층 제외)	- 제34호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금융업소, 사무소, 학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저층 (1층)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 건축물의 지정용도(신설)

구 분		지정용도	비 고
신설	I	- 공동주택^{주1)} (주거복합) ※ 단, 지상1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상도동 183-26에 한함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상도동 183-26 : 공동주택^{주1)} (주거복합)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상도동 183-26” 필지에 지정용도 신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1) 건폐율 계획(변경)

- 건폐율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준주거지역	60% 이하	66% 이하	상도동 183-26에 한함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폐율 변경 - 기정 : 60% 이하 - 변경 : 66%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2조제4항에 의거 “상도동 183-26”에 한하여 건폐율을 법정상한(70%) 이하인 66% 이하로 완화

2) 용적률 계획(변경)

- 용적률 계획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기정	준주거	간선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변경			• 기본용적률 : 500% 이하		법정 이하 ^{주)}	상도동 183-26에 한함

주)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 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 면적의 6%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본용적률 500% 이하 부여	• 상도동 183-26에 한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율	• 15% 미만(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구 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 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 1층 50.7㎡, 지하 1층 53.1㎡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4-10에 의거 커뮤니티시설 층별 면적 분할 설치 가능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지정 : 기준/허용/상한 : 300%/360%/400% 이하 - 변경 : 기본/상한 : 500% 이하/법정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상도동 183-26'의 용적률 체계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준주거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공통사항)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 이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중 주거부분 ^{주1)} 의 허 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주거비율 제한 없음	· 상도동 183-26에 한함

주1)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을 말함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 이후)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변경 -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거비율 :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 주거비율 제한 없음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상도동 183-26의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1991. 5.11. 이후)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용적률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변경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 >

－ 기 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 / \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 / \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 변 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 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주거비율 제한 없음	비주거비율 제한 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 용적률 배분기준 변경 - 주거건립가능 :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 / \beta$ → 주거비율 제한 없음 - 비주거 건립 :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 / \beta$ → 비주거비율 제한 없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상도동 183-26의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1991.5.11. 이후)의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 용적률 배분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용적률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변경

3) 용적률 인센티브계획(변경 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 높이계획(변경 없음)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상도로변	72m 이하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건축선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기정	건축 한계선	· 간선도로변 (상도로, 장승배기로)	· 3m	· 보도부속형 조성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	· 결정도 참조
		· 이면도로변	· 2m 이하	· 차도부속형 조성 (이면부 보행공간 확보)	
		· 공공보행통로변 지정	· 1개소(2m)	· 대지내 보행공간 확보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마.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500% 이하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없음)	부지 면적의 6% 이상 ^{주1)} (37.26㎡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6.17% (38.33㎡)	상도동 183-26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 간선도로,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	· 인도/차도 부속	·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조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기정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상도로변 · 장승배기로변	·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교차로에 면한 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	폭원 20m 이상 간선도로변 (불허구간 확대)	—
공공보행통로	· 주요가로 및 이면주거지와 보행흐름 연계 필요구간 — 상도동 183-26 남측 조성	·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 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1개소 (B=3m) ※ 대상지 2m 폭원 조성	—

※ 결정사항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없음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중앙대학교)

1. 서울특별시고시 제260호(1976.10.05)로 도시계획시설(학교)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0호(2013.05.09)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동작구 흑석동 221 일대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19호(2002.12.05.)로 도시계획시설(학교)이 결정된 평동 85-15일대 적십자 간호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 02-2133-8412, fax : 02-2133-0739)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02-2148-2664, fax : 02-733-0060)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02-820-9559, fax : 02-820-9798)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외부활동, 상징경관, 녹지보존)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 중앙대학교(흑석동캠퍼스)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전체	동작구 흑석동 221일대	175,911	증)2,285.3	178,196.3	-	
		A구역	동작구 흑석동 221일대	144,660	증)919.3	145,579.3	1976.10.05. (서고제260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B구역	동작구 흑석동 224-1일대	23,055	-	23,055		제2종일반주거지역
		C구역	동작구 흑석동 211-32일대	8,196	-	8,196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D구역	동작구 흑석동 186-7일대	-	증)1,366	1,366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앙대학교(평동교사)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종로구 평동 85-15일대	2,106	-	2,106	2002.12.05. (서고제419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 당초 적십자간호대학에서 중앙대학교 평동교사로 명칭변경 사항임.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 생략 (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36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기 준	변 경
1. 명 칭 : 에너지체험관 행복한아이	1. 명 칭 : 에너지체험관 행복한아이
2. 등록번호 : 제 서-3호	2. 등록번호 : 제 서-3호

기 준	변 경
3. 구 분 : 전문과학관(사립)	3. 구 분 : 전문과학관(사립)
4. 설 립 자 : (재)한국원자력문화재단	4. 설 립 자 : (재)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5. 대 표 자 : 김 호 성	5. 대 표 자 : 김 호 성
6.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6.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37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1종 (E-2-526) 전문감리업 (S-2-520)	세명엔지니어링(주) (110111-6454518)	윤병규	서울 관악구 조원로 128, 301호(신림동, 지산빌딩)	2017.12.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39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심의를 완료하고, 기존 2017.7.26.~8.9. 주민열람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1) 구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 2)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공개공지”, “야간조명 및 야간광고” 관련지침 변경
 - 공개공지, 야간조명 등 관련규정에 ‘특별가로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정’ 신설
- 3)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반(☎02-2133-8229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12)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5)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158호

울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된 울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제동 98번지 외 10필지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1.21.)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종 로 구 청 장

1. 울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변경
C-4	2	효제동 98	효제동98 (2011합병)	5,888.80	118, 119, 116-1 공동개발 권장	98(대지분할가능) 공동개발 권장, 113, 115-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99				
		효제동 98-1				
		효제동 97			95-1, 96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96				
		효제동 94-1			94-2, 95-1, 95-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93				
		효제동 92-1				
		효제동 86-1			117-1, 11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82				
		효제동255-19			82, 85-1, 86-1, 86-4, 91, 92-1, 93, 94-1, 96, 97, 98, 99, 98-1, 108, 109, 110, 111, 112-1, 113, 114, 115-1, 119, 121, 122, 255-19, 291-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22				
		효제동 121				
		효제동 114				
		효제동 112-1				
		효제동 111				
		효제동 110				
		효제동 109				
효제동 108	93, 255-17 공동개발 권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변경
		효제동 119			
		효제동 118			
		효제동 116-1			
		효제동 117-1			
		효제동 113	59.9		113, 115-1 공동개발 지정, 98(대지분할가능)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15-1	34.3		
		효제동 94-2	16.5		94-2, 95-1, 95-2 공동개발 지정, 98(대지분할가능), 91, 255-17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95-1	69.4		
		효제동 95-2	6.6		
		효제동 255-17	19.2		
		효제동 91	10.5		291-7, 85-1, 86-4 공동개발 지정, 98(대지분할가능)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91-7	3.9		
		효제동 85-1	28.6		
		효제동 86-4	116.7		

※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2008.11.20.)에 따라 기 합필(2011.05.03.)된 효제동 98번지 외 22개 필지의 경우, 공동개발(지정/권장)을 이행한 것으로 봄

※ 공동개발 변경 및 대지분할 가능선 신설은 관계도면 참조

나.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대지내공지 결정조서

구 분	적용구간	제어내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보행연결필요구간	폭4m 이상으로 조성	- 금회 가구 C-4 내 신설(결정도 참조) - C-4 내 효제동 255-17도를 포함하여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치(효제동 255-17도)에 김상옥로와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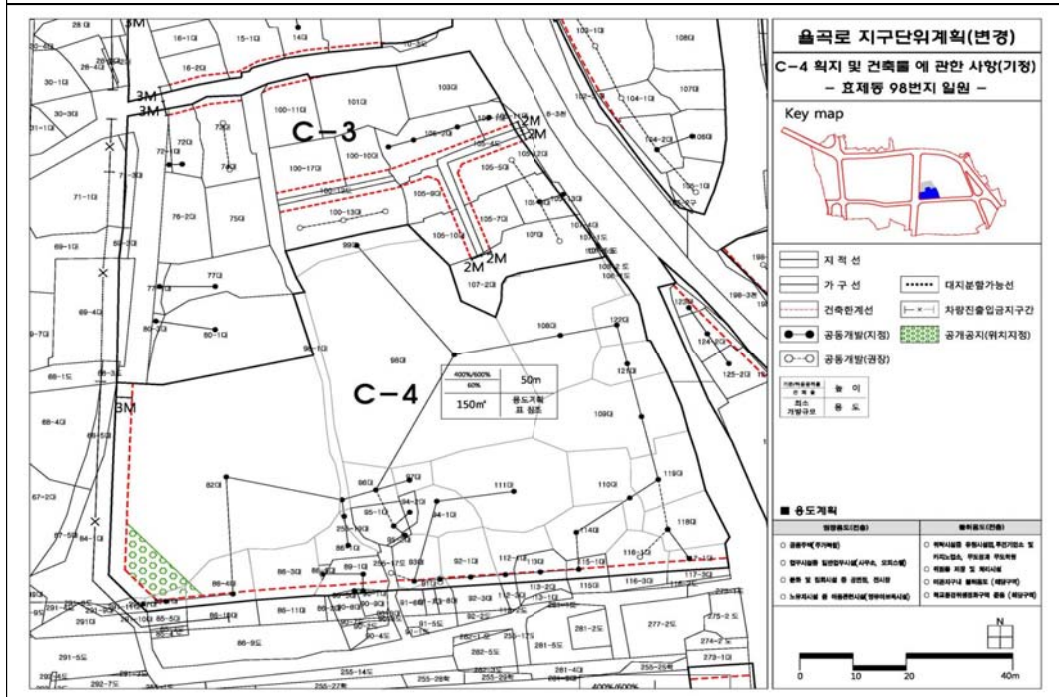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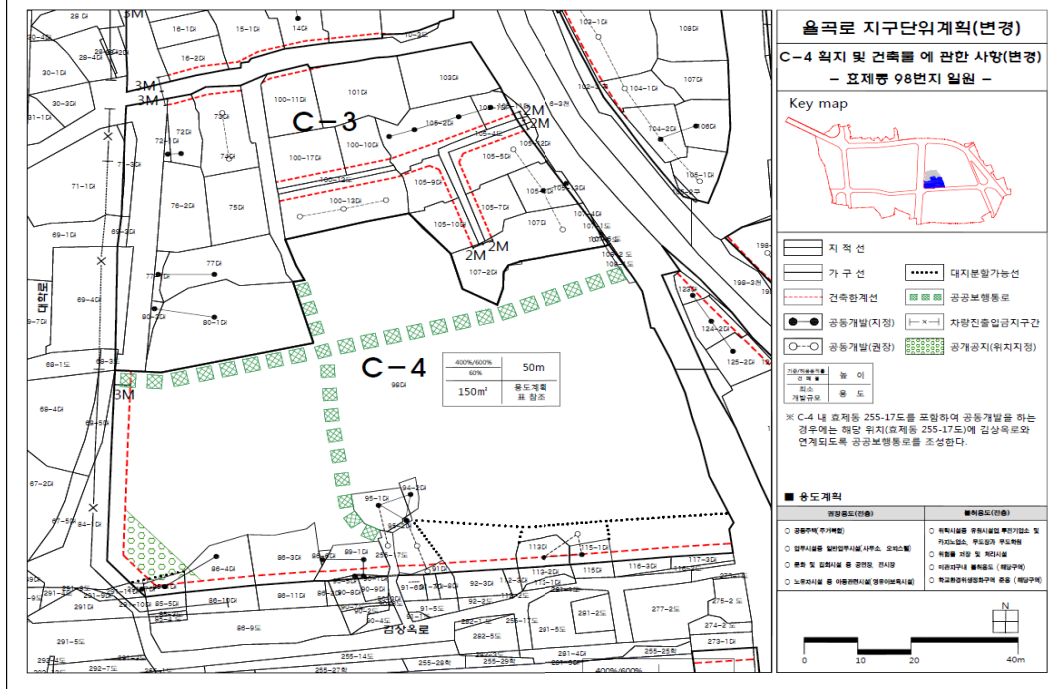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광진구고시 제2017-14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7.2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7-118호(2017.10.26.)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73-1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7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사업의 명칭 :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

다. 사업의 규모 : 245.5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과 지장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조서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을 준용 준공검사와 동시에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출입구 부분 일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7-118호(2017.10.26.) 입체적 결정 내용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의 명칭 :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면적 (㎡)	구분지상권 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1	광진구 중곡동	273	1	도로	15458.5	3.73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73-1	출입구
2	광진구 중곡동	30	80	대지	18882	211.16	173.86	국(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80	
소 계					34340.5	214.89	173.86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면적 (㎡)	구분지상권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3	광진구 중곡동	273	1	도로	15458.5	12.94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73-1	환기 구
4	광진구 중곡동	30	80	대지	18882	17.73	－	국(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80	
소 계					34340.5	30.67	－			
합 계					34340.5	245.56	173.86			

◆ 동대문구고시 제2017-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2017-21호(2017.04.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454호(2017.05.11)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열람공고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7-42호(2017.06.01)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7-60호(2017.08.10)로 인가 변경고시된 이문동 170-127호 일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호 일대

나. 사 업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공공공지)

다. 사 업 명 칭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라. 사 업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167㎡

마. 사업 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경 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1) 변경 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사.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불임 참조

아. 계 재 방 법 : 시보게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2127-4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토지 및 물건조서

토 지 조 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이문동	170-127	대지	76	76	전용남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1길 27, 403동 1206호				
2	이문동	170-128	대지	35	35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	이문동	170-209	대지	56	56	송명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1동 2503호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이문동 170-127	건물	벽돌조	49.12㎡	전용남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1길 27, 403동 1206호	김광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	임차인	
2	이문동 170-209	건물	연와조	49.12㎡	송명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1동 2503호	박인택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209	임차인	

◆ 동대문구고시 제2017-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6-91호(2016.12.2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154호(2017.2.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열람공고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7-29호(2017.4.13)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7-40호(2017.05.25)로 인가 변경고시된 제기동 728-3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28-3번지

나. 사 업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공공공지)

다. 사 업 명 칭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라. 사 업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201.3㎡

마. 사업 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경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2) 변경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사.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아. 계 재 방 법 : 시보게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2127-4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토지 및 물건조서

토 지 조 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제기동	728-3	대지	201.3	201.3	민건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28-3	민영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7-1		
								민경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90 103동 304호		
								민병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면목로 72길 14, 401호		
								민병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1길 18, 407호		
								민미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1		

별첨 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제기동 728-3	사무실	샌드위치판넬	9㎡	김수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28-2				
		화장실	샌드위치판넬	1㎡						
		창고	샌드위치판넬	4㎡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계근대	-	1식						
		담장	철재헬스 등	1식						
		철재문	-	1식						
		지장물	기타 고물일체	1식						
		저울	-	1식						

◆ 중랑구고시 제2017-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21호(2015.04.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63호(2016.12.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화동 306-44~306-69구간』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31호(2016.06.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중화동 305-56~305-42구간」에 대하여 중랑구 공고 제2017-1066호(2017.11.23.)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중랑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업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306-44~306-69간(봉화산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중화동306-44~306-69간(봉화산로) 확장공사	B=5m L=60m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 (2009.06.04.)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로179 (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18.12.31.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305-56~305-42간(봉화산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중화동305-56~305-42간(봉화산로) 확장공사	B=5m L=62m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 (2009.06.04.)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시중랑구 봉화로179 (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18.12.31.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다.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6-44 ~ 306-69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여의권리	
1	당초	중화동	306-75	대	97.7	97.7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	당초	중화동	306-76	대	63.2	63.2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	당초	중화동	306-77	도로	20.9	20.9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4	당초	중화동	306-78	대	67	67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5	당초	중화동	306-79	대	65.4	65.4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5-56~305-42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1	당초	중화동	305-56	도로	769.6	2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변경	중화동	305-79	도로	20.0	2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2	당초	중화동	305-45	대	344.8	73.8	지평화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31, 104동 2201호(월계동, 그랑비아파트)	남홍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2, 10동 801호(서초동, 우성아파트)	가압류	
	변경	중화동	305-80	대	73.8	73.8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엘지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0	전세권	
3	당초	중화동	305-44	대	211.6	66.6	유정수(1/2) 김조순(1/2)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변경	중화동	305-81	대	66.6	66.6	서울특별시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청계7가 지점]	근저당권	
4	당초	중화동	305-43	대	198.0	46.2	최항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534번길 18	-			
	변경	중화동	305-82	대	46.2	46.2	서울특별시					
5	당초	중화동	305-42	대	555.0	147.1	주식회사 중앙에너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07-55	한국맥도날드유 한회사	서울시 종로1, 13층(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전세권	
	변경	중화동	305-83	대	147.1	147.1	서울특별시					

별첨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6-44~306-69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당초	중화동	306-44	건물(1층)	시멘트벽돌조	75	김수정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0길 38(중화동)	진접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78-1	근저당	변경 없음
				건물(2층)	연외조	47.5			(주)식회사 비지에 프리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레란로405(삼성동)	근저당	
2	당초	중화동	306-43	건물(1층)	연외조	61.7	허용중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20-9(묵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강원도 원주시 간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류	변경 없음
				건물(2층)	연외조	61.7						
3	당초	중화동	306-70	건물(1층)	연외조	38.4	김선용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28-6 (중화동)				변경 없음
				건물(2층)	연외조	13.2						
4	당초	중화동	306-69	건물(1층)	시멘트벽돌조 연외조	35.7	우점자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33-4 (중화동)				변경 없음
				건물(2층)	시멘트벽돌조 연외조	14.7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5-56~305-42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1	당초	중화동	305-45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54.8	지평화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31, 104동 2201호(월계동, 그랑빌아파트)	남흥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2, 10동 801호(서초동, 우성아파트)	가압류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54.8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4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5층)	연외조	57.5			주식회사 엘지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0	전세권		
				건물(옥탑)		22.7							
	변경	중화동	305-45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54.8	서울특별시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54.8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4층)	철근콘크리트조	57.5							
				건물(5층)	연외조	57.5							
				건물(옥탑)	연외조	22.7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관리	
당초		중화동	305-44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유정수(1/2)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건물 (지하출입구)	철근콘크리트조	3.7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김조순(1/2)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청계7가 지점]	근저당권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건물(옥탑)		5.4						
변경		중화동	305-44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김조순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1길 57(장위동)				
				건물 (지하출입구)	철근콘크리트조	3.7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45.7						
				건물(옥탑)	철근콘크리트조	5.4						
				담장	블록(5m×2.5m)	1식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관리	
3	당초	중화동	305-42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6.3	주식회사 중앙에너지서비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07-55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서울시 종로1, 13층(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전세권	
	변경	중화동	305-42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16.3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6.3	서울 특별시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16.3						
4	당초	중화동	305-43	-	-	-	-	-	-	-	-	
	변경	중화동	305-43	지장물 (간판)	8.7m×1.5m	1식	김점희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1길 5, 101동 1001호(목동,호산센터빌)				

영업권 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6-44~306-69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소재지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중화동 306-44	우동한그릇	일반음식점	김성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57-10 (대림동)	
2	중화동 306-44	쌈유 이화교사거리점	편의점	강현아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31(중화동)	
3	중화동 306-44	유가네빵집	제과점	류종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28-21, 202호 (중화동,세영리치빌)	
4	중화동 306-43	황실맛사지방				보상완료
5	중화동 306-43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업	김남홍	동대문구 제기동 887-70	
6	중화동 306-43	금수사	일반음식점	김남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7길 7-5 (중화동)	
7	중화동 306-43	찰떡궁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수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11-25 (중화동)	
8	중화동 306-70	포차의 신	일반음식점	권순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73,나동 302호 (묵동,잠미아파트)	
9	중화동 306-79	홍두깨칼국수	일반음식점	박양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신로 195-7 (인후동1가)	
10	중화동 306-79	한양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업 컨설팅	김호중	광진구 노유동 57-84	보상완료
11	중화동 306-79	썬더치킨	일반음식점	김만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56,109동 503호 (공릉동,효성아파트)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5-56~305-42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중화동 305-45	GS25중화역점	편의점	김기섭	경기 의정부시 신곡로 333 대우아파트 104-901	보상완료
2	중화동 305-45	삼대냉면	식품접객업	박계옥	서울 강북구 수유동 554-94 (4층)	
3	중화동 305-45	템템구리	호프	정수덕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01-77번지 201호	보상완료
4	중화동 305-45	응접실당구장	당구장	한상숙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06-5	보상완료
5	중화동 305-45	새생명교회	종교단체	고영구	서울 중랑구 중화동 131-27 삼성스타빌 501호	보상완료
6	중화동 305-45	새천년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김영안	서울 중랑구 동일로149가길 8 성원하이츠 A동 501호	보상완료
7	중화동 305-45	토모루	식품접객업	김주현	서울 중랑구 동일로126길 37, 302호 (중화동, 대원빌라)	추가
8	중화동 305-44	안경창고 싸군(중화점)	안경	홍명진	서울 광진구 광장동 258-27 광장빌라 301호	
9	중화동 305-44	헤어두	미용실	한금주	서울 도봉구 쌍문2동 81-415	보상완료
10	중화동 305-44	모아스튜디오	사진관	신종욱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5-44 (3층)	보상완료
11	중화동 305-44	연어에반하다	식품접객업	이은주	서울 도봉구 창동 299 상아아파트 3동 213호	보상완료
12	중화동 305-43	싱싱아채과일	아채과일	김점희	서울 중랑구 묵동 391 호산센터빌아파트 101동 1001호	물건(지장물) 보상대상
13	중화동 305-42	한국맥도날드(유) 중화점	식품접객업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유통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 13층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보상완료

I. 위 치 도



II. 현 황 사 진



◆ 중랑구고시 제2017-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7호(1974.0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12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24호(2017.04.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되고, 중랑구 공고 제2017-1060호(2017.11.23.)로 열람공고한 『중화동 148-53 ~ 135-29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중랑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업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8-53 ~ 135-29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중화동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B=6m L=45m	인가일로부터 2017.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74.04.20.)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시중랑구봉화로179 (신내동)
변경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인가일로부터 2018.12.31. 까지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다.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당초	중화동	148-175	대	27	27	양준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문성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가압류	
	변경	중화동	148-175	대	27	27	중랑구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중랑교지점]	근저당권	
2	변경 없음	중화동	148-176	대	25	(15/238) × 25	이경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66-17	근해안강 만수산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5-4(구월동남지점)	근저당권	
						(33.2/238) × 25	이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4-44				
						(33.2/238) × 25	박은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62, 202호(중화동, 미래하이츠)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마포로지점]	근저당권	
						(33.2/238) × 25	김영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7길 17-5(망우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33.2/238) × 25	김명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8-42 미래하이츠 302호	중앙보림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35-8(이타타워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삼성동지점)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중화동	148-176	대	25	(33.2/238) ×25	박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8-42 401호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군자역지점]	근저당권	
							김명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102 4층 401호	서울경기양 돈축산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당권	
3	변경 없음	중화동	148-177	대	35	(38.5/238) ×25	한진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62, 501호(중화동, 미래하이츠)	국민건강보 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간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류	
							박영숙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활산로236번길 12	주식회사하 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4	당초	중화동	148-178	대	23	23	한석현 (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201호(공의문)	관악농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독산동) (신독산지점)	근저당권	
							박재강 (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504호(공의문)				
5	변경	중화동	148-178	대	23	23	중앙구					
		중화동	148-180	도	156	156	최광천	성북구 성북동 145-24	성북세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임류	
6	변경	중화동	148-180	도	156	156	중앙구					
		중화동	148-163	대	29	29	유승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4동3404호(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7	변경	중화동	148-163	대	29	29	중앙구					
		중화동	135-42	대	6	6	황금복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6(중화동)	빅중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6(중화동)	기등기권	
	변경	중화동	135-42	대	6	6	중앙구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당초	중화동	148-178	건물(1층)	연와조	14	한석현(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201호(공의문)					근저당권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1020번길 32, 101동 1504호(공의문)		관악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독산동) (신독산지점)		
				대문	철재	1식	박재강(1/2)						
				건물(1층)	연와조	72							
	변경	중화동	148-178	담장	벽돌	9.9×1.8	중랑구						
				대문	스텐레스/벽돌/스라브	2.3×2.4							
				철계단	철재	0.7×2.1							
				정화조		0.7×1.5							
				수도계량기		1식							
				비거리	샌드위치패널	1.0×4.9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2	당초	중화동	148-177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박영숙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활산로236번길 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근저당권
	변경	중화동	148-177	대문 기 건물	철재 판넬	1식 7	박영숙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활산로236번길 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2	변경	중화동	148-177	창고	벽돌/스라브	5	박영숙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활산로236번길 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근저당권
				화장실	벽돌	2						
				대문	스테인레스/벽돌/스라브	2.7×2.4						
				외측담장	벽돌	4.4×1.7						
				우측담장	벽돌/철재	6.0×2.3						
				비거리①	폴리카보네이트	2.7×3.5						
						1.7×1.8						
				비거리②	스테인레스유리	0.8×1.2×2.8						
						9.5×3.8						
				정화조		1식						
				수도계량기		1조						
				외부수도		2식						
				화단	벽돌	9.5×3.8						
				대추나무		1주						
				감나무		1주						
				앵두나무		1주						
				장미		1식						
				담쟁이		1식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의 권리	
당초	중화동	148-175		담장	시멘트 블록조	1식	양준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58(중화동)	문성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중랑교지점]	기입류	
				대문	철재	1식							
				가건물	스레트	2							
				대문	철재/벽돌	2.9×2.3							
변경	중화동	148-175		창고	벽돌/스라브	2	중랑구						
				우측담장	벽돌	3.8×1.7							
				좌측담장①	벽돌	5.8×1.7							
				좌측담장②	벽돌	0.9×1.7							
				정화조		1식							
				수도									
				계량기		1식							
				외부수도		1식							
				화단	벽돌	4.8×0.7							
				사철나무		3주							
				전나무		1주							
				단풍나무		1주							

☐ 위 치 도



☐ 현 황 사 진



◆ 중랑구고시 제2017-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법만사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봉화산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 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92호(1998.12.05)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으며,
2.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호(1997.02.13)로 최초 결정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1호(2016. 7. 28)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3. 봉화산근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산5-11번지 일대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64(2017.10.10)호로 인가고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약이 지연되어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에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에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산5-11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봉화산근린공원조성(법만사뒤)
- 3) 사업의 면적 : 3,91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중랑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5)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등
-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당초 : 인가고시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나) 변경 : 인가고시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별표 4의 제10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 2) 서울특별시의 사무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매수)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 송창선(☎02-2094-2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봉화산근린공원 조성(법만사뒤)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8,071	3,915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1	중랑구 중화동 산5-12	임야	3,122	2,372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를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2	중랑구 중화동 산5-11	임야	3,174	715	박민형	강릉시 입암동 210 이안강를타운아파트 117-702					
					박민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판교원마을 506-2403					
					박민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6-1503					
					박민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161-704					
					박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1 G하우스 701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중랑구 중화동 신5-10	임야	1,785	828	김종덕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1-705					
					정석진	도봉구 창동 347, 주공아파트 314-903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 사 업 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범만사뒤)
☐ 사 업 시 행 자 : 중랑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이	하	여	백			

◆ 중랑구고시 제2017-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용마폭포공원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용마도시자연공원은 내무부고시 제413호(1958. 2.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고 변경 결정사항은 서고 제353호(1998. 10. 9.)로 최종 고시되었으며,
2.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건고 제491호(1982. 12. 30.)로 최초로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4호(2013. 9. 12.)로 최종 결정(변경) 고시되었습니다.
3. 용마도시자연공원의 일부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산75번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63호(2017.10.10)호로 인가고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약이 지연되어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에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에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75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용마폭포공원뒤)
 - 3) 사업의 면적 : 2,43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중랑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5)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등
 -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당초 : 인가고시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나) 변경 : 인가고시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별표 4의 제10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 2) 서울특별시의 사무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수용(매수)되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에 귀속됨
-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주무관 송창선(☎02-2094-2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용마폭포공원 뒤)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48,281	2,430							
1	중랑구 면목동 신75	임야	48,281	2,430	유석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압구정 현대아파트 24동 1402호		김형주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2, 디엠씨파크뷰자이 126동 1601호	근저당권 지상권	
								광해명품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퇴계로 72, 남산에스케이리더스뷰 201호	근저당권 채무자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 사업명 : 용마도시자연공원(용마폭포공원 뒤)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전의 권리내용	
				이	하	여	박			

◆ 노원구고시 제2017-13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취지 : 상계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도모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건강생활지원 센터	상계동 1035-1 외 2필지	-	증)763	763	-	

- 건축물의 범위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공공청사 (건강생활지원센터)	50%이하	250%이하	4층 이하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계획과(T.2116-386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 (SCALE = 1 : 100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M2)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건강 생활 지원센터	노원구 상계동 1035-1와 2필지		총)763	76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5호(2017. 12. 21)

구 분	결정일자		
	작성 일자	1차 확인일자	2차 확인일자
소 속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
직 위	팀 장	팀 장	과 장
직 명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오 정 외	이 호 진	유 병 선
확인인			

◆ 노원구고시 제2017-1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2-6호(1992. 2.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3-49호(1993. 9. 15.)로 지적승인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6-119호(2016. 12. 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앞 삼거리 도로선형개량』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개요(변경 없음)

사업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결정 고시일자	지형도면 고시일자
노원구 중계동 34-1 ~ 중계동 37-4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앞 삼거리 도로선형개량	B=0.5~3.5m L=30m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2-6호 (1992. 2. 28.)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3-49호 (1993. 9. 15.)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701-1)

다. 사업 기간 ▮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

└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변경 없음)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전화 : 02-2116-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중계동 34-1	도로			도로 및 건물점유	건설부						
2	노원구 중계동 37-1	도로			도로 및 건물점유	노원구						
3	노원구 중계동 37-4	도로			도로 및 건물점유	노원구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4-1 외2필지	건축물 (1층)	세멘조	41㎡	음식점 (주점)	김오수	노원구 중계로 116 (노원구 중계동 34-1호)					무허가
2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4-1 외2필지	수조 등		1		김오수	노원구 중계로 116 (노원구 중계동 34-1호)					화장 영양

◆ 양천구고시 제2017-8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변경(폐지) 결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3	3	6	일반 도로	보행 도로	57	신정동 733-5	신정동 758-4	1997.10.30. (서고시 제332호)	

나. 공공공지(변경)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신정동 733-48번지 일대	1,141	감 326	815	2004.7.10. (구고시 제53호)	

다. 청소년수련시설(신설)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신정동 1290-6번지 일대	-	증 1,935.8	1,935.8	-	· 1290-1호(도로폐지)부분 중 신정동 1290-3호 차량진출입로 부분은 보차혼용도로 사용 (B=6m,H=6m,L= 25m)

○ 건축범위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건축물의 범위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신정동 1290-6번 지 일대	50%이하	250%이하	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라. 결정 사유서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로(기능상실) 폐지 및 공공공지를 변경결정하고, 본 토지를 포함한 신정동 1290-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 결정 함.

2.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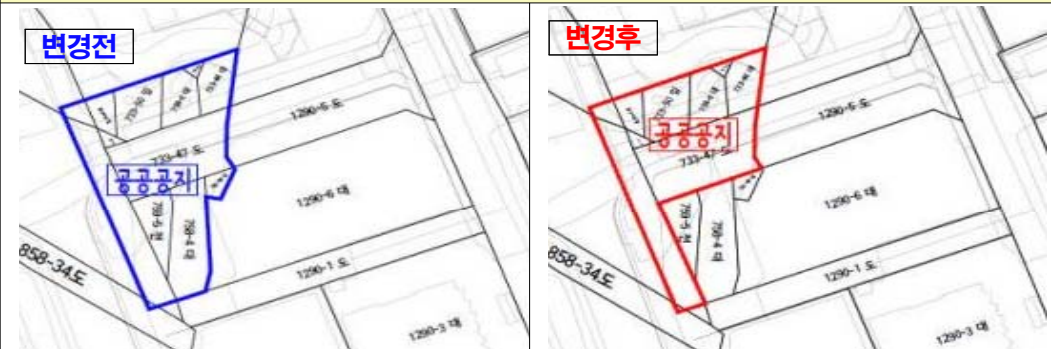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 (공공공지)변경 및 (청소년수련시설)신설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 도로(폐지)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변경)



■ 도시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신설)



◆ 관악구고시 제2017-99호

도시관리계획 (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8(1996.12.16.)로 결정되고 제2008-274(2008.8.7)로 변경 결정된 「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관 악 구 청 장

- 결정(변경) 취지 : 대규모 개발중심의 획지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인 개발은 전무한 실정으로 주변 강남아파트재건축 등 개발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I. 도시관리계획(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가구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나. 획지 결정(변경)조서

■ 획지선 <변경사항 없음>

■ 공동개발(변경)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공 동 개 발	GC-1	신림동	1643	4,069.3	단독		단독	변경없음	
			1643-4		지정		권장	-	
			1643-5						
			1643-6						
	GC-2	신림동	1655	3,626.8	지정	권장	지정	-	
			1655-1				단독	-	
			1655-6					-	
			1655-2		권장		권장	-	
			1655-4					-	
			1655-5					-	
			1655-30도		-		-	도로	
			1655-31도		-		-		
			1655-32도		-		-		
			1655-8		지정		지정	권장	동일소유
			1655-12				권장		-12와 권장
			1655-13				권장		-8와 권장
			1655-9		권장		권장		-
			1655-10						-
			1655-14						-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GC-3	신림동	1655-15	4,631.4	지정	권장	권장		-
		1655-16				권장		-
		1655-17						-
		1655-18		-				
		1655-19		지정		지정	동일소유	
		1655-20						
		1655-29						
		1655-33				권장	-	
		1655-35					-	
		1655-36					-	
		1655-33도		-		도로		
		1655-21		지정		지정	권장	동일소유
		1655-37				단독		-
		1655-22						-
		1655-23				단독		-
		1655-24	획지	획지		동일소유		
		1655-25		획지		동일소유		
		1655-27		지정		권장	동일소유	
		1655-28	권장			-		
		1655-26				-		
		1655-42				-		
		1655-43				-		

②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변경사항 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비 고
변 경	건축한계선 (규제)	- 보행환경 개선 - 유효한 전면공지의 확보 - 이면도로의 확폭	1655-11번지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	※ 공동개발 권장해 제에 따른 건축 한계선 신규지정

③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 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용기준
폐 지	보행자전용도로	- 시흥대로에서 대상지로 이어지는 보행동선 조성	- 대상지내 조성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도로기능 변화로 조성방식 변경

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 없음>

라. 기반시설 확보 계획 <변경사항 없음>

④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결정(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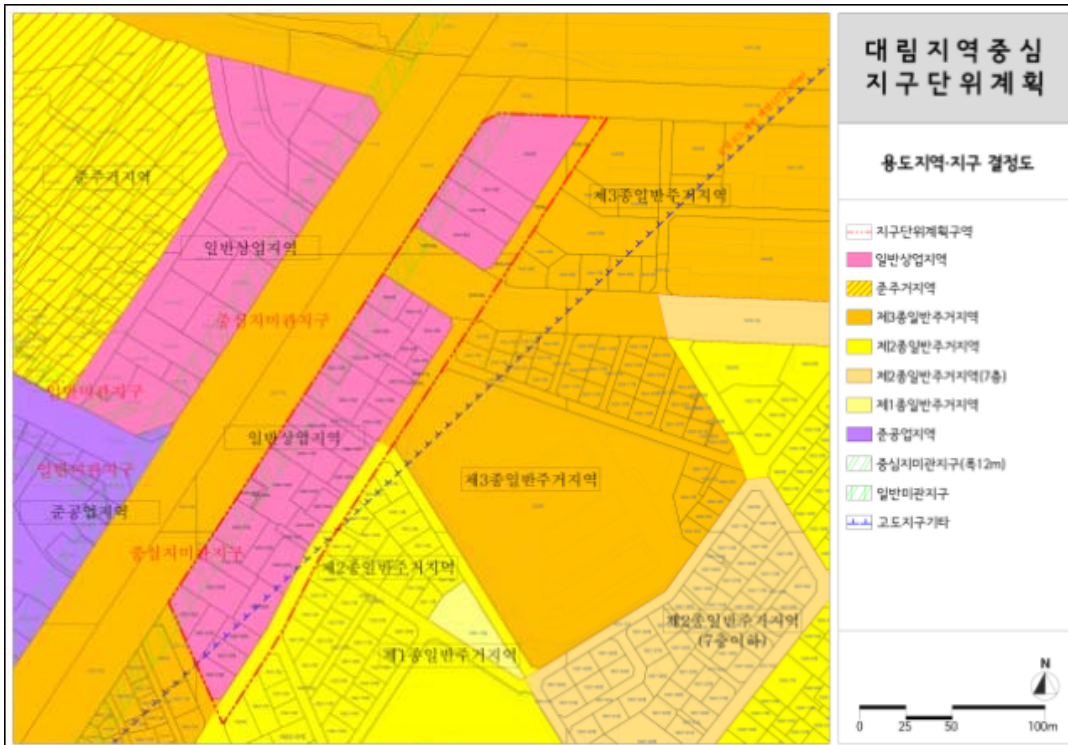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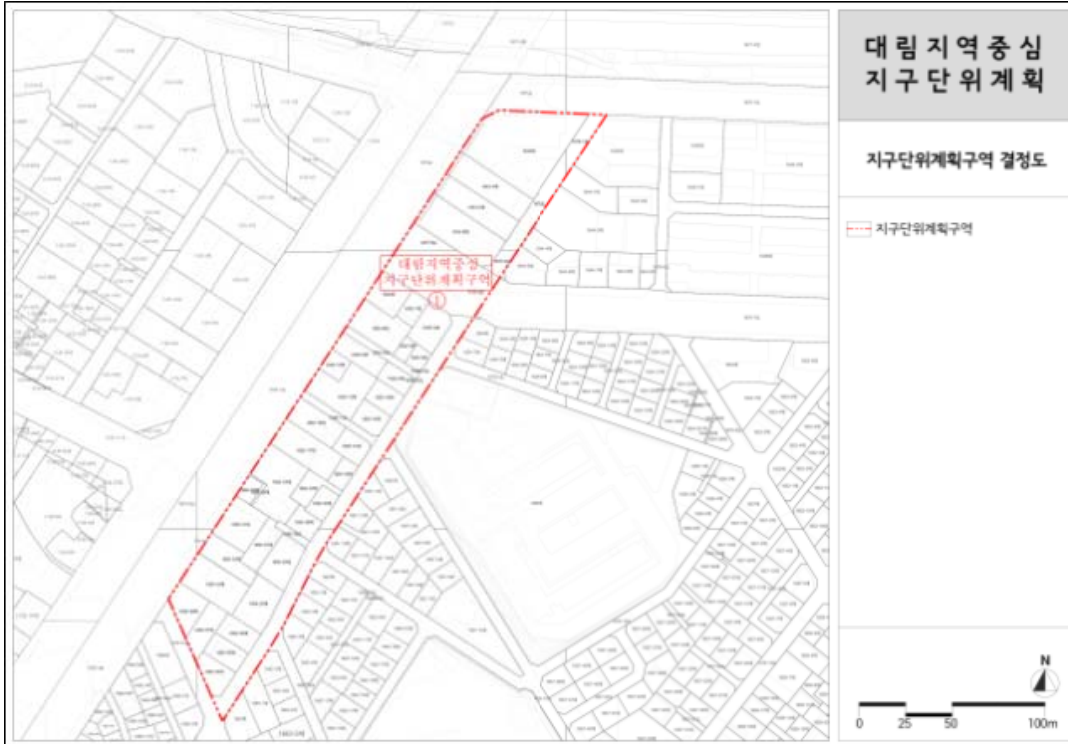
- 획지계획 변경 : 공동개발(지정, 권장) 변경 (주민의견, 대규모 공동개발 지양, 차량출입 불허구간 고려)
- 조원로변 가로공원 조성계획 폐지 : 현 공영주차장 유지
- 공개공지 위치지정·권장 조정 : 민간부문 시행지침으로 운영

4.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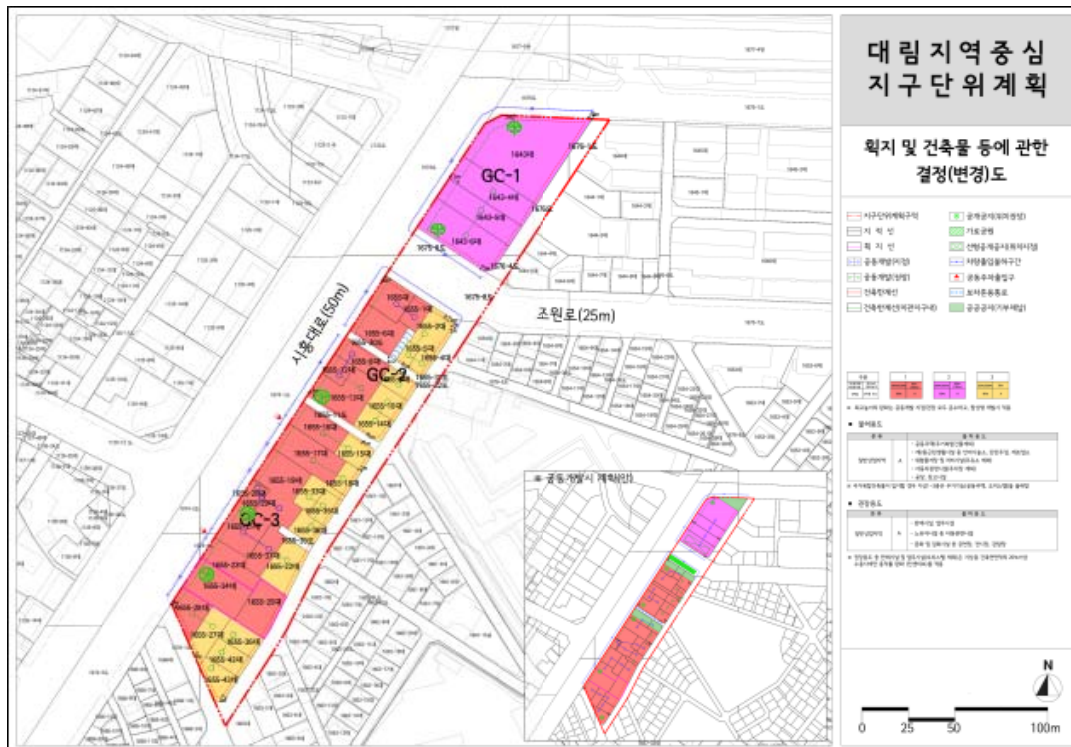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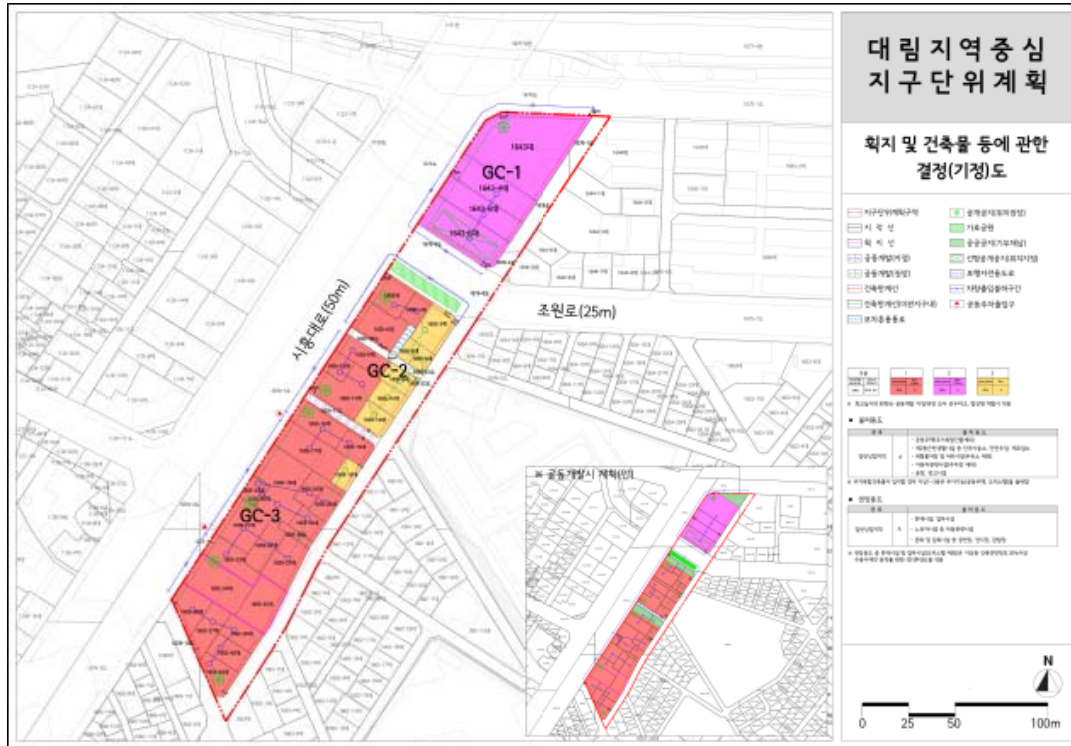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강남구고시 제2017-159호

도시계획시설(대모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77. 7.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7호('16.11.10.)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강남구고시 제2017-45호('17. 3. 30.)로 도시계획시설(대모산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강남구 공고 제2017-2071호('17. 11. 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한 강남구 일원동 427외 8필지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일원동 427외 8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남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 칭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7,129㎡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기간 :

- 변경 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	강남구 일원동 437	답	1567	1567	불국사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442					
2	강남구 일원동 436-25	전	1765	1765	김미화	(등)미국뉴저지주채털리버리지드라 아브163 (실)24867CulbertsonTerrace,Aldi e, VA 20105, USA	1/2				
					김승화	(등)미국캘리포니아주팔로스버데스 에스테이트비아리바1813 (실)1813ViaArriba,PalosVerdesEs tates,CA90274,USA	1/2				
3	강남구 일원동 436-19	전	241	241	김승화	(등)미국캘리포니아주팔로스버데스 에스테이트비아리바1813 (실)1813ViaArriba,PalosVerdesEs tates,CA90274,USA					
4	강남구 일원동 436	전	417	417	한국불교태 고종불국사	(등)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동442					
5	강남구 일원동 436-37	전	99	99	김인화	(등)서초구반포4동96-10삼성아트 빌라101호 (실)충남서산시온산면원평3길8(해 브론센터)					
6	강남구 일원동 246-1	답	446	446	강형주	(등)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17번 길23,5302동2204호 (이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주)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17번 길23,5302동2204호 (이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1/2				
					강형석	(등)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1로11 2-2,513동203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주)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1로11 2-2,513동203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1/2				
7	강남구 일원동 246-2	전	641	641	강형주	(등)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17번 길23,5302동2204호 (이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주)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17번 길23,5302동2204호 (이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1/2				
					강형석	(등)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1로11 2-2,513동203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주)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1로11 2-2,513동203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1/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8	강남구 일원동 246-13	전	1702	1702	강형주	(등)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17번 길23,5302동2204호 (이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주)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17번 길23,5302동2204호 (이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1/2				
					강형석	(등)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1로11 2-2,513동203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주)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1로11 2-2,513동203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1/2				
9	강남구 일원동 246-17	전	251	251	강형주	(등)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17번 길23,5302동2204호 (이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주)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17번 길23,5302동2204호 (이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1/2				
					강형석	(등)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1로11 2-2,513동203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주)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1로11 2-2,513동203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라5차)	1/2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남구 일원동 437	비닐하우스 ①	파이프	1	경작	강복흥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1 길6		
		비닐하우스 ②	파이프, 비닐, 일부차양막	1					
		비닐하우스 ③	파이프, 비닐, 차양막	1					
		농업용자재창고	목재	1					
		원두막	목재 1.5*2.6	1					
2	강남구 일원동 436-25	비닐하우스 ①	파이프, 비닐, 차양막	1	경작	강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길 5, 3층 (일원동)		
		농업용자재창고	목재, 슬레이트	1					
3	강남구 일원동 436	비닐하우스 ①	파이프, 비닐	1	경작	한국불교 태고종불국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442		
4	강남구 일원동 436	농업용자재창고	목재, 슬레이트	1	경작	미상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	강남구 일원동 246-2	비닐하우스 ①	파이프, 비닐, 일부차양막	1	경작	김호식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26길50,602동801호 (을현동,강남한신휴플러스 6단지)		
		비닐하우스 ②	파이프, 비닐	1					
6	강남구 일원동 246-2	물탱크	1.5*2.0	3	경작	미상			
7	강남구 일원동 246-13	비닐하우스 ①	파이프, 비닐, 차양막	1	경작	김은수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34길55,108동604호 (강남데시앙아파트)		
		물탱크	1.5*2.0	2					

◆ 강남구고시 제2017-16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4호(2009. 7. 2.) 및 강남구 고시 제2017-25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우리구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6 외 1필지에 대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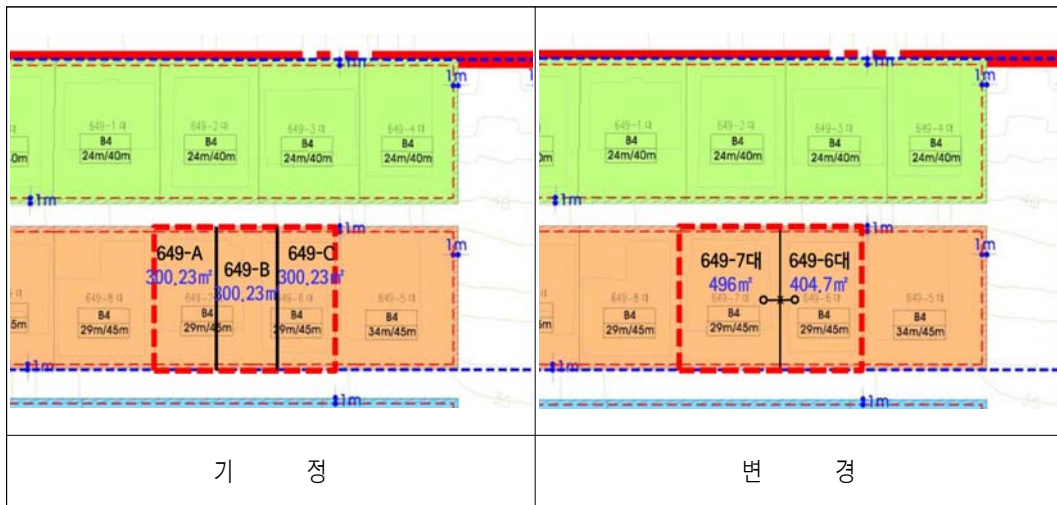
-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변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구			공 동 개 발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대지면적(㎡)		계획면적(㎡)
기정	B4-7	2,505.40	기정	역삼동	649-5대	612.8	—	변경없음
			기정	역삼동	649-A대	300.23	900.7	당초 649-A, B, C에서 649-6 맞벽, 649-7 맞벽 (자율적 맞벽으로 변경)
					649-B대	300.23		
					649-C대	300.23		
			변경	역삼동	649-6대	404.7	900.7	
					649-7대	496.0		
기정	역삼동	649-8대	495.7	—	변경없음			
기정	역삼동	649-9대	496.2	—	변경없음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4. 관계도면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강남구고시 제2017-16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23 외 2필지에 대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변경,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조성방법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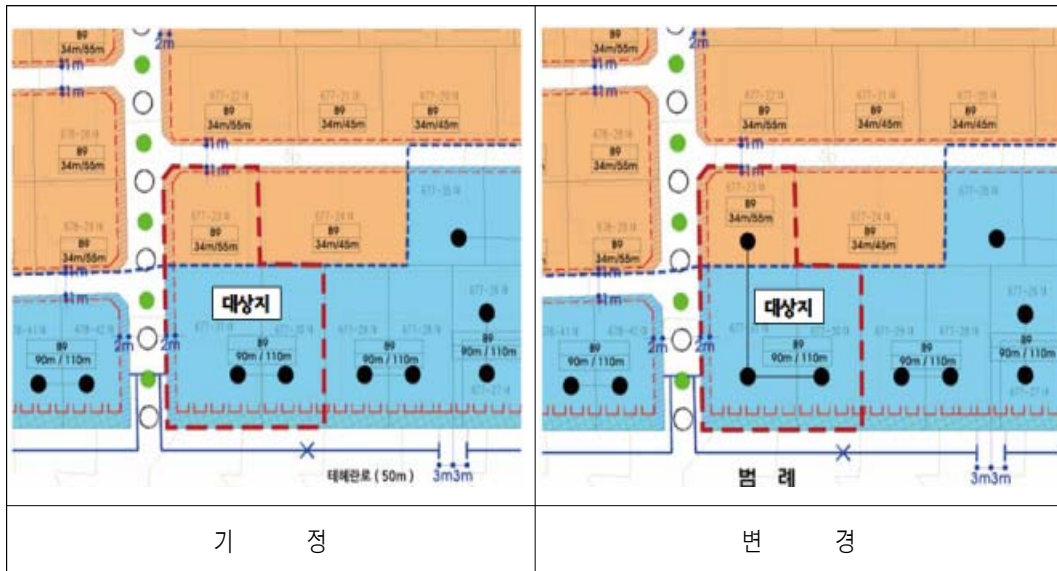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구			공 동 개 발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대지면적(㎡)	계획면적(㎡)	
신설	B9-11	1,398.20	기정	역삼동 677-23대	373.8	-	단독개발
				역삼동 677-30대	409.2	-	공동개발
				역삼동 677-31대	615.2	-	
			변경	역삼동 677-23대	334.0	1,398.2	공동개발(권장)
				역삼동 677-30대	721.8		
				역삼동 677-31대	654.8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4. 관계도면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강남구고시 제2017-16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 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9 외 1필지에 대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구			공 동 개 발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대지면적(㎡)	계획면적(㎡)	
기정	B5	654.30	기정	역삼동 824-9대	652.0	654.3	※ '17.10.25.자 2필지(824-9, 42) 합병후 필지 분할
				역삼동 824-42대	2.3		
			변경	역삼동 824-A	327.2	654.3	
				역삼동 824-B	327.1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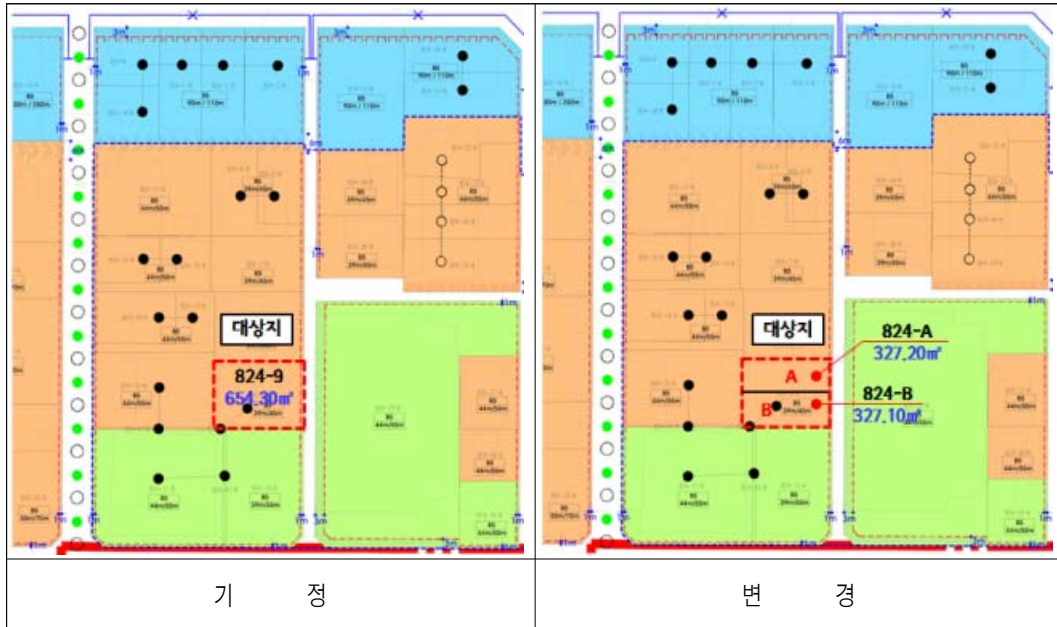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4. 관계도면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7-11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재열람공고

1. 광진구 광장동 318-6호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7.12.6.) 수정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광진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5), 청소과(☎02-450-7605)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다목적 공공복합 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광진구 광장동 318-6 일원	-	증) 6,890	6,890	-	체육시설 지하부 중복결정

라. 관련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및 청소과 비치 도서와 같음).

◆ 강북구공고 제2017-14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7-87호(2007.12.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4-59호(2014.3.27)로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4-114호(2014.6.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5-24호(2015. 2.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5-71호(2015. 4. 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5-242호(2015.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6-66호(2016. 4.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7-129호(2017. 9.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강북구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구분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당초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강북구 삼양로77길 95 ~ 삼양로77길 16	폭 12m 연장 582m	강북구고시 제87호 (2007.12.20)	
변경		강북구 삼양로77길 95 ~ 삼양로77길 16	폭 12m 연장 582m		편입물건 일부변경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있음)

○ 기정 : 실시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2년

○ 변경 : 실시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입 (편입물건 일부 변경으로 고시한 필지 및 건축물 외 명세 변동 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입 (추가구간에 대한 명세로 당초구간에 대한 명세는 변동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전화 02-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인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486-1518	대	15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75(수유동)	백영훈					물건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486-370	1층	철근콘크리트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75(수유동)	백영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45 (수유동)	강북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물건 추가
		2층		12							
		3층		12							
		4층	조적조	12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 은평구공고 제2017-150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재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7-281호(2017.8.3.)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련 내용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80-66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건립공사
- 2) 사업의 명칭 :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다. 사업규모

- 1) 부지면적 : 1,200㎡
- 2) 건물높이 : 13.25m
- 3) 연면적 : 1,982.58㎡
- 4) 건폐율 : 58.83%
- 5) 용적율 : 133.66%
- 6)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2016. 11. 28. ~ 2018. 6. 30.

바. 열람장소 :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04)

◆ 은평구공고 제2017-1516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3-351호(2013.10.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북한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은 평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1-1호 일대
2. 공원면적 : 4,439,776m²
3. 조성계획 변경(안)
 - 가. 시설면적
 - 당초 : 110,381.60m²
 - 변경 : 110,764.65m²(증 383.05m²)
 - 나. 변경시설
 - 감 소 : 도로(감) 33.68m², 운동시설(감) 79.84m²
 - 신 설 : 문학전시장(신설) 496.57m²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은평구 홈페이지 및 은평구 문화관광과(☎02-351-6507)
6.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별 총괄표(위치 : 은평구 녹번동 산1-1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439,746	113,267.33	29	3,743.35	4,173.46	367	4,439,746	113,650.38	30	4,239.92	4,670.03	357	시설면적 증 383.05㎡
용화사지구	276,995.87	21,935	9	59.28	59.28	183	276,995.87	21,935	9	59.28	59.28	183	변동없음
배발골지구	165,930	44,390	5	312.69	312.69	32	165,930	44,390	5	312.69	312.69	32	변동없음
종로평창지구	121,000	5,632	8	3,077.38	3,503.33	48	121,000	5,632	8	3,077.38	3,503.33	48	변동없음
호박골지구	193,208	17,792	2	134	134	17	193,208	17,792	2	134	134	17	변동없음
삼양지구	9,516	2,885.73	-	-	-	10	9,516	2,885.73	-	-	-	10	변동없음
불광지구	52,689	11,806.94	1	52.68	52.68	65	52,689	12,189.99	2	549.25	549.25	65	시설면적 증 383.05㎡
소 계	809,852.87	101,555.94	25	3,636.03	4,061.98	345	809,852.87	101,939.06	26	4,132.60	4,558.55	345	변동없음
시설외지구	3,629,923.13	8,825.66	4	107.32	111.48	12	3,629,923.13	8,825.66	4	107.32	111.48	12	변동없음
시 설 지 구 율 (법정 20%이하)	(809,852.87㎡ / 4,439,746㎡) × 100% = 18.24%						(809,852.87㎡ / 4,439,746㎡) × 100% = 18.24%						
공 원 시 설 율 (법정 20%이하)	(110,381.60㎡ / 4,439,746㎡) × 100% = 2.486%						(110,764.80㎡ / 4,439,746㎡) × 100% = 2.495%						
공 원 건 폐 율 (법정 4%이하)	(3,743.35㎡ / 4,439,746㎡) × 100% = 0.084%						(4,239.92㎡ / 4,439,746㎡) × 100% = 0.095%						

나. 시설조서

① 불광지구 (위치 : 은평구 녹번동 산1-1번지 일원)

■ 시설별 총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2,689.00	11,806.94	1	52.68	52.68	65	52,689.00	12,189.99	1	549.25	549.25	65	
기 반 시 설	4,787.90	4,787.90					4,754.22	4,754.22					감 33.68㎡
조 경 시 설	301.98	301.98				8	301.98	301.98				8	
휴 양 시 설	1,050.21	1,050.21				30	1,050.21	1,050.21				30	
유 회 시 설	91.75	91.75				1	91.75	91.75				1	
운 동 시 설	4,067.68	4,067.68				25	3,987.84	3,987.84				25	감 79.84㎡
교 양 시 설	1,112.70	1,112.70					1,712.70	1,609.27	1	496.57	496.57		증 496.57㎡
편 의 시 설	376.54	376.54	1	52.68	52.68		376.54	376.54	1	52.68	52.68		
관 리 시 설	18.18	18.18				1	18.18	18.18				1	
소 계	11,806.94	11,806.94	1	52.68	52.68	65	12,293.49	12,190.14	2	549.25	549.25	65	
녹지 및 기타	40,882.06						40,395.43						
시 설 지 구 내 시 설 율 (법정 40%이하)	(11,806.94㎡ / 52,689.0㎡) × 100% = 22.41%						(12,190.14㎡ / 52,689.0㎡) × 100% = 23.14%						전시장신축으로 면적변경
건 폐 율 (법정 10%이하)	(52.68㎡ / 52,689.0㎡) × 100% = 0.001%						(549.25㎡ / 52,689.0㎡) × 100% = 1.04%						전시장신축으로 면적변경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건축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총 계			52,689.00	11,806.94	1동	1동	52.68	52.68	66	52,689.00	12,190.29	1동	549.25	549.25	66	증 383.35㎡	
	소 계			4,787.90	4,787.90						4,754.22	4,754.22					감 33.68㎡	
	도로			3,712.70	3,712.70						3,679.02	3,679.02					감 33.68㎡	
	광 장	가			1,075.20	1,075.20						1,075.20	1,075.20					
		가-1	불광 산42-5공	(115.88)	(115.88)						(115.88)	(115.88)						
		가-2	불광 산42-5공	(97.24)	(97.24)						(97.24)	(97.24)						
		가-3	불광 630-68공	(127.26)	(127.26)						(127.26)	(127.26)						
		가-4	불광 산42-5공	(81.56)	(81.56)						(81.56)	(81.56)						
		가-5	녹번 산1-55천	(162.02)	(162.02)						(162.02)	(162.02)						
		가-6	녹번 산1-55천	(136.94)	(136.94)						(136.94)	(136.94)						
조경 시설	가-7	녹번 산1-1임	(188.13)	(188.13)						(188.13)	(188.13)							
	가-8	녹번 산1-55천	(35.03)	(35.03)						(35.03)	(35.03)							
	가-9	녹번 산1-55천	(131.14)	(131.14)						(131.14)	(131.14)							
	소 계			301.98	301.98					8	301.98	301.98				8		
	바닥분수	나	불광 산42-5공	38.60	38.60						38.60	38.60						
	전망데크	다	불광 산42-5공	28.80	28.80						28.80	28.80						
	폭포	라	불광 산42-5공	109.00	109.00						109.00	109.00						
조경 시설	계류	마	불광 산42-5공	125.58	125.58						125.58	125.58						
	육각정자	①		(75.52)	(75.52)	목재				3	(75.52)	(75.52)	목재			3		
		①-1	바-3 쉼터	(21.00)	(21.00)						(21.00)	(21.00)						
		①-2	바-10 쉼터	(33.52)	(33.52)						(33.52)	(33.52)						
	파고라	①-3	바-13 쉼터	(21.00)	(21.00)						(21.00)	(21.00)						
		③		(124.00)	(124.00)	목재					(124.00)	(124.00)	목재			5		
		③-1	바-2 쉼터	(16.0)	(16.0)						(16.0)	(16.0)						
		③-2	바-7 쉼터	(60.0)	(60.0)						(60.0)	(60.0)						
		③-3	바-8 쉼터	(16.0)	(16.0)						(16.0)	(16.0)						
		③-4	바-9 쉼터	(16.0)	(16.0)						(16.0)	(16.0)						
③-5		바-11 쉼터	(16.0)	(16.0)						(16.0)	(16.0)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 시설	소 계			1,050.21	1,050.21						30	1,050.21	1,050.21				30	
	쉼터	바		1,050.21	1,050.21							1,050.21	1,050.21					
		바-1	불광 산42-5 공	(17.56)	(17.56)							(17.56)	(17.56)					
		바-2	불광 산42-5 공	(18.18)	(18.18)							(18.18)	(18.18)					
		바-3	불광 산42-5 공	(137.13)	(137.13)							(137.13)	(137.13)					
		바-4	북변 산 1-1임	(114.52)	(114.52)							(114.52)	(114.52)					
		바-5	북변 산1-55천	(27.67)	(27.67)							(27.67)	(27.67)					
		바-6	북변 산1-55천	(56.00)	(56.00)							(56.00)	(56.00)					
		바-7	북변 산1-55천	(123.26)	(123.26)							(123.26)	(123.26)					
		바-8	북변 산1-1임	(139.05)	(139.05)							(139.05)	(139.05)					
		바-9	북변 산1-55천	(20.00)	(20.00)							(20.00)	(20.00)					
		바-10	북변 산1-1임	(50.00)	(50.00)							(50.00)	(50.00)					
		바-11	북변 산1-1임	(60.00)	(60.00)							(60.00)	(60.00)					
		바-12	북변 산1-1임	(222.84)	(222.84)							(222.84)	(222.84)					
바-13	북변 산1-1임	(64.00)	(64.00)							(64.00)	(64.00)							
원형의자 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⑥	전지역			목재					5			목재				5	
	⑦	전지역			목재					19			목재				19	
	⑧	전지역			목재					6			목재				6	
	⑩	전지역	(8.00)	(8.00)		20m					(8.00)	(8.00)		20m				
유하 시설	소 계			91.75	91.75						1	91.75	91.75				1	
	어린이놀이터	사	불광 산 42-5공	91.75	91.75							91.75	91.75					
	조합놀이대	④	어린이놀이터								1						1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 시설	소 계			4,067.68	4,067.68					25	3,987.84	3,987.84					25	감 79.84㎡
	체력단련장	아		1,416.55	1,416.55						1,336.71	1,336.71						감 79.84㎡
		아-1	불광 산42-5공	(126.33)	(126.33)						(46.49)	(46.49)						감 79.84㎡
		아-2	녹번 산 1-55천	(101.64)	(101.64)						(101.64)	(101.64)						
		아-3	녹번 산 1-1임	(518.17)	(518.17)						(518.17)	(518.17)						
		아-4	녹번 산 1-1임	(670.41)	(670.41)						(670.41)	(670.41)						
	농구장	카	녹번 산 1-1임	146.28	146.28		농구장				146.28	146.28		농구장				
	다목적구장	파	녹번 산 1-1임	795.30	795.30		1면				795.30	795.30		1면				
	족구장	타	녹번 산 1-1임	312.00	312.00		1면				312.00	312.00		1면				
	게이트볼장	하	녹번 산 1-1임	712.97	712.97		2면				712.97	712.97		2면				
배드민턴장	거	녹번 산 1-1임	684.58	684.58		5면				684.58	684.58		5면					
교양 시설	체력단련시설 ⑤		체력단련장			철재				25			철재				25	증 496.57㎡
	소 계			1,112.70	1,112.70						1,712.70	1,609.27						
	아외학습장	자	불광 산 42-5공	1,067.25	1,067.25						1,067.25	1,067.25						
	아외공연장	차	불광 산 42-5공	45.45	45.45						45.45	45.45						
	전시장	카	불광 산 42-5공								600.00	496.57	철근콘크리트	2층	496.57	496.57		신설
편의 시설	소 계			376.54	376.54	1		52.68	52.68		376.54	376.54	1		52.68	52.68		
	약수터	너		251.84	251.84						251.84	251.84						
		너-1	녹번 산 1-1임	(32.42)	(32.42)						(32.42)	(32.42)						
		너-2	녹번 산 1-1임	(219.42)	(219.42)						(219.42)	(219.42)						
	화장실	1	녹번 산 1-1임	124.70	124.70	1		52.68	52.68		124.70	124.70	1		52.68	52.68		
관리 시설	소 계			18.18	18.18					1	18.18	18.18					1	
	관리사무소	②	불광 산42-1임	18.18	18.18	목재	4.3x4.3			1	18.18	18.18	목재	4.3x4.3			1	
	소 계			40,882.06							40,395.43							감 486.68
녹지 및 기타	녹 지			40,882.06						40,395.43								

라.도로조서시설별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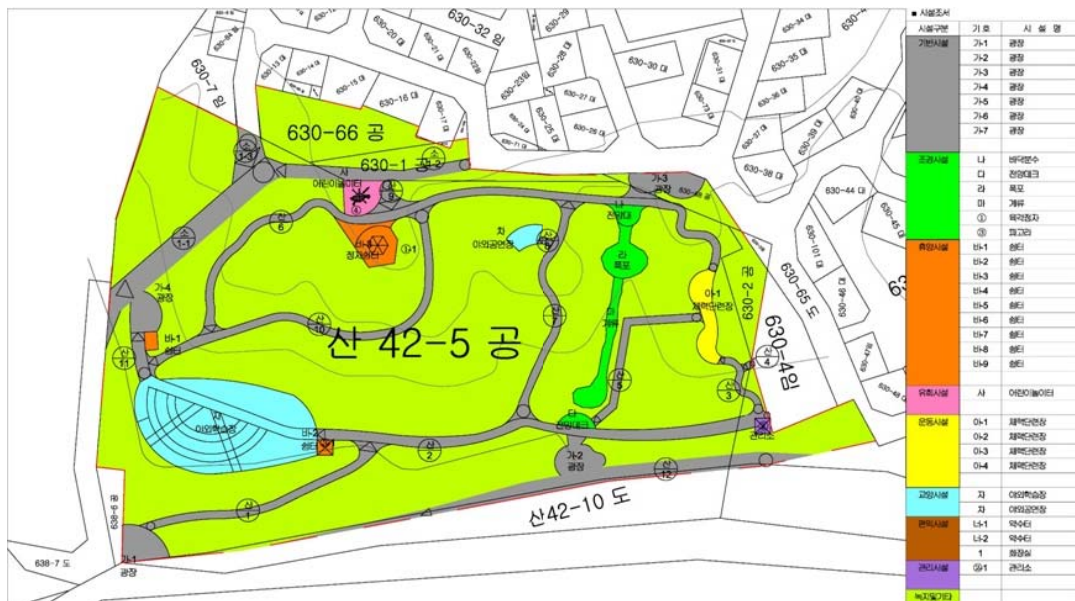
① 불광지구 (위치 : 은평구 녹번동 산1-1번지 일원)

■ 도로조서

등급	구분	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소로	합계				3,712.70						3,679.02			감 33.68㎡	
		소계			641.24						641.24				
			3	1	6	63.8	382.99	진입	소로 1-2	638-7도	6	63.8	382.99	진입	소로 1-2
	2			3.5	52.24	182.84	진입	630-65도	소로1-1	3.5	52.24	182.84	진입	630-65도	소로1-1
	3	6		12.6	75.56	진입	630-65도	소로1-1	6	12.6	75.56	진입	630-65도	소로1-1	
	소계			3,071.46						3,037.78			감 33.68㎡		
			1	2.0	83.5	167	산책	가-1 광장	산책로 12	2.0	83.5	167	산책	가-1 광장	산책로 12
			2	2.5	141.3	353.25	산책	630-4임	자 야외학습장	2.5	141.3	353.25	산책	630-4임	자 야외학습장
	3		2.0	21.7	43.4	산책	산책로 2	아-1 체력단련장	2.0	21.7	43.4	산책	산책로 2	아-1 체력단련장	
		4	2.0	3.6	7.2	산책	630-4임	산책로 3	2.0	3.6	7.2	산책	630-4임	산책로 3	
			5	2.0	56.0	112.0	산책	아-1 체력단련장	다 전망데크	2.0	55.6	111.97	산책	카-이호철문학관	다 전망데크
			6	2.0	203.6	407.2	산책	아-1 체력단련장	산책로 10	2.0	190.3	373.55	산책	카-이호철문학관	산책로 10
			7	2.0	81.5	163.0	산책	산책로 2	산책로 6	2.0	81.5	163.0	산책	산책로 2	산책로 6
			8	2.0	4.3	8.6	산책	산책로 7	차 야외공연장	2.0	4.3	8.6	산책	산책로 7	차 야외공연장
				9	3.5	12.6	44.1	산책	소로 1-2	산책로 6	3.5	12.6	44.1	산책	소로 1-2
				10	2.0	128.0	256.0	산책	산책로 6	산책로 11	2.0	128.0	256.0	산책	산책로 6
				11	3.5	13.0	45.5	산책	자 야외학습장	가-4 광장	3.5	13.0	45.5	산책	자 야외학습장
				12	4.0	101.6	406.4	산책	산 42-10도	산42-7임	4.0	101.6	406.4	산책	산 42-10도
				13	2.5	4.8	12.0	산책	산1-1임	바-4 쉼터	2.5	4.8	12.0	산책	산1-1임
		14		2.0	14.6	29.2	산책	바-4 쉼터	바-6 쉼터	2.0	14.6	29.2	산책	바-4 쉼터	바-6 쉼터
			15	2.6	9.2	23.92	산책	바-6 쉼터	가-5 광장	2.6	9.2	23.92	산책	바-6 쉼터	가-5 광장
			16	1.5	13.8	20.7	산책	산42-12 천	산책로 18	1.5	13.8	20.7	산책	산42-12 천	산책로 18
			17	3.5	12.3	43.05	산책	산42-12 천	가-6 광장	3.5	12.3	43.05	산책	산42-12 천	가-6 광장
			18	1.8	13.9	25.02	산책	아-2 체력단련장	가-6 광장	1.8	13.9	25.02	산책	아-2 체력단련장	가-6 광장
	19		1.8	13.4	24.12	산책	가-6 광장	산 42-12천	1.8	13.4	24.12	산책	가-6 광장	산 42-12천	

산책로

등급	구분	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산책로		20	1.8	136.1	245.12	산책	산 1-1	가-6 광장	1.8	136.1	245.12	산책	산 1-1	가-6 광장	
		21	1.8	31.3	56.34	산책	산책로 23	산책로 20	1.8	31.3	56.34	산책	산책로 23	산책로 20	
		22	1.8	22.0	39.6	산책	산책로 21	산 1-1	1.8	22.0	39.6	산책	산책로 21	산 1-1	
		23	3.5	1.0	3.5	산책	산책로 20	파 테니스장	3.5	1.0	3.5	산책	산책로 20	파 테니스장	
		24	2.0	70.17	140.35	산책	산책로 20	가-7 광장	2.0	70.17	140.35	산책	산책로 20	가-7 광장	
		25	2.5	3.4	8.5	산책	산 1-50임	가-7 진입광장	2.5	3.4	8.5	산책	산 1-50임	가-7 진입광장	
		26	1.8	8.6	15.48	산책	산 1-5임	아-4 체력단련장	1.8	8.6	15.48	산책	산 1-5임	아-4 체력단련장	
		27	1.4	206.6	289.24	산책	가-7 광장	아-5 체력단련장	1.4	206.6	289.24	산책	가-7 광장	아-5 체력단련장	
		28	1.4	12.8	17.92	산책	산책로 29	하 게이트볼장	1.4	12.8	17.92	산책	산책로 29	하 게이트볼장	
		29	1.0	43.5	43.50	산책	산책로 30	거 배드민턴장	1.0	43.5	43.50	산책	산책로 30	거 배드민턴장	
		30	1.5	13.5	20.25	산책	아-5 체력단련장	바-12 쉼터	1.5	13.5	20.25	산책	아-5 체력단련장	바-12 쉼터	



◆ 구로구공고 제2017-18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구로구고시 제2013-38(2013.04.11)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된 구로구 구로동 73-68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건축과(☎02-860-2983)에 비치하고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구로구청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구로동 73-68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구로동 73-68번지 도로개설사업
- (3) 사업의 면적 : 76㎡
-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ㄱ 성명 : 구로구청장
 - ㄴ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열람기간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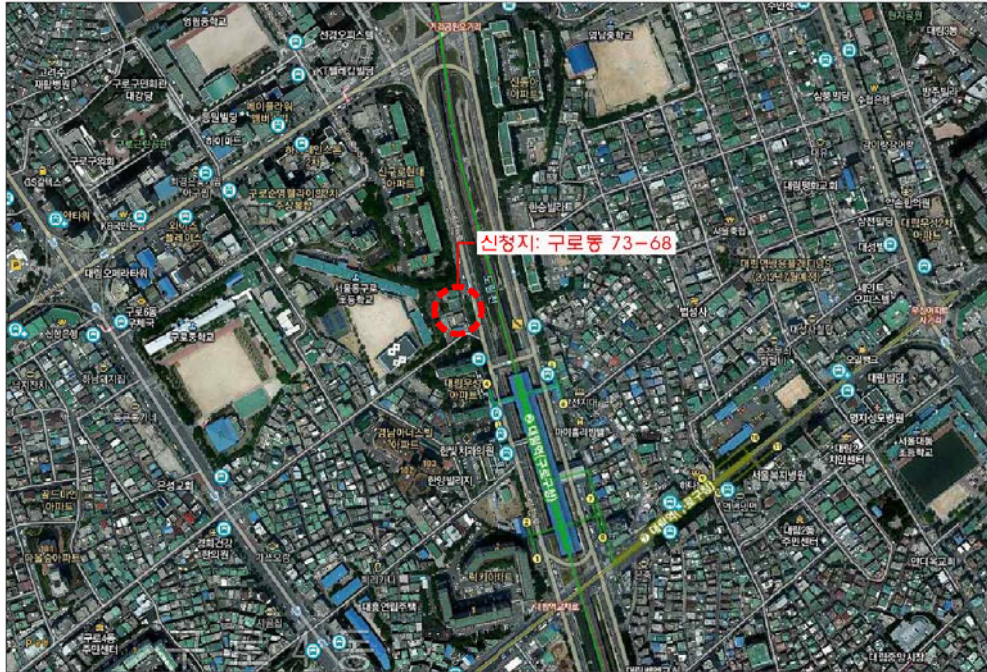
- (1) 열람기간 : 2017.12.15. ~ 2017.12.30.
 - (2) 열람장소 : 구로구 건축과(☎02-860-2983)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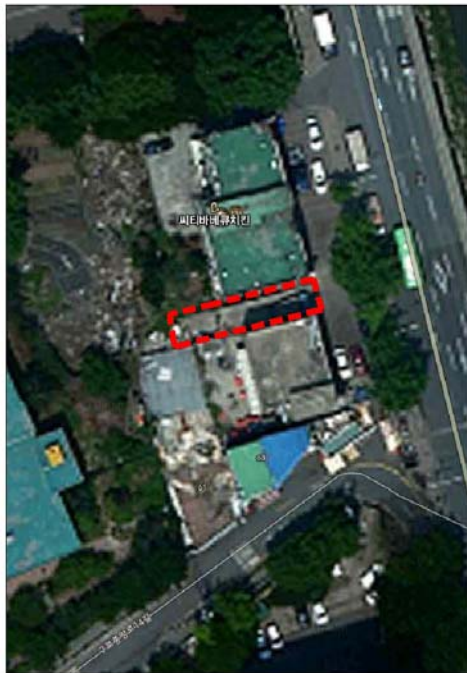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구로동73-68 도로개설사업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 리명세	
1		구로동 73-68	도	76	76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무	

■ 위성사진



■ 현장사진-1



■ 현장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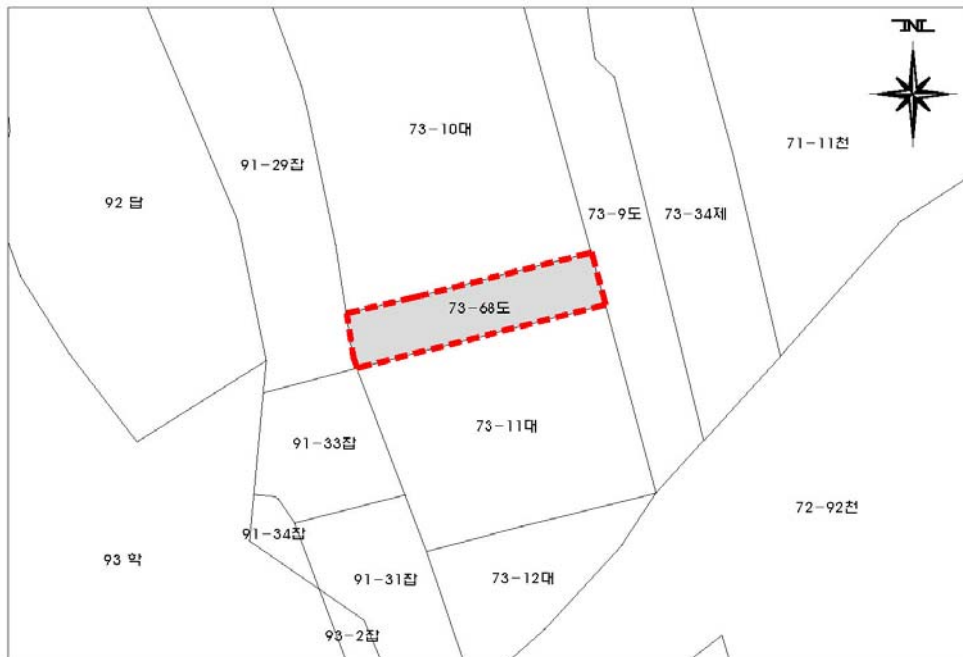


■ 위치도



■ 지적도

SCALE:1/400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성우지반 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65	서울시계 내 한강 (구리시 토평동 890번지 외 8개소)	선박 2척 (모터보트, 바지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지반조사	2017.12.15.~ 2018.01.14.	2017. 12.14.

사업소공고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17-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 관리업	제 서울 (동대문) 2017-0002호 (2017.12.18.)	금성방재기술 주식회사 (101-81-34253)	오 철 웅 (1942.05.21.)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27길 5 1층 (용두동)	02-3291-9119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245-7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0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반포대교 북단~중랑천 합류부(L=4.5km)
 - 면 적 : 85,006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자전거산책로 분리 및 특화공원 조성
 - 내 역 :
 - 자전거산책로 분리(L=4.5km, 자전거도로 폭 4m, 산책로 폭 2~4m)
 - 거점특화공원 조성 1식
(반포대교북단하부, 한남대교북단하부, 금호나들목둔치)
 - 기존 체육시설지(보광지하차도 전면) 1식
 - 옥수역하부 포장 정비 1식
 - * 토공 1식, 조경공 1식, 배수공 1식,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09.12.10.~2014.12.09.
 <변경> 2014.12.10.~2019.12.0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14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85-22, 282-41번지, 신정동 871-9번지, 구로동 614-63번지 (총 4필지)
 - 면 적 : 일시 7,6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눈썰매장 구조물 및 부대시설 설치
 - 내 역 :
 - 눈썰매장 2조(7.25m×20m×30m, 2.4m×10m×13m)
 - 부대시설(화장실, 매점, 휴게소)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12.11.~2018.2.25.(2017.12.11.~2018.2.2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1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2번지 등 8필지
 - 면 적 : 949.4㎡(일시 253.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당인빛물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 내 역 :
 - 토출관로(D=2,500mm) 69.4m 및 자연유출암거(2.5m×2.5m) L=74.5m 등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12.12.~2022.12.11.(2017.12.12.~2018.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강동구 천호동 일원
 - 면 적 : 6,15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차수벽 철거 및 육갑문 설치
 - 내 역 :
 - 잠 실 나들목 : L=89.4m(제외지 : 육갑문설치, 제내지: 기존옹벽보강, 진입로개설)
 - 잠실나루 나들목 : L=98.7m(제외지 : 육갑문설치, 제내지: 기존옹벽보강, 진입로개설)
 - 풍납토성 나들목 : L=66.0m(제외지 : 육갑문설치, 제내지: 기존옹벽보강, 진입로개설)
 - 나루터길 나들목 : L=67.8m(제외지 : 육갑문설치, 제내지: 기존옹벽보강, 진입로개설)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2017.12.12.~2019.2.1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13-14, 613-9, 566-3, 532, 532-1, 532-2번지(총 6필지)
 - 면 적 : 5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차수벽 철거 및 육갑문 설치
 - 내 역 :
 - 광진교남단 나들목 : L=73.8m, B=5.0m, H=3.5m
 - (제외지 : 이중육갑문설치, 제내지: 기존옹벽보강, 진입로개설)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2017.12.12.~2020.7.1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망원·난지지구 고수부지
 - 면 적 : <당초> 12,595㎡, 일시 1,249.5㎡
<변경> 12,595㎡, 일시 24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 내 역 :

당 초	변 경
- 열배관 매설 6,588m - 누수감지판넬 3개소, 맨홀 4개소, 감지선 연결 BOX 7개소	- 열배관 매설 6,588m - 누수감지판넬 3개소, 맨홀 4개소, 감지선 연결 BOX 7개소 * 마포구 합정동 352-5번지 열배관 보수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5.01.08.~2020.01.08.(변경 허가일로부터 40일, 2018.1.20.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4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116번지 등 2필지
 - 면 적 : <당초> 300.5㎡
<변경> 300.5㎡, 일시 2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 내 역 :

당 초	변 경
- D600mm×2열 L=42.88m, D1,200mm×1열 L=64.55m, D1,350mm×1열 L=64.55m - 맨홀 및 환기구 1개소 등	- D600mm×2열 L=42.88m, D1,200mm×1열 L=64.55m, D1,350mm×1열 L=64.55m - 맨홀 및 환기구 1개소 등 * 마포구 상암동 495-81번지 열배관 보수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5.03.02.~2020.03.01.(변경 허가일로부터 30일, 2018.01.1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439-1번지(4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42-1번지 등 10필지(939㎡)

- 면 적 : <당초> 3,18.5㎡
<변경> 1,3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전망보행데크 설치
- 내 역 :

당 초	변 경
- 보행데크 3개소	- 보행데크 2개소 * 가양동 전망보행데크 경사로 삭제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12.12.~2022.12.11.(변경 허가일로부터 30일, 2018.01.1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영등포구 양화동, 양천구 목동 일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 면 적 : 40,929㎡, 일시 51,79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교량(월드컵대교 등) 설치
 - 내 역 :

당 초	변 경
<한강> - 월드컵대교(L=1,980m, B=31.4m) - 공사용 물양장 1개소, 작업장 및 야적장 1개소 - 사무실, 자체창고 등 이동식(컨테이너) 시설물 7동 - 복단접속교(MP5) 가시설(가축도 등) 및 작업장 조성	<한강> - 좌동 - 좌동 - 사무실, 자체창고 등 이동식(컨테이너) 시설물 17동 - 좌동

당 초	변 경
- 강교 선적을 위한 가시설물 (강교 대블럭 Load out 시설) <안양천> - 공항로 연결램프(L=255m, B=6.95m)	- 좌동 <안양천> - 좌동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영구(2010.6.29.~2019.4.8.)

* 소블럭 야적장(15,000㎡) : 2018.11월까지

* 강교 조립장(32,563㎡) : 2019.4월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 마포구 마포동 일원, 서초구 잠원동 일원, 강남구 압구정동 일원, 광진구 자양동 일원
 - 면 적 : <당초> 5,920㎡, <변경> 4,665㎡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나들목 설치 등
 - 내 역 :

당 초	변 경
- 나들목 6개소 및 보도육교 1개소	- 나들목 6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 2009.8.12.~2014.8.11.

(변경) 2014.8.12.~2019.8.11. (변경 허가일로부터 30일, 2018.01.1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여의도한강공원 등 9개소
 - 면 적 : 20,3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테니스장 및 그늘막 설치
 - 내 역 :
 - 테니스장 19면, 그늘막 35개
5. 점용기간 : <당초> 2008.01.14.~2013.01.13.
<변경> 2013.01.14.~2023.01.1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번지 등 2필지
 - 면 적 : 1,32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어린이놀이터 조성
 - 내 역 :
 - 어린이놀이터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0.05.25.~2015.05.24.
 <변경> 2015.05.25.~2020.05.2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시민공원 일원
 - 면 적 : 11,0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자연학습장 조성
 - 내 역 :
 - 자연학습장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0.11.18.~2015.11.17.
 <변경> 2015.11.18.~2020.11.1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02-3번지 등 7필지
 - 면 적 : 23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동북부 일원 가스관매설에 따른 중랑천 횡단
 - 내 역 :
 - 가스관 매설
5. 점용기간 : <당초> 2012.11.27.~2017.11.26.
 <변경> 2017.11.27.~2022.11.2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727-106번지 등 3필지
 - 면 적 : 145.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상수관로 공급량 계측하기 위하여 유량계 및 전선관로 설치
 - 내 역 :
 - 유량계함 1개소 및 연결 전선관 2개소 설치
5. 점용기간 : <당초> 2010.3.16.~2015.3.15.
 <변경> 2015.3.16.~2020.3.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의도동 63빌딩 상류부~국회의사당 하류부
 - 면 적 : 518,000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셋강 정비
 - 내 역 :
 - 연못 2개소, 데크시설 1,497m², 건생초지 1식, 배수로 1식, 계단블럭 3,173m², 수로조성 1식, 포장 618a
- 5. 점용기간 : <당초> 2003.01.01.~2007.12.31.
<변경> 2008.01.01.~2022.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03-1번지 및 504-1번지
 - 면 적 : 8,308.6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그린웨이 조성공사(4차)
 - 내 역 :
 - 식재기반조성 5,646m²
 - 초화류 식재(금계국, 물억새, 수크령 등 5종)
 - 탄성포장 2,623m², 스프링클러 180개소 등
5. 점용기간 : <당초> 2012.10.19.~2017.10.18.
<변경> 2017.10.19.~2022.10.1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0-8번지 등 8필지
 - 면 적 : 2,01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올레길(수변둘레길) 조성공사
 - 내 역 :
 -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칼라투수콘포장 1,304㎡, 도막포장 198㎡)
 - 독마루포장(흙콘크리트 510㎡)
 - 배수로 W=600m, L=297m
5. 점용기간 : <당초> 2012.10.30.~2017.10.29.
<변경> 2017.10.30.~2022.10.2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의도동 63번지 및 19-1번지
 - 면 적 : 19.4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로등 설치
 - 내 역 :
 - 공원가로등 6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04.03.08.~2009.03.07.
<변경> 2009.03.08.~2019.03.0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의도동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등 10개소
 - 면 적 : 1,315.4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원등 설치
 - 내 역 :
 - 공원등 설치 406본
5. 점용기간 : <당초> 2008.11.18.~2013.11.17.
<변경> 2013.11.18.~2018.11.1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4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71-7, 871-36, 871-37, 신도림동 271-64번지 (총 4필지)

- 면 적 : 8,817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생태공원 야구장 조성공사
 - 내 역 :
 - 그물망웬스(H=5m, L=50m), 마사토 포장(A=8,761m²)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12.15.~2022.12.14.(2017.12.15.~2018.5.14. 허가일로부터 5개월)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4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330-5번지 등 9필지
 - 면 적 : 4,658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오금빗물펌프장 증설로 인한 강재토출관로 매설
 - 내 역 :
 - 토출관로 설치 3.0×2.0×2런(B=7m), L=256m
5. 점용기간 : <당초> 2011.10.10.~2016.10.09.
<변경> 2016.10.10.~2021.10.0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4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74-1, 682-1, 685-521번지 (총3필지)
 - 면 적 : 53.76㎡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교통관리시스템 시설물 설치
 - 내 역 :
 - 도로전광표지 2개소, CCTV 1개소
- 5. 점용기간 : <당초> 2011.01.04.~2016.01.03.
 <변경> 2016.01.04.~2021.01.0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4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623번지선
 - 면 적 : 134.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비상시 시민 및 양곡도강 선박관리사무소 설치
 - 내 역 :
 - 관리사무실 1동
5. 점용기간 : <당초> 1997.05.27.~2002.05.26.
 <변경> 2002.05.27.~2022.05.2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4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지구 등 3개소(여의도, 광나루, 이촌)
 - 면적 : (당초) 10m², (변경) 7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둘기집 설치
 - 내역 :

당 초	변 경
- 여의도지구(3개소, 여의도동 85) - 광나루지구(2개소, 천호동 483-8) - 이촌지구(2개소, 이촌동 302-183) - 잠실지구(3개소, 잠실6동 1-1)	- 여의도지구(3개소, 여의도동 85) - 광나루지구(2개소, 천호동 483-8) - 이촌지구(2개소, 이촌동 302-183)

5. 점용기간 : <당초> 2012.12.29.~2017.12.28.
 <변경> 2017.12.29.~2022.12.28.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